

2016
북한 이해

2016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13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16
제3절 북한의 딜레마	23

II 북한의 정치 체제와 통치 이념

제1절 북한 정권의 역사와 정치 체제 형성	29
1. 소련의 점령 정책과 북한 정권의 수립	29
2.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과 특성	31
제2절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37
1. 주체사상	38
2. 선군사상	42
3. ‘김일성-김정일주의’	45
제3절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47
1. 북한의 권력 구조	47
2. 노동당	52
3. 중앙기관	66
제4절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73
1. 권력 세습의 정치 체제	73
2. 김정은 체제의 형성	76

I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83
1.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과 목표	83
2.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	84
3.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86
제2절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	88
1.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88
2. 탈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92
제3절 북한의 대외관계	97
1. 미국과의 관계	97
2. 중국과의 관계	103
3. 일본과의 관계	107
4. 러시아와의 관계	111
5.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115

IV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23
1. 북한군의 창설과 성격	123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125
제2절 북한군의 군사정책과 전략	128
1. 정책 기초	128
2. 군사전략	130

제3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34
1. 군사 조직	134
2. 군사 제도	138
제4절 북한의 군사력	144
1. 상비 전력 및 장비	144
2. 예비 전력	149
3. 전략무기 개발	151
제5절 대외 군사 관계 및 대남 도발	156
1. 대외 군사 관계	156
2. 대남 도발	159

V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제1절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171
1. 경제체제의 특징	171
2. 경제정책 기초와 변화 모색	177
제2절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185
1. 거시적 현황과 과제	185
2. 경제 부문별 현황과 과제	191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203
1. 시장의 활용과 통제	203
2. 제한적 대외 개방 정책	213
3.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219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

제1절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223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223
2. 교육과정과 방법	236
3. 학교생활	247
제2절 북한의 문예정책과 실태	252
1. 문예정책	252
2. 문학예술의 실태	260
제3절 북한의 언론	275
1. 신문	276
2. 방송	281

VII 북한의 사회와 주민생활

제1절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	287
1. 북한의 사회계층	287
2.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의 특징	291
제2절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293
1. 북한 주민의 가치관	293
2. 하루 생활과 생애 과정	298
3. 조직생활	302
4. 의식주 생활	308
5. 여가와 명절	314

제3절 북한의 종교	319
1. 종교관	319
2. 종교 실태	322
제4절 북한 주민의 일탈과 사회통제	328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329
2. 사회통제	334
제5절 북한의 인권	339
1.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	340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침해	344
3. 북한의 인권문제 대응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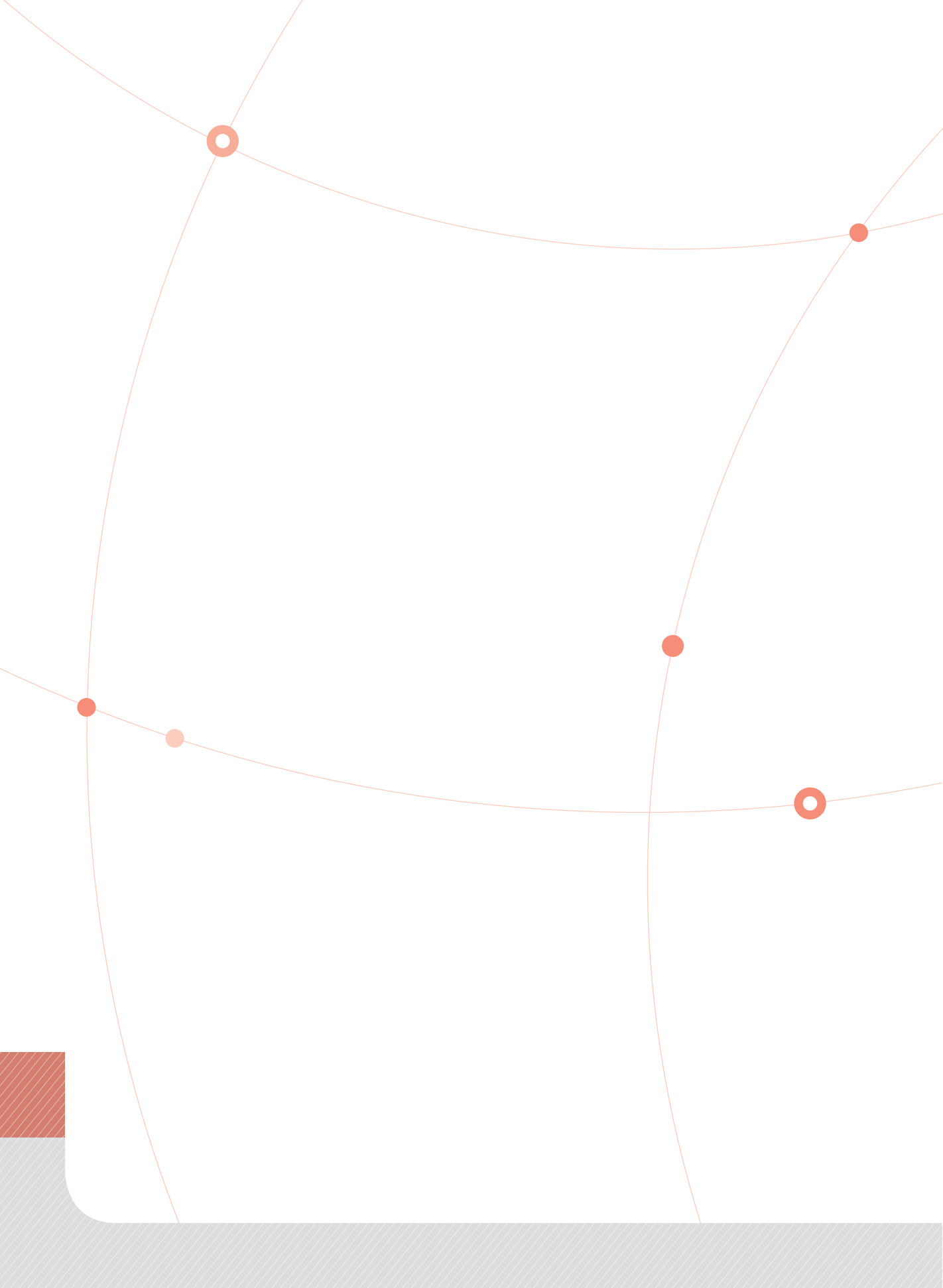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39
표 2-2.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58
표 2-3.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59
표 3-1. 6자회담 개최 현황	100
표 3-2.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101
표 3-3. 남북 수교 현황 (2014년 12월 기준)	119
표 4-1. 4대 군사노선	126
표 4-2.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129
표 4-3.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132
표 4-4. 군 간부 양성 과정	142
표 4-5. 남북 군사력 비교(2014년 10월 기준)	145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150
표 4-7. 북한의 미사일 제원	155
표 4-8. 1999년 이후 북한의 서해상 도발 주요 사례	166
표 4-9.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168
표 5-1. 총 공업생산액 중 소유 형태	173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을 추이	187
표 5-3.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을 추이	188
표 5-4. 북한의 산업 구조 추이	190
표 5-5.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192
표 5-6.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192
표 5-7.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196
표 5-8. 북한의 재정 규모 추이	199
표 5-9. 북한 대외 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202
표 5-10.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217
표 6-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229
표 6-2.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	237
표 6-3.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239
표 6-4.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240

표 7-1. 북한 주민 성분 조사 사업	288
표 7-2. 북한의 이념 체계와 주요 내용	294
표 7-3. 북한의 주요 사회조직	302
표 7-4.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309
표 7-5. 북한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	317
표 7-6. 북한 헌법상 종교 관련 조문의 변천	321
표 7-7. 북한의 종교 현황	322
표 7-8.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330

그림 Figures

그림 2-1. 노동당 기구	63
그림 2-2. 정권기관	72
그림 5-1. 북한 대외무역과 북중·남북 교역 규모의 추이	200
그림 5-2.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204
그림 5-3.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216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225
그림 6-2. 북한의 학제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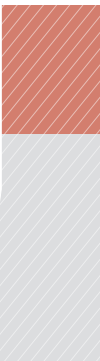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제3절 북한의 딜레마



Key Point

0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02

북한 체제의 특징은 첫째, 수령이 당과 국가 위에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수령독재체제이다. 둘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집중도가 높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로서 수령을 아버지로 여기고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03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시대 북한도 체제생존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혁·개방보다는 '경제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이중적 존재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이해의 시각

첫째, 북한 체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공동 번영의 토대와 평화통일 기

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점차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를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을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핵개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체제이다. 북한 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 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북한 체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소련의 지도아래 1948년에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형성된 북한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에서 형성된 '전체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 제도,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 체제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체제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령 독재 체제

북한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 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물론 1970년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이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제 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은 북한식 수령 독재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다.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당의 최종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

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이 1986년 제시한 것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논리이다.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에게 한정된 호칭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는 북한 주민들

하고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불렀으며,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도 김일성은 여전히 수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 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20세기 존재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¹⁾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²⁾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주장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생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경제의 중앙집권도가 월등하게 높았으며 모든 세부지침들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북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백과전서』(제3권), 1983, p.530.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사전』(제2권), 1970, p.118.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한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 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모든 부문과 단위의 계획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 부문과 기업소의 경영 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경제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다. 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장마당과 암시장 등)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³⁾ 이후 북한식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배급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제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

3) ‘평균주의 타파’와 ‘번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 하에서 시행된 조치로서,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격을 인상하여 농민시장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쌀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으며 그 중에서 군인과 중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셋째,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넷째, 경제계획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일정 부분 이관하였다.

전국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사실상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한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⁴⁾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 전매제(專賣制)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 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조치도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2010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계획경제 강화에 주력했지만, 이러한 통제 조치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켰고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을 묵인하면서 통제를 완화해 왔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장례 기간 직후부터 다시 외환사용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는 유통되고 있는 외화를 국가로 흡수하기 위해 외환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서 수령 숭배와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4) 협동농장의 말단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3~5명 규모로 축소하여 포전(일정 규모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정당성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북한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가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수령·당·인민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와 하급 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제3절 북한의 딜레마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을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고, 경제위기를 포함한 북한 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전환으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북한 체제가 대내외적으로 경험해 왔던 경제난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체제변화와 전환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오히려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

선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노선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2014년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하였고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 핵무기와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개혁 개방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첩경은 북한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생존을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 등 변화를 추진할 경우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길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정세 변화 및 대내외적 압박 요인에 대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버티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제난 극복 및 체제생존은 한계가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핵실험을 통한 군사적 도발 및 유화적 입장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 위협 요소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리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정일 사후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여 권력의 공고화와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개혁·개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공고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이 군사적 도발 및 긴장조성을 통해 주변국들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와 식량 등을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2006.10, 2009.5, 2013.2)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오

히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강성대국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했던 2012년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체제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II

북한의 정치 체제와 통치 이념

제1절 북한 정권의 역사와 정치 체제 형성

제2절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제3절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제4절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Key Point

01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는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을 벌였으나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다른 정파들을 숙청하고 북한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친 지속적 숙청작업과 당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를 공고화하였으며,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김정일 권력승계를 공식화하였다.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은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제도화하였으며 2010년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북한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02

주체사상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권력 독점을 통한 1인 지배체제의 강화와 우상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주체사상에 부리를 둔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북한은 당과 군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로 운영된다. 헌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행정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내각 총리 등이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함으로써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04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1인 지배의 권력기반을 유지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에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3대 권력세습의 후견인이었던 장성택과 현영철을 공개숙청·처형하는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절 북한 정권의 역사와 정치 체제 형성

1. 소련의 점령 정책과 북한 정권의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이후 북한 체제가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하게 된 원천은 소련군의 점령이었다. 일제 패망으로부터 소련군이 주둔하기까지 북한의 정치상황은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소련화는 김일성을 비롯하여 '88특별여단'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수립하는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소련 군정은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9.20)에 따라 1945년 10월 북한 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 조직의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소련 점령군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단독 정권의 수립을 추진할 도구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정당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1945. 9. 11)이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 10. 13)을 만들었다. 북조선 분국의 설치는 38도선 이북 지역에 서울과는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소련 군정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공산당을 창당한 소련 군정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의'의 결과로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그것은 소련 군정 하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이처럼 소련 군정은 한반도 분할 점령 3개월 만에 스탈린의 지령대로 북한만의 통치 조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일찍이 단독 정권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소련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공산당의 지도하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중 정당이 필요하다는 스탈린의 판단 아래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1946. 8.)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공산당 통치를 위한 내적 기반을 점차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통치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공산당 단독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돌입한 소련 군정에 의해 1947년 2월에 창립된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을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1947년 2월부터 국가수립이 선포된 1948년 9월까지 인민회의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1947년 11월 개최된 제3차 회의를 통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제2차 당 대회(1948. 3)를 통해 국내파가 약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장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한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평양에서는 9월 2-10일까지 572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최종 채택(9. 8)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9. 9)했다.

2.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과 특성

(1)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정치 지형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 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파로는 허가이 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무정 등의 친 중국 연안파 등이 정치의 중심 파벌들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김일성 등의 항일 빨치산 세력이 경쟁에 가담하였다. 그와 같은 38도선 이북지역에서의 정권수립을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아래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을 둘러싸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쇼프(옛 표기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의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주체사상’의 형성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 중앙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1인 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는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을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인민대중들의 노동을 촉진시킬 수 없었던 북한의 전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등이 있다.

청산리정신과 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청산리정신은 사상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청산리방법은 구체적 실천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처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초 농업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모든 경제 분야의 기본적 지도방법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 김일성은 권력 독점적 1인 지도 체제 구축에 착수하였다. 김일성은 지속적인 숙청 작업을 통한 1인 권력의 공고화 및 주체사상 강화 작업 등으로 북한 체제 내에서 도전받을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위치로 자리잡았다.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열린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가 구축되고 1967년 12월 16일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승인받았다. 이후 북한은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된 형태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직접

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 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유일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하였다. 그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열린 1971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5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부부장 및 조직지도부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사상 담당 비서’로 선출한 데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물론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서였다. 당 6차대회는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 당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된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뿐이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는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제시된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으로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있다. 이는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 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

사력 증강, 체제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우위체제였다. 군사우위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던 2009년에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한 '김일성헌법'에 반영되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한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일심단결 및 결속유도 등의 권력 강화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2011. 12. 29)에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12. 30)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발표(12. 31)를 통해 김정일 유훈통치,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군·보위기관의 김정은 선군영도 결사옹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및 경공업·대외무역, 자주통일과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를 선언하고 제4차 당 대표자회(2012. 4. 11)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 4. 13)를 통해 3대 권력세습을 완료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2012. 7. 15)에서 리영호를 해임한 후 ‘공화국 원수’에 올라(7. 18) 당·군·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였으며, 장성택(2013. 12. 12)과 현영철 처형 등(2015. 4. 30) 공포정치를 통해 김정은 지도체제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2) 북한의 정치 체제의 특성

북한의 정치 체제는 당-군-국가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

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 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이 수령독재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로부터 현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당의 지도성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당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독재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제2절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대주의와 종파주의 논리로 제시했던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천되었다.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김정일은 1974년 이래로 주체사상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내세우며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생존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공식화하게 된다.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논리로서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소련에서 흐루쇼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1인 독재

지배체제 비판을 촉발하였으며, 북한은 이 같은 비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1인 독재 지배체제를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주체사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용	제기 시기	배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1955.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 사망 ● 당내 남로당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6.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 감소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 김일성 움직임 고조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1957.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 운동 ● 당내 연안파, 소련파 숙청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1962.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분쟁 심화 ● 미·소 공존 모색 ● 한국의 5·16 군사쿠데타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1966.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분쟁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1967.5.28)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 8차 전원회의(1974.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 전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제6차 당 대회(1980.10.10)	●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 공식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일지배 이념화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 김정은 체제 출범

(2) 주체사상의 내용적 변화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

다. 유일사상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주체사상은 1980년대 들어서 김정일의 해석권 독점을 통해 더욱 체계화 된다. 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축매제로 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논리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은혜, 의리, 충효의 교환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도덕과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

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는 등 북한정권 수립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의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워 왔던 자주적·자립적인 정치 경제 체제의 수립과는 정반대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은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군정치가 통치논리로 부상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이념적 영향력은 더욱더 저하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3) 주체사상의 한계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현실적인 사고에 기반한 정책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이념적 구호에 치중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위기로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주체사상 보다는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 구호들을 내세워 체제 안정화 및 생존논리로 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북한에서 수립되기는 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위기 상황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위기극복 및 체제생존을 위한 논리로 여러가지 통치 이념을 내세웠으나, 결국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준 이념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 하에서 인민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기는 커녕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2. 선군사상

(1) 선군정치

북한은 2010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고 언급되었듯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초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북한의 핵심적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체제위기 극복 및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망후 유신통치 시기에 지속된 ‘고난의 행군’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선군정치는 그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을 신격화한 정치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원자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 하였던 것이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북한의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논리를 강화하는 내적 요인들이다. 남북한 체제대결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북한이 군사 부문을 내세워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 요인이다.

(2) 선군사상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 통치 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김일성의 빈 자리를 채우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대안적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김정일은 체제고수와 함께 주

체사상의 수령유일체제 정당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혁명 원리는 총대에 의해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로서 ‘총대 철학’에 기초한 혁명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상은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체계를 심화시킨 규범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선군사상에서는 혁명과 건설 과정에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국가기구 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방위원회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나라의 전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의 위상과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 등을 고려하여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북한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시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바 있다. 반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문화하고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군사국가화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 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는 결국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지배를 위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2003. 12. 22 노동신문)를 주장한 이래 선군정치의 목적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통해 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동시에 4대 제일주의 중 하나인 ‘우리 사상 제일주의’를 ‘김정일 사상 제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다. 또한 북한 정권 지도부의 불안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민적 의무에 기초한 애국심과 ‘애국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1년 9월에는 일심단결의 정신, 불굴의 강행군 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9.28 당대표자회 정신’의 관철을 통해 당 영도체계 강화와 김정은 ‘3대세습’ 공고화 및 체제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3. ‘김일성-김정일주의’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였으며,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 대표자회(2012. 4. 11)에 앞서 발표한 ‘4.6 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2014. 4. 24)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옹호를 높이기 위한 지도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를 인민대

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만능의 보검으로 내세우는 선군혁명사상을 밝혀주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이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북한 정권으로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적·혁명적 계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치논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였다. 김정은은 이른바 김정일 애국주의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2012. 8. 3 노동신문) 당 중앙위원회 담화(‘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 7. 26)를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의 실천이었다. 김정은은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의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결속 및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2012년 10월 2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였고, 2015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5대 교양 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제3절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1. 북한의 권력 구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공통점으로는 첫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1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둘째, 오직 한 가지 가치체계만을 주입함으로써 사회교육과 통합을 위한 맹목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셋째,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구성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공산당의 정책결정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임을 분명하게 표방한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

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력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1) 김일성 정권의 권력 구조

사회주의 헌법(1972년) 이전의 권력구조

일반적으로 정권의 획득과 유지,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정치에서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는 것은 권력투쟁을 통해 획득한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북한 정권에 있어서 권력구조를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에 바탕을 둔 정치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에 정치권력구조를 규정한 것은 김일성의 '민주기지 노선'이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도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테제(1955)로 재확인하면서 지속적 혁명을 강조하였다. 애당초 북한 정권의 헌법은 1948년 수립 당시 분단된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내각제 성격의 헌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분단된 미완성 국가로 규정하고 법치국가의 형성보다도 혁명정당이 정치과정을 전면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노동당 유일 지배'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금까지도 북한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가 1956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하여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주노선'에 기초한 수령 절대주의의 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수령은 당을 조직하고, 그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위상이 정해짐으로써 당이 완전히 수령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2차 당 대표자회(1966. 10.)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 11.) 사이의 당 권력구조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수령제가 국가제도로써

확립된 것은 “조선노동당은 국가의 혁명수행 및 당 건설에 있어서 유일사상체제를 당내에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1970년 ‘노동당 규약’ 채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의 권력구조

북한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권력구조는 소련을 모방하여 노동당 총비서가 내각수상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원수를 맡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주석이 국가원수였다. 즉, 헌법 제정 및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국가 주석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원칙 아래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설치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그리고 재판소와 검찰을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전무력(全武力)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1972년 헌법의 핵심은 주석의 ‘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노동당 총비서 겸 국가 주석인 김일성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권력구조는 수령의 의도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

노동당 제6차 대회 후의 권력구조

북한 정권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권력구조의 기본골격을 구성하게 된 것은 1980년 10월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개정(‘80년 당 규약)을 통해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수령의 존재와 위상만 제외한다면 조직 면에서 거의 유사한 중국의 경우, ‘당의 지도’라는 원칙 아래 중국 공산당이 군·행정·입법·사법기구 위에 군림하는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서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24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제6기 제1차 전원회의의 지도부 선출에서 김일성과 김정

일만 당내 3대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출됨으로써 김정일이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2)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1998년 헌법의 권력구조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일성 유훈통치를 해오던 북한은 199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를 국가 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개편된 권력구조의 특징은 첫째,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권력구조로 복원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권력의 정점으로 격상시킨 점, 둘째, 혁명원으로 세대를 권력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세대교체를 통해 신·구세대 간 조화를 꾀한 점, 셋째, 기능분립을 통한 형식상의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내용상으로는 국방위원장 1인 독재체제라는 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헌법 및 2010년 개정 노동당 규약의 권력구조

선군정치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 온 북한 정권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상을 계기로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

고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라는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이는 김일성 독재체제 공고화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전념하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대세습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의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1980년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처럼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마침내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3)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은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2012.4)에서의 김정은 중심의 국가체제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및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 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더욱이 장성택 숙청 이후 2014년 4월 9일에 개최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한 것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변함없이 유지시킴으로써 권력구조의 안정화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를 주도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당의 영도적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분야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당 규약 27조)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체제는 노동당과 군대의 두 기둥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

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등 3개의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을 지탱시켜 온 핵심 권력구조는 역시 ‘당’이라는 독재 조직이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원천적 기반인 북한군의 성격을 당 규약에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노동당

(1) 노동당의 형성 과정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과 북조선공산당

해방 직후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1945. 9. 11)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소련 군정은 “서울의 조선공산당을 중앙으로 인정하되, 평양에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을 둔다”라는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이어 소련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1941.10.10)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10월 20일에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을 결성하였다. 이어 정권문제, 대중단체조직에 관한 문제, 통일전선 문제 등을 논의한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1945. 11. 15)에서 김일성은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적 지지기반과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해 “임시적인 중앙 주권 기관을 창설할 것”을 제의하고 정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 노동계급의 영도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사회에서 통일전선, 대군중관계 등을 주도할 만큼의 충분한 역할을 갖추지 못했던 북조선 분국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2.17~18)에서 공

산당 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 노선 등을 강조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남조선노동당 창당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공산당 지도하의 정권을 수립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에 대한 결정적 해법을 제시해 준 것은 스탈린이었다. 1946년 7월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을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김일성은 7월 22일에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약칭 북민전)를 출범시키면서 ‘조선발전에 관한 기본과업’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다가올 각급 인민회의선거에 대비해 공산당 중심의 통일전선을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은 그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이어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양당 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한 후,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창립 대회를 통해 ‘북조선노동당’이 출범하였다. 농민과 노동자들을 모두 포용하는 대중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회의였지만, 이미 김일성이 북조선에서 최고지도자로 공인되는 분위기였다. 당 강령과 당 규약 채택, 당 지도부 구성을 마친 ‘북조선노동당 창립 대회’가 ‘조선노동당 제1차 당 대회’이다. 그 당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상임위원 구성은 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 등 계파별로 안배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의 정치연합적 권력구조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일 권력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조선노동당 창립 때처럼 소련 군정은 이 시기에 전개된 남한의 좌익운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합작 운동 및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좌익 3당의 합당을 통한 ‘남조선노동당’의 창당을 유도하였다. 북한의 ‘소련화’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던 스티코프는 이를 위해 10월 22일 평양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소

련 점령군과 북조선 당국의 설득과 위협을 토대로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이처럼 소련 군정은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창당을 막후에서 조종한 총기획자였던 것이다.

노동당 창당

소련 군정이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을 향해 전진하면서 1947년 2월 입법기관 창립을 시작으로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거쳐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함으로써 북한의 '소련화'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정부 수립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소련의 지시 아래 개최된 노동당 제2차 대회(1948.3.27-30)를 통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위상은 약화된 반면, 김일성의 당 내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제2차 당 대회는 앞으로 다가올 정권 수립과 합당을 위해 거쳐야만 할 정치적 정지 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기에 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파의 약화와 김일성계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북조선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이어서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당 대회 없이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박헌영과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2)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계급적 당이며,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수령의 사당(私黨)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당의 성격을 근로대중의 정당에서 김일성 개인의 정당으로 변화시킨 것은 오늘날 공산당들이 노동자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분명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정일은 이렇게 사당화한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

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 독재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위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도 수령의 존재와 영도라는 점만 제외하면 북한의 노동당과 유사하다. 1954년 중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불변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도 입법·사법·행정기관은 존재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은 없으며 공산당이 인민해방군·국무원(행정)·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사법기관(사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198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은 인민에 속한다”(29조)고 규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군의 장악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

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 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당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 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독재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노동당의 위상은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요컨대, 노동당은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국가제도를 통해 실천하는 역할을 주로 관장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3) 당 조직 체계와 기능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 체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레닌이 자신의 독재

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반대자들을 ‘인민의 적’이라는 미명하에 숙청 하는데 활용한 제도로써 높은 악명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1인 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비서국 산하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한다. 그에 따라 당의 핵심기능인 ‘당 생활지도권’을 장악한 김정일로서는 ‘생활총화’와 당 세포비서의 세포 조직활동을 통해 간부 동향을 파악·통제함으로써 수령 절대주의 체제 및 김정일 지도체제 확립에 필수적인 당·군·정권기관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 이념 강조, 당 총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당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 대회이다. 과거 소련 공산당의 최고 기구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였다. 중국 역시 당의 최고 권력기관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당 규약은 당 대회가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차 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당대회	1946.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창립에 대한 보고 ● 당 강령·규약·기관지에 대한 보고 ●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선거
제2차 당대회	1948.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3차 당대회	1956.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채택)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4차 당대회	1961.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5차 당대회	1970.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6차 당대회	1980.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 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0년간 당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개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 중앙위원회가 당 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총비서의 지위를 명기하고 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표 2-3.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차 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당대표자회	1958.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당조직 문제
제2차 당대표자회	1966.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당조직문제(당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정김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당 규약을 개정(당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권한을 부여) 당 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당대표자회	2012.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당 중앙위원회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및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 대표자회 및 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공식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31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신설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소련의 경우에도 정치국은 공산당 내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정치국의 위상 변화는 후계구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3차 당 대표자회(2010. 9. 28)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및 확대회의(2013. 12. 8)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정치국의 위상이 복원되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경우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사망), 김영남, 최영림(해임), 조명록(사망), 리영호(해임) 등 5명으로 새롭게 조직된 바 있다. 중국의 경우도 최고 권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7명의 상무위원

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북한과 크게 다르다. 특히 후진타오가 장쩌민으로부터 당을 넘겨받은 2002년 제16기 1차 전체회의 이후 시진핑 국가 주석에 이르기까지 정치국 상무위원은 사실상 ‘임기 10년’의 제도화된 권력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당 내 모든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권력기구는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수령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 및 제4기 1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0. 12)에서 신설되었다.

당 비서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로서, 2015년 10월 현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강석주, 오수용 등 9명의 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국이나 비서국보다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역시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19개 전문부서 가운데 최대의 실권조직인 조직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2010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정책과 관련된 단독 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해 왔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부터는 상설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제17기 5중전회) 폐막일인 2010년 10월 18일에 당시 시진핑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력 승계와 관련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2010년 당 규약 개정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8.20, 8.28, 9.17)에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단위에 각급 군사위원회를 두었다.⁵⁾

당 지방조직

노동당의 지방 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의 당 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 같은 중첩적 위계구조는 당

5) 북한지식사전 178p

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에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도 동시에 지닌다.

그림 2-1. 노동당 기구

* 당대회 1차 '46. 8. 2차 '48. 3
3차 '56. 4, 4차 '61. 9
5차 '70. 11, 6차 '80. 10

* 당대표자회 1차 '58. 3, 2차 '66. 10
3차 '10. 9, 4차 '12. 4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15. 10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

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 위원회의 책임비서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행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당-정 관계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의 당내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며 추진된 정책은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당-군 관계

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군부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 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그 점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은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총정치국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는 일반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총정치국 지도과, 행정과, 간부과를 통해 북한군을 지도·통제한다. 즉, 당 중앙위원

회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지도과는 총정치국 조직부 당생활 지도과를 통해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통제한다. 한편, 당 지도부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군 내에 조직되어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강한다.

물론 이러한 당-군 관계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한군 총정치국의 조직이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에서 중대까지 군 지휘체계의 구조와 1:1로 대응하도록 전 군대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에 의한 군 통제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당-사회단체 관계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제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중앙기관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 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중앙기관으로는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및 국가의 전반적 무력·국방건설사업 지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서 국가의 전반 사업 및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결정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관련 사업을 관장한다.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소와 재판소는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철저하게 당에 예속되어 있어 자율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국방, 대내정책, 대외정책, 사법안전, 경제정책) 중 하나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국가 주석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 사법기관인 재판소와 검찰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하게 보장한 제도적 장치로서 당연히 주석의 '지도'는 헌법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중앙인민위원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개정 헌법에 의해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

하여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그리고 2009년 헌법 개정에 이르러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가 오늘날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역시 국방위원장 중심 체제를 공표한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가 국가 주석과 ‘당 중앙’(김정일 비서를 의미)이 지도하는 체제였다면 김정일 시대는 ‘국방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한 체제였던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그 밑에 1인의 제1부위원장(공석), 4인의 부위원장과 5인의 위원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신설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고, 제1부위원장직은 폐지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위원장의 명령 및 국방위원회의 결정·지시·집행의 감독,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하며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또한 외국과의 중요 조약의 비준 및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한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소련이나 중국의 입법 기구와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입법기구였던 '소련방최고회의'는 헌법상 매년 2회 열리게 되어 있었으며, 간부회의의 특별 요청이나 연방공화국의 요구 또는 대의원 전체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중국의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 한 차례 대회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최고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최고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 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 수위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공포했다.

2013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3. 31)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헌법 개정, 법령 신설, 인사 개편 등 총 8개 의안을 토의·결정한 '최고인

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 4. 1)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 우주개발국 신설, 박봉주 내각총리 재기용을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시켰다. '금수산태양궁전법'도 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첫 회의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2014. 4. 9 개최)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이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 안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는 67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55%인 376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현행 부문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폐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발표,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이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헌법해석 권한에 의해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의 직책으로 격상시켰던 것이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당시 소련의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를 모방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했다. 1936년 '스탈린헌법'에 의하면, 소련 최고소비

에트는 사실상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법령을 해석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정령'을 공포할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 까닭에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장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다음 서열에 자리할 수 있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소련의 최고소비에트 상임 위원회와 거의 동일한 위상과 권한을 갖고 있다.

(3) 내각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5년 기준 7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 이양에 따라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4) 사법기관

검찰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 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

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법집행기능과 더불어 체제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최고검찰소 그 밑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북한 검찰은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최고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검찰소가 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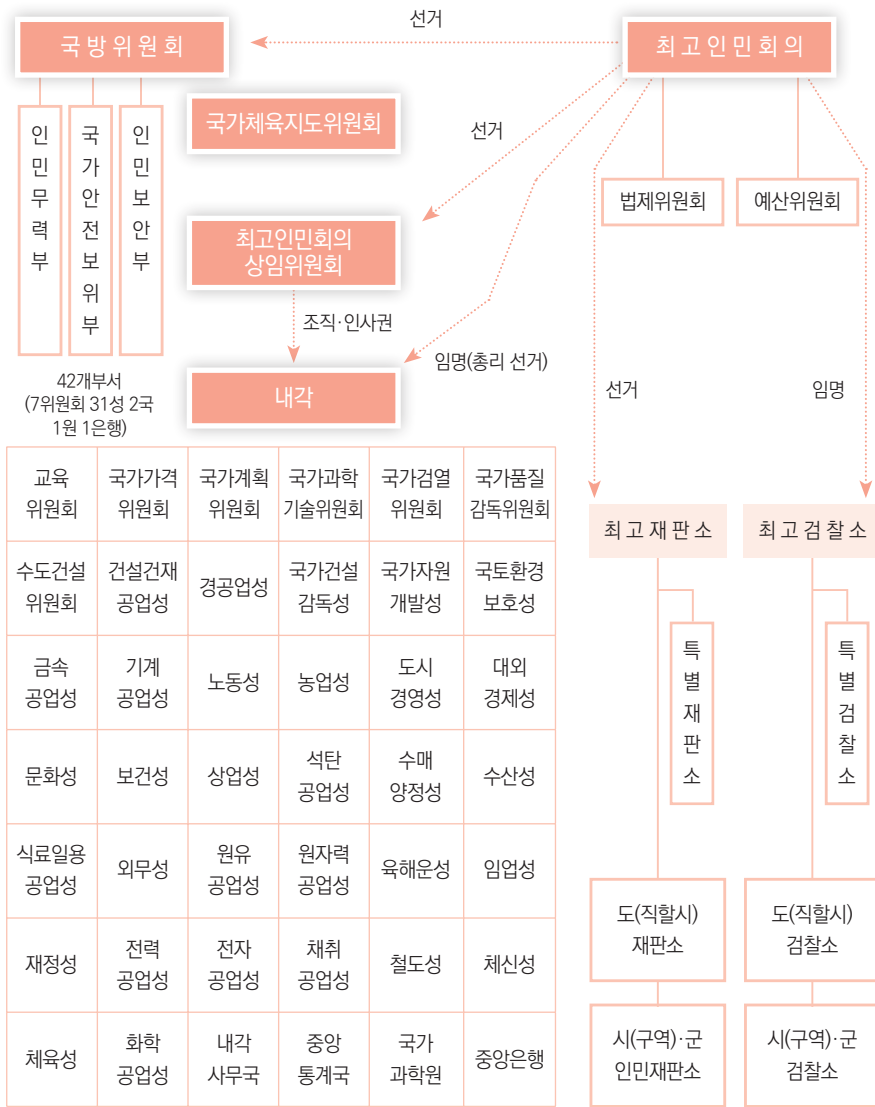
재판기관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최고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군·보위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판결 및 즉시 집행된 바 있다.

그림 2-2. 정권기관



42개부서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교육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수도건설위원회	건설건설공업성	경공업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	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노동성	농업성	도시경영성	대외경제성
문화성	보건성	상업성	석탄공업성	수매양정성	수산성
식료일용공업성	외무성	원유공업성	원자력공업성	육해운성	임업성
재정성	전력공업성	전자공업성	채취공업성	철도성	체신성
체육성	화학공업성	내각사무국	중앙통계국	국가과학원	중앙은행

도(직할시·특별시) 인민위원회

평양시	나선시	남포시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출처: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제4절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1. 권력 세습의 정치 체제

북한 정권은 수령 독재 체제와 세습체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독점적 단일지배체제를 구축한 이후 1970년대 들어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는 부자 권력세습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명분으로 도전 세력들을 숙청해 나갔다. 숙청의 핵심 논거로 제시된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계속혁명론과 수령론에 기초한 후계자론이었다. 그것은 결국 세습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정치적 숙청 과정을 거쳐 유일체제 구축 및 후계체제 공고화를 정당화하는 정치 체제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와 내각 등에서 업무경험을 쌓고 31세의 나이에 당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주도하였으며 1980년의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선출되어 당과 군을 주도하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핵심적 대외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김일성의 공식적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지

도력을 행사하였다.

3대 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할 무렵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조원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이 2~3년간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 각급 기관 및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 간부,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김정일은 북한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 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이 있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91년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김정일의 주도적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군사 지도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나이가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후,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북한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1997년 말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이듬해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심각한 경제난과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유지해 나갔다.

1964년 대학졸업 후 30년간 당 사업을 통해 나름대로 후계자로서의 통치역량을 축적해 온 김정일이 구축한 세습 권력의 정치 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독특한 1인 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사회

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1인 지배를 정당화해주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군사우선주의이다.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 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 초소 우리 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 정치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 구호들이 선군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 구호가 전면에 내세워 지면서 군부는 다양한 민간 영역을 잠식했다. 군이 주요 건설사업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은 군 주도로 이루어진 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 침체된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서 노동의욕을 상실해버린 북한주민들을 산업현장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체제위기 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강성대국론’을 내세웠던 점을 들 수 있다.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며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 주민의 결속과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실현하자는 것이지만 북한 스스로는 사상·정치·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다.⁶⁾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적 구호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을 답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세가지 방도를 제시했다. 첫째, 당을 중심으로 군중을 단결시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 정치사상 진지를 다지고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둘째, 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군기’를 확립하고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노동적위군 대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국방공업 부문에서 첨단무장 장비를 증산한다.

2. 김정은 체제의 형성

(1) 3대 세습과 김정은의 등장

김정은 체제는 후계과정을 거치면서 김정은이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6) 강성대국론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 등장한 것으로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해’로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1년 들어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격하시키고,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였다.

독점, 군부 숙청 등을 통해 공고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구축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 초부터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권력기반을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또한 당 정치국 회의(2012.7.15)를 통해 김정은이 원수(2012.7.18)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2) 김정은 체제 공고화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가 현재와 같이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개최를 통해서였다.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규약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조직 문제와 관련 직제는 물론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는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기구(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및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엘리트들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천리마 세대(1950~60년대 천리마 운동 세대), 3대 혁명 세대(1970년대 중반 3대혁명소조 운동 주도), 고난의 행군 세대(90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령인 혁명 1세대뿐 아니라 천리마 세대들까지 점차 권력의 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3대 혁명 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김정은 정권 말기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주로 김정일의 대학 동기, 당 조직지도부 출신 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50~60대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당·정·군 내 40~50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어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세대교체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권력 계층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는 주석단 서열, 직책, 현지지도 수행 빈도, 김정일 부자와의 관계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지표가 주석단의 서열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이후 북한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주석단 서열을 분석해 보면 군부 인사의 상위권 진출이 현저한 반면에 노동당 간부들의 주석단 서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

되지 않아 1993년 이래 당 정치국의 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위상 약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김정일 체제하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지위 상승이 당 정치국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를 보면, 당 중앙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재편을 통해 당 정치국의 위상은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 수준으로 복원되었으며 당 지도기구가 정상화 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에서의 권력 정비를 통해 당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주석단의 20위권 안팎의 서열을 대부분 차지한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김정은에게 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당과 군의 핵심 인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요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 3. 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 4. 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와 숙청을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 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 ‘김일성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주의 유일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헌법이나 조선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 점에서, 장성택과 그의 측근인 이용하·장수길에 대한 숙청은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라는 죄목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성택에 대한 ‘피의 숙청’을 계기로 북한 노동신문(2013. 12. 6)에서 김정은을 ‘최고 영도자’ 대신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함께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2013. 12. 17)를 통해 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한 최룡해 ‘결의 연설’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최측근이었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숙청함으로써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한 권력구축과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이 김일성 1인 독재체제 아래에서 반대파 숙청 이후에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다면, 김정은 체제의 경우에는 김정일 사후 장성택과 현영철마저 숙청해버린 상태에서 체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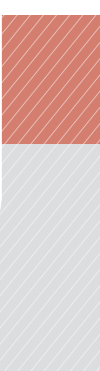
I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제2절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

제3절 북한의 대외관계



Key Point

01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 활동은 한반도 공산화와 대남 우위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 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02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생존의 핵심 관건으로 보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본과는 식민지배 보상금 등 실리확보 차원에서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03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긴밀화하여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제하면서 경제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수단으로 하여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기 위한 '벼랑끝전술 (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1.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과 목표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헌법(제17조)과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정책 이념은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로 ‘반제 자주 역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이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로 규정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 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제질서 재편이 본격화되자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마르크스-레

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 투쟁의 목표는 더욱 강조하였다. 결국 북한은 자주·친선·평화라는 외교정책 이념 아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우호적인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는 한반도의 공산화와 대남 외교 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권,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구조와 이념갈등 요인 때문이다. 반면,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남한과 수교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들어 극심한 경제난이 심화됨으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북한은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개선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체제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미·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

결 상황 속에서도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며 핵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와 대일 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로 보고 국제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선진기술 도입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동남아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매개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려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⁷⁾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고조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이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2006.10, 2009.5, 2013.2)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 연평도 포격(2010.11),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2015.5), DMZ 목함지뢰 폭발(2015.8)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7)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감을 조성하는 전술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대립 상황에서 외교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양측이 사용하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위협 조치와 협상 행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견제하고 경제원조를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및 러시아와 사안별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선택적 협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집행되어 왔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국제담당 비서와 비서국 산하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대외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 때 국가 주석 직책이 폐지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및 외교 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즉,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정당간 외교는 당 국제부, 의회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민간 외교는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수립, 협정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 30여 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면서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 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두 차례의 헌법 개정(2009.4, 2012.4)을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특사권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지닌다고 명문화하였다.

제2절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

1.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던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시기별로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948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외교, 2단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비동맹국 외교, 3단계는 1970년대 자주외교, 4단계는 1980년대 대서방 실리외교이다.

(1) 중·소 사회주의 진영 외교: 1948~1950년대 초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북한은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는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필요하였다. 그 중심에 전 세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이끄는 소련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이 1950년대 초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계기를 통해 혈맹 관계를 맺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 중심의 외교에 치우치지 않고 중·소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경제 원조를 받았다.

(2) 비동맹국 외교: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경제지원 획득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고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1953) 이후 후루쇼프가 집권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이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1955년 4월 반둥회의에서 '반둥 10원칙'이 제시되면서 북한의 외교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국한된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및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관계가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 북한은 중·소 이념 분쟁과 남한에서의 군사정권 등장, 쿠바 사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신생 독립 국가들의 유엔가입 증가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더욱 주력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의 유엔가입 증가와 1960년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 문제가 제기 되면서 대남 관계에서의 국제적 입지 우위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와 10원칙

회의 날짜: 1955년 4월 18~24일. 회의 장소: 인도네시아 반둥
참가 대상: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독립국 대표

회의 주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긴밀한 관계 수립, 냉전상황 속에서 중립 선언, 식민주의 종식 등

회의 내용: 국제연합헌장의 제(諸)원칙, 1954년 6월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와 인도 네루 총리의 회담 결과 발표된 '평화 5원칙'을 통합한 세계평화 및 협력에 관한 '반등 10원칙' 채택

10원칙 내용: ①기본 인권 및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 ②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원칙 준수 ③모든 인종의 평등성과 인종의 평등원칙 준수 ④내정 불간섭의 원칙 및 불개입 존중 ⑤유엔 원칙에 합의하는 각 국가의 개별 및 집단 자유권 존중 ⑥집단 방위협정과 관련 대국(大國)의 특수 이익을 위한 불사용과 내전 불간섭 ⑦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 사용 금지 ⑧국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⑨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⑩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김일성은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투쟁, 신생 독립 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1961.6)', 중국을 방문해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1961.7)'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우방국인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분쟁 초기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중점을 두었지만 1965년 2월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중·소 양국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즉 등거리외교 정책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소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대부분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대남 관계에서의 우위 확보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국제적 입지 강화를 모색하던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 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⁸⁾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 나섰다.

8)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8.12

(3) 자주외교: 1970년대

북한은 1971년 9월 중국의 유엔 가입과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등 주변환경이 변화되자 외교 부문에서의 자주 노선을 견지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실리를 추구하였다. 즉 1960년대 중반 이후 강조하기 시작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원칙을 견지하면서,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북한에 호의를 보이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비동맹국 외교도 적극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북한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 이후 제6차 대회(1980)까지 66개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제3세계 지역에서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외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외상회의(8.25~30)에서 ‘비동맹회의’ 정식 회원에 가입하였다. 1975년 개최된 제30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방측과 공산측의 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등 북한의 영향력이 유엔 외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대남 도발과 외채상환 문제, 위폐 및 외교관 밀수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4) 대서방 실리외교: 1980년대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실리외교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서방외교를 대규모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 당시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으로 장기 경제침체에 진입한 상태였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선택(1978)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사회

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현실로 입증해 줌으로써 북한의 외교노선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로부터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표명한 ‘자주·친선·평화’의 외교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관계에 중점을 둔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협조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1983년 10월 버마(현재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은 북한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을 야기하는 등 외교관계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의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1980년대 북한의 외교정책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었으며, 선진 자본주의 기술도입과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외개방에서도 미미한 성과에만 국한되었다.

2. 탈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소련의 붕괴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등 탈냉전 시대가 들어서자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1990년대는 미·일 외교관계 정상화,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미·일 외교 정상화 추진: 1990년대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와 경제침체, 국제적 고립 상황이

접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공존 경쟁의 다극 체제로 변화되는 데탕트 분위기에 맞춰 북한의 외교정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이완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냉전 시기 이념·체제 관계의 동맹국이던 국가들이 남한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모색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편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28차례의 참사관급 접촉을 진행한 결과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1999년 3월 금창리 지하핵 의혹 시설에 대한 성격 규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식량 60만 톤을 지원받았다.

한편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1991~1992년 북일 협상을 8차례 개최하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1995년 3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 여당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고, 1995~1996년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일·북 간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이 두 차례 이루어진 데 이어 1998년 3월 일본 자민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북한이 1999년 8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더욱 냉각되었다. 그러나 미·북 간 ‘베를린 합의(1999.9)’를 계기로 북한은 일본의 정당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합의

(1999.12.3)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북·일 적십자회담을 개최(1999.12.19)하고 재북 일본인 여성 고향 방문 재개 등 4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2) 전방위 외교 추진: 2000년대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기간(1994.7.8~1998.8)을 거쳐 공식 출범(1998.9)한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량 아사 등 체제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 대외고립 탈피,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위해 대외정책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전방위 외교관계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최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전방위 외교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핵 카드'를 수단으로 '벼랑끝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BDA(Banco Delta Asia)은행 자금동결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받았다.

북한은 2000년 10월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기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2002년 연두교서)으로 지목하는 등 핵문제를 둘러싼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등 전통적 우방 국가와 일본을 비롯한 미수교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2000.5, 2001.1, 2004.4, 2006.1, 2010.5, 2010.8, 2011.5, 2011.8)과 장쩌민(2001.9), 후진타오(2005.10) 등 중국 지도부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정권 출범(2012)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대북 정책이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전 인민군 총 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2013.5)하고 류원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등 2015년 상호 간 경축행사 축하사절 파견(2015.9~10)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현재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김정일 생존 당시 정상 간 상호 방문(푸틴 대통령 방북-2000.7, 김정일 방러-2001.7, 2002.8, 2011.8)으로 전통적 친선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하였고, 현재 정상 간 상호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진-하산 철도 완공(2013)과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소치올림픽(2014.2)과 전승절 행사(2015.5)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푸틴 대통령 면담, 북·러 ‘친선의 해’ 선포 공동결의문 채택(2015.3) 등은 북·러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2000년 12월 영국, 2001년 3월 독일 등 2010년까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럽연합 유로화 사용 결정(2002.12), 유럽연합-북한 간 경험 및 북한 경제 현대화 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2004.8, 2005.10, 2007.10-평양), 북한 노동당 대표단(단장: 강석주 당비서)의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방문(2014.9) 등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북한

의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는 200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를 통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북한 당국의 거부로 중단되었다. 이후 제14차 북한과 유럽연합 간 국장급 정치대화(2015.6-평양)에서 논의되었으나 북한의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방문(2001.7), 태국과 말레이시아 순방(2002.3),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2002.3), 쩌득르엉 베트남 주석(2002.5) 등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의 북한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ASEAN) 외교를 중시하여 군사·경제 협력을 통한 실리 획득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성과가 미미하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은 2009년 6월 2일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한편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2014.8) 및 미얀마·인도네시아·싱가포르·라오스·베트남 방문, 강석주 당비서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몽골 방문(2014.9)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쿠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면담하고 ‘친선관계 영원’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탈 냉전시기 북한은 체제생존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미·일 관계 개선과 아시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 고립 심화 및 대북제재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제3절 북한의 대외관계

1. 미국과의 관계

북한이 대서방 접근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 간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 시기 북한의 대미 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써 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평화협정체결, 체제보장, 핵문제 해결, 인권문제를 통한 내정불간섭, 대북제재 해소 및 경제적 실익 추구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초기에 남북간 의제로 시작(1962)⁹⁾하여 미국과의 단독 협상의제(1974)¹⁰⁾로 선회한 이후 현재까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의제이다. 북한은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명의의 서한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3자회담 개최를 제의, 이후 1차 북핵 문제로 위기 국면이 고조되던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북미협상을 제의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2차 북핵 문제 제기과 미·북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또한 핵문제에서 '벼랑끝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여 왔다.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¹¹⁾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거부,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 제네바 합의'¹²⁾는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의 틀을 유지해 왔다.

9) 북한은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10)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대미 서한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침 서약 및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 제거 (2)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3) 조선경외로 부터의 일체의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 중단 (4) 유엔군 해체 (5) 외국기지화 반대

11)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1968년 7월 조인되어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5년, 북한은 1985년 각각 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고 같은 해 6월 탈퇴를 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1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12) 미·북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1993.3)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4년 10월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및 특별사찰 수용,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 후 제3국으로 이전 등이다. 미국은 북한 지역 내 경수로 발전소와 경수로 1기 완성 때까지 연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합의 사항 이행은 중단되었다.

1999년 9월 미·북 간 미사일 문제와 관련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한·일과 공조하여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경제 분야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과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으로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 미군 신원 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명확한 조치 등 미·북 간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 국가로 규정(2002년 연두보고서),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양측 합의사항 준수를 미국에 촉구하는 한편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제네바 합의’ 이후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아래 있던 핵 관련 시설의 동결을 해제(2002.12)하고 사찰관을 추방하였으며 NPT 탈퇴를 선언(2003.1.10)하였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중재 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한 3자 회담이 2003년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포기’를 강조하였으나 북한은 ‘선(先) 미·북 회담, 후(後)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다자 회담, 즉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6자회담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3-2)

표 3-1. 6자회담 개최 현황

구 분		개최 기간	주요 결과
제1차 회담 ¹³⁾		2003.8.27~29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2차 회담 ¹⁴⁾		2004.2.25~28	한반도 비핵화, 평화로운 해결 원칙 재확인
제3차 회담 ¹⁵⁾		2004.6.23~26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의 필요성,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별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제4차 회담 ¹⁶⁾	1단계 회의	2005.7.26~8.7	9·19 공동성명 채택
	2단계 회의	2005.9.13~19	
제5차 회담 ¹⁷⁾	1단계 회의	2005.11.9~11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 의지 확인
	2단계 회의	2006.12.18~22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및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3단계 회의	2007.2.8~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2·13 합의)
제6차 회담 ¹⁸⁾	1단계 회의	2007.3.19~2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2단계 회의	2007. 9.27~30	

- 13)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 보장 및 정치·경제 부문의 혜택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 포기에 필요한 조치를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해 나가자고 맞섰다.
- 14)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핵 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용 핵만 동결하고 평화 목적의 핵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핵 동결에 따른 경제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 15)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좀 더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이를 전제로 핵 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2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항구히 제공하고, 미·북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여 경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16) 제4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화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아 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로,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였고, 대북제재 조치가 이행되었다.
- 17) 제5차 3단계 회의에서 BDA 해결을 전제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에 합의하였다.
- 18) 제6차 1단계 회의에서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실무그룹 보고를 청취하고 초기 조치 이행 및 다음 단계 행동 계획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2단계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 제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10·3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의 5MWe 원자로와 핵 재처리 시설 및 핵 연료봉 제조 공장 등 3개 핵 시설을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하는 한편 핵 물질, 핵 기술, 핵 지식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표 3-2.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9·19 공동성명 (2005.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침공 의사 부재 확인 - 북한은 평화로운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 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 ● 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은 상호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관계 정상화 조치 - 일·북 관계 정상화 조치 ● 대북 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 경제 협력 증진 -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 한국은 200만kW 전력 공급 제안 재확인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당사국들 간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 개최 -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이행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별로 상호 조율된 조치
2·13 합의 (2007.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단계 이행 계획: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 미·북 관계 정상화 양자 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일·북 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 -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평화안보 체제 ● 다음 단계 이행 계획: 초기 단계 완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차 장관급회담 개최: 초기 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 체제: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별도 포럼에서 협상
10·3 합의 (2007.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노력 ●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



6자회담

여섯 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북 간 갈등은 지속되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프로그램 신고 목표 시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월 26일 핵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만료 100일(2008.10.11)을 앞두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해결 국면에 진입하는 듯 하였던 미북 관계는 같은 해 12월 8~11일 북한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시료 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은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 핵 확산 의혹 해소 등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이 천명되면서 북한의 대미 태도는 강경해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¹⁹⁾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²⁰⁾, 2009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²¹⁾ 등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였으며, 유엔 안보리가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19) 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20)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서는 화물·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1)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4월 16일 채택하였다. 성명은 대북제재 단체 및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시 상응하는 조치를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결정되었다. 한편 '2·29 합의'에 따라 진행하던 대북 영양 지원을 중단하였다.

제2094호²²⁾를 채택했다. 이후 중국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미·북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인권문제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최근 미·북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명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하였다. 북한은 2015년 9월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반대와 미국을 상대로 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중국과의 관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 상황으로 순치(脣齒)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을 토대로 하여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탈냉전 상황에서 이념보다 실리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22)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의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해 2013년 3월 7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는 의무조항 5개를 포함하여 수출 통제, 항공·선박 규제, 금융 압박, 북한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됐다. 제2094호는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억제 및 완전 포기를 위해 기존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한 강력한 결의로 평가된다.

교역에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1992년 8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8년여 동안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 교환 방문의 전통이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는 이념적 동질성,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방중하면서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2001년 1월 15~20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김정일은 당시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 관계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상하이 시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하고 나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성사된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2001.9.3~5)은 한·중 수교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쌀·석유·비료 등 지원과 대북 협력을 약속하고 양국간 당 대 당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정치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

2003년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대북 ‘16자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실질

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하였다. 4원칙은 고위층 상호 방문 전통지속, 협력 내용이 담긴 교류영역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1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경제 중심 도시(베이징, 광둥, 선전 등)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이때 박봉주 내각 총리,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리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등 경제 관료들이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중 친선의 해(中朝友好年)'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고위 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1.22~24)과 원자바오 총리(10.4~6)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총리가 수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3.17~20)하였다. 이러한 북·중 관계 속에서도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국면을 맞았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반대 성명 등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동참하였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중관계 강화를 위해 김정일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10년 5월 3~7일 단둥·다롄·베이징·선양 등지를 방문하고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층 교류 지속, 경제무역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2010년 8월 26~30일 지린·창춘·하얼

빈 등을 방문하여 창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등 경제협력과 지원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 해에 김정일의 연이은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천안함 폭침 이후 더욱 악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기간(5.20~27)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2010년 8월 창춘 합의 이행 노력 인정,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등에도 합의하였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3대세습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정일의 사망이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정세를 안정되게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 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2012년 7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30일~8월 3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2년 8월 장성택(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 및 관리, 나선 경제무역지대 항구 및 산업구

투자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문 등이 조인되었다. 또한 2013년 상반기 북한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 11월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 ‘혈맹’ 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미온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2013년 5월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2015년 9월 최룡해 전 노동당비서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10월 중국 공산당 류원산 상무위원의 북한 노동당 70돌 경축행사 참석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일본과의 관계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일본과 간접 교역 형식의 경제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부터 쌍방 간에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활발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간 데탕트와 미·중 우호 협력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개선도 다소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북일 수교 문제는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회담은 1991년 1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까지

지 11차례 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문제, 북한의 핵사찰, 일본인 피랍자 등 현안에서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진행된 접촉과 대화에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던 일·북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포괄 해결하기로 하는 한편 ‘일·북 평양선언²³⁾’을 발표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게 일시 고향 방문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일본 방문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피랍 희생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도 일본으로 귀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양국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년 만에 제12차 수교회담을 개최(2002. 10.29~30, 쿠알라룸푸르)하였으나 일본의 핵 개발 포기 요구 및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차기 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2004년 5월 22일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피랍 생존자 가족 8명 가운데 5명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고 미군 탈영병 찰스 켄킨스는 가족과 나중에 제3국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일본이 납득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 대신 일본은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며, 북한이 ‘일·북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대북제재 법안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23) 일·북 평양선언으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정상화 후 대북 무상 자금 및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경제 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 문제의 포괄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북 관계개선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사망한 후 2004년 12월 일본으로 송환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진위 여부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었고, 북한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2006년에 재개된 제13차 수교회담(2.4~8, 베이징)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였다. 회담 결렬 이후에는 일·북 간에 대화 채널이 단절되고 상호 비난을 강화하는 등 대립 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한편 일·북 간 전세기 일본 착륙 금지, 북한 당국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 등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일본과 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2·13 합의 제2조 4항에서 일·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추진하기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8년 6월 11~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재조사 실시를 약속하는 한편 항공기 ‘요도호’의 납치범 및 가족을 일본 정부에 인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인도주의 차원의 물자 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일·북 간 민간인 왕래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에 출범한 아소 다로 정권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일·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

의 제1874호(2009.6.12)에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금지 등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2009년 9월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선 북핵·납북자 문제 해결, 후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납북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불참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일본에 6자회담 참가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2010년 6월 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북 간 대립은 지속되고, 북한에 의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됨으로써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또한 2011년 8월 노다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미·북 회담, 6자회담 등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제를 유지하였다.

북한의 대일 외교는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 문제 협의 이후 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12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북 간 적십자회담으로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이 요청한 북한 영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 논의가 있었다. 또한 8월 29일 일·북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이 열린 데 이어 2012년 11월 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은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 북한 측이 “납치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후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지마 내각 관방참여가 방북하고, 2014년 일·북 간 국장급 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다(2014.3, 2014.5, 2014.7). 특히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일·북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측은 재조사 개시 시점에 민

간인 왕래 규제, 송금·휴대금액 제재, 인도주의 목적 아래에서의 북한 국적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7월 4일에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날 합의한 세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4. 러시아와의 관계

탈냉전 시기 이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이념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가를 지원하였다. 북한은 1961년 7월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965년 5월 '조·소 군사원조 협정',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 및 경제지원 등을 받았다. 김일성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등거리 외교로 중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 지대 투자 확대와 대북 원유 제공, 금속공업 제품 교환 등 양국 간 무역 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핵심 쟁점인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가서 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체결에 이어 소련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과 푸틴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²⁴⁾'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 러시아를 방문(8.20~24)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TKR와 TSR 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07년 3월에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고, 10월에 북·러 차관급 협의회도 4년 만에 개최되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

24) 북·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쌍방의 협조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북·러 신조약 정신 확인, 상호 침략 또는 안전 위협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 유엔 헌장 목적·원칙 존중과 이 헌장을 위협하는 힘의 사용·위협 반대, 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준수, 북한 미사일의 평화 성격 강조, 아·태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 구축 반대, 국제 경제 협조와 확대, 쌍방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연계 적극 발전 등이다.

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을 지지하였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체제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2008년 4월 모스크바에서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북·러 협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초 평양에서 나진-두만강 철도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북·러 수교 60주년을 맞아 10월 4일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9년 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의 북한 방문 등 교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을 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였다. 2011년에는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8.20~25)하였다. 김정일은 8월 24일 울란우데 군부대 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 가스 수송관 건설 문제 등을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 13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항공운수국 대표단과 북·러 간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김정은 정권도 북·러 관계에서 친선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소련 붕괴 이전 제공한 차관과 관련된 채무(110억 달러)의 90% 정도를 탕감 받는 재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²⁵⁾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2015년 6월

25) 2012년 9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의 이전 소련 시기에 제공된 차관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에 진 빚 조정에 관한 협정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친선 관계 발전과 상호 관심사 문제를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북동부 경제특구인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의 하산을 잇는 약 54km의 철도 개보수(2013.9.22.), 푸틴 대통령의 대북 차관 탕감 협약비준(2014.5),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6차 회의(2014.6)를 통한 양측 간 무역 대금 루블화 결제 합의 등은 북·러 상호 간 경제협력 확대를 보여준다.

제7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2015.4)²⁶⁾에서는 교역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조성 및 북한 내 전력공급 사업, 산업별(농업·공업·광산업) 협력 사업,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이행²⁷⁾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리관계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확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완공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과 같은 3자협력으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을 도모하며 실리를 취하는 한편 남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6)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차(1996.4) 평양에서 개최, 제2차(1997.10) 모스크바, 제3차(2000.10) 평양, 제4차(2007.3) 모스크바, 제5차(2011.8) 평양, 제6차(2014.6) 블라디보스톡, 제7차(2015.4) 평양.

27) 2014년 12월 '나진-하산 물류협력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현재 러시아 시베리아산 유엔탄은 북한 나진항을 거쳐 한국의 경북 포항까지 운송되고 있다.

5.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1)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 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가운데 외교 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유럽연합 개별 국가와의 관계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유럽연합 국가와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 유럽 순방에 나선 리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은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을 방문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찰 및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2002년 12월에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럽연합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28)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공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계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유럽연합의 대북 경제 관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경제개혁 관련 워크숍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북한 외무성이 공동 주최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 전문가와 외교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제1차 워크숍에서는 2004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유럽연합·북한 경제협력 발전 방안, 북한경제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2차 워크숍은 2005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제관리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외자유치 전략, 국영기업과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워크숍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농업 및 경공업 분야, 무역 투자 활성화, 금융결제시스템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도 인권문제로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하여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주도해 왔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법에 따른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총회가 북한에 인권개선 조치를 지속해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11월 유럽연합이 유엔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 간 대화는 단절되었으나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일정한 진전이 합의된 이후 재개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제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유럽의회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 내 모든 은행은 달러 계좌를 유로 계좌로 이전 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2002.12.2)

침과 관련해 6월 17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 2014년 9월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교류는 지속되어 왔다. 2015년 6월 북한-유럽연합(EU) 간 제14차 국장급 정치대화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 기타 국가와의 관계

북한은 유럽연합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 관계를 확대할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은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활발한 비동맹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 초 ‘자주·친선·평화’의 대외정책 기본 원칙 제시를 계기로 북한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해체와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이 급선무이던 북한에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는 더욱 중요하였다. 여기에 유엔에서의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후원 국가가 필요한 상황도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관계 강화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북한이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지속 추진해 온 배경에는 ‘반제·반미 공동

전선' 형성과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유엔에서의 비동맹 그룹 국가가 많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핵 보유가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동맹국들과의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 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2·13 합의' 도출 이후 2007년 상반기에 북한 대표단의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방문이 10건으로 북한 대표단 전체 외국 방문 비율의 52%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8년에도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라오스 총리 일행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북한 외교 대표단의 싱가포르와 이란 등 아시아·중동 지역 방문이 추진되면서 비동맹국 외교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대외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2010년 들어 가봉·감비아·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과 베트남·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2011년과 2012년 몽골·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북과 북한 외무성 대표단의 몽골·탄자니아·나미비아·모잠비크 방문 등 비동맹국 외교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탈피하기 위해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2013년 6월 김격식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으며, 박의춘 외무상이 제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수교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2013년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박의춘 외무상은 기니·베냉·민주콩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3년 9월 몽골 경제무역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은 몽골과의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 위원회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초청으로 2013년 10월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김정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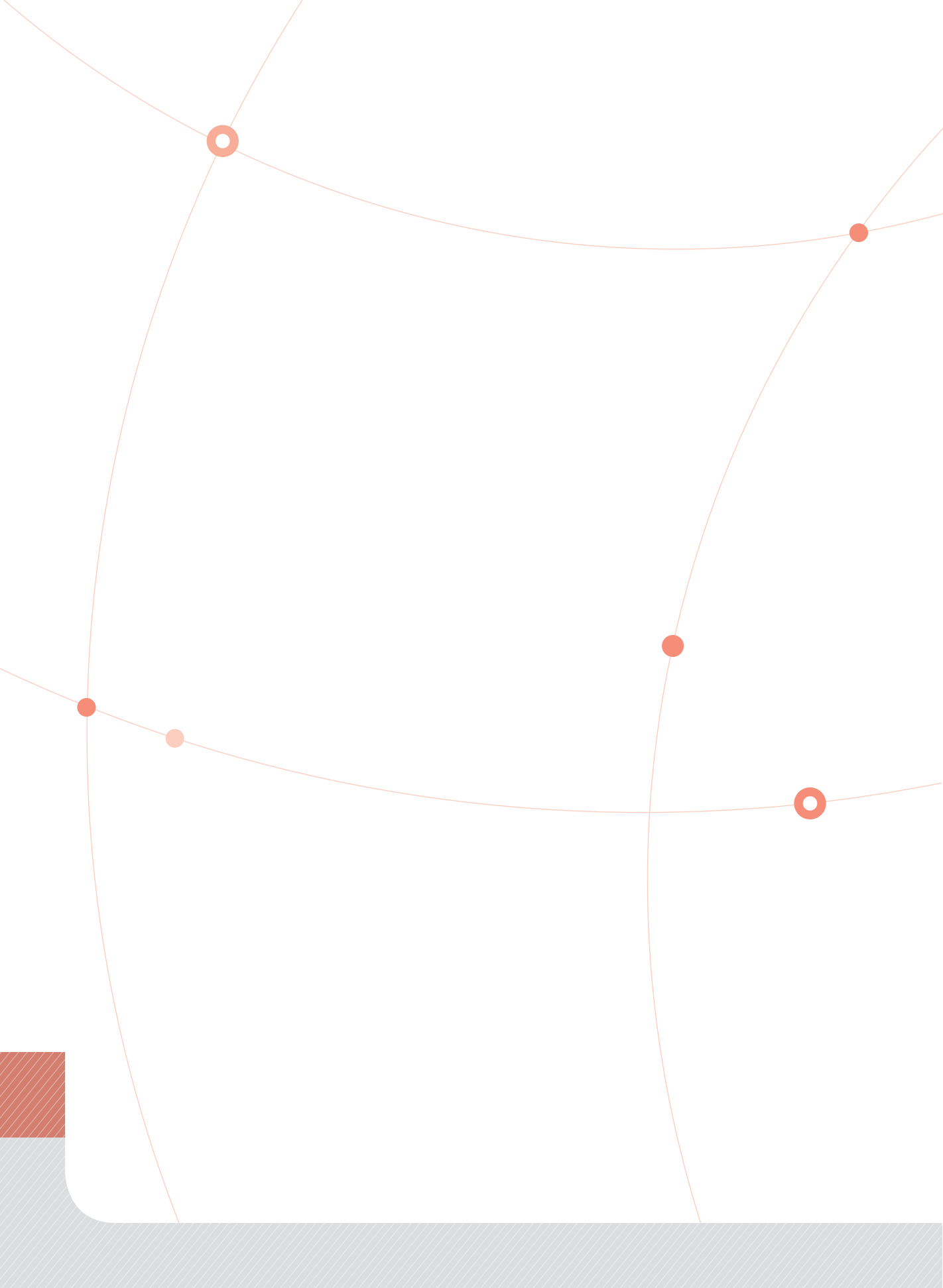
2014년 2월과 9월 외무성 대표단이 이란, 4월 경제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6월 리수용 외무상이 알제리 등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 9월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 참석차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10월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한데 이어 201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동회의 60주년)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2014년 9월 북한 당대표단의 몽골 방문, 2015년 3월 리수용 외무상의 쿠바 방문, 6월 적도기니를 비롯한 아프리카 순방,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강석주 노동당비서의 쿠바 방문(2015.6) 등은 북한이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3-3. 남북 수교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지역	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시아	37	26	26	11	0
아메리카	34	24	23	11	1(쿠바)
유럽	53	49	48	5	1(마케도니아)
중동	18	16	15	3	1(시리아)
아프리카	48	45	45	1(남수단)	0
계	190	160	157	3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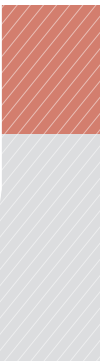
출처: 2015 외교백서, 외교부, p.432





IV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 제2절 북한군의 군사 정책과 전략
 - 제3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 제4절 북한군의 군사력
 - 제5절 대외 군사 관계 및 대남 도발
- 

Key Point

01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02

북한의 군사전략은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부대, 전자전 등 특수전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개발 행위는 극단적 성격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전력 우위를 확보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 내는 수단으로도 악용함으로써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03

북한은 오랜 기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여 건물·교량·항만·도로 건설, 위탁 경영, 영농 관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군부대는 사금 채취, 외화 벌이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군 조직이 자체 생존을 위한 경제 단위로 변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04

예비 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측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기습 공격하여 단기간에 주요 지역을 점령하려는 제한전, 지원 병력 도착 이전에 우리 측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전속결 군사전략도 지속하고 있다.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창설과 성격

북한군의 창설은 1945년 8월 광복 직후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 조직인 당을 최우선으로 결성하고 1945년 10월 12일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무 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 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위원회들은 소련군 사령부와의 협의 하에 기정된 인원 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²⁹⁾”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라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1946년 8월 15일 각 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訓練大隊部)를 창설하고, 1947년 5월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1948년 2월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내에 인민무력부의 전신인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였으며, 정권 수립

29)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성명(1945.10.12), 『조선중앙연감』, 1949, p.58.

7개월 전인 2월 8일에는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고 정규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1978년부터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항일 유격대 창설일인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5년 2월 8일부터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 날」로 기념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다.

해군은 1946년 6월 5일 수상보안대 사령부를 원산에 창설(동해 수상보안대-원산, 서해 수상보안대-남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6년 8월 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확장하였으며, 1946년 12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1947년 6월 원산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두었다. 이 간부학교는 해군군관학교가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0일 내무성 관할에서 민족보위성 관할로 변경되면서 8월 28일 처음으로 ‘어뢰정대’를 창설함으로써 정규 해군으로 발족되었다. 북한은 어뢰정대 창설일인 8월 28일을 1972년 6월 3일 정령에 의해 ‘해군절’로 정하여 1992년까지 기념해 오다가 1993년부터 수상보안대 창설일인 6월 5일로 변경하였다.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 항공중대로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8월 20일 소련 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300여 명을 중심으로 창설된 비행대는 1948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과 함께 항공대대로 증편됨으로써 정규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비행대를 창설(1947.8.20)한 날짜를 ‘공군절’로 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김일성이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날짜(1945.11.29)를 ‘항공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에 대한 성격은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 ‘자위’ 및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 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 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 뿐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경제난 및 체제위기 상황에서 통치 논리로 ‘선군정치’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는 표현에서 보듯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군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을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 영도자로 우상화하여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북한이 정권 수립(1948.9)보다 7개월 먼저 군을 창건(1948.2)한 사실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군을 당의 혁명통일 무장력으로서 최우선 배려하며 양성하고 있다.

북한이 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군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명문화하였으며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표 4-1. 4대 군사노선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을 정치 사상, 군사 기술로 단련시켜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무장해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 군사 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전민 무장화	인민 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 사상, 군사 기술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 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89.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방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 헌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무력이란 정규군 119만여 명은 물론 교도대 60만여 명, 노동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보위사령부와 인민보안부 및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예비 병력 770만여 명을 망라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또 국방관리 전반은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함을 뜻한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아래 혁명과 건설을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구축되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유훈(2011.10.8)에 따라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 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 및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 및 수표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사력 확보를 담보로 한 대외관계 유지와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최근에는 경제건설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군 병력을 대형 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목장, 양어장 등 각종 경제건설 현장과 위탁영농·어로활동·검문 등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군의 노력 동원 모습

그럼에도 북한은 악순환 되는 ‘경제의 군사화’ 현상으로 국가 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째, 군사비 충당을 위해 국민 부담이 증대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군사 의존도 심화로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민수자원 공급이 위축된다. 셋째,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성 군비에 할당하게 된다. 넷째,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를 저해한다. 다섯째,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기품 강요로 자유롭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질서 형성을 저해한다.

제2절 북한군의 군사정책과 전략

1. 정책 기초

북한의 군사정책 기초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 견지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³⁰⁾이라며 군사적 자위 노선을 강조하였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

30)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178.

념 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결의하였다.³¹⁾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쓸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³²⁾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은 <표 4-2>와 같다.

표 4-2.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구분	내 용	비 고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과 군사 건설의 병진 전당·전인민의 전쟁 동원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의존 정책에서 탈피 1969년 특수 8군단 창설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형 국방공업 기지 완성으로 신기원의 자위력 육성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 전술 위주 교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독자 수행 능력 향상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건설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투 동원태세 완비 예비 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능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 스커드 미사일(SCUD Missile) 개발 및 배치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민일치 강화 전국가·전인민 방위 체계 강화 전략무기 독자 체계 구축 선군정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중시, 군대원호 기풍진작 노동미사일 개발·배치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 배치
20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공업의 선차적 역량 집중 ‘선군사상’ 헌법 추가 ‘핵보유국’ 헌법 명문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례 핵실험(2006.10.9, 2009.5.25, 2013.2.12) 대포동 2호 시험 발사(2006) 등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2015.5.9)

31) 「김일성저작집 28」, p.534.

32) 「조선중앙연감」, 1963, pp.157~163.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인민군의 당면 과업으로 ①군대 내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②전투·정치훈련 강화 ③군사기술의 수준 향상 ④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³³⁾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통일혁명 무력과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한 기동화부대로 하여금 고속으로 종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에 남한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 공격 능력, 고속 종심 공격 능력, 선제 기습 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했다. 1980년대 말에는 이미 군사력의 전진 배치, 기계화 군단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 확보, 장거리포 추가 전진 배치 등 2~3개월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3) 「노동신문」, 1980.10.11 참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속전속결 공세형 군사전략,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 과시,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WMD)로서의 비대칭 역지 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으로 군인 수가 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수십 배가 되는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 기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습 곳의 비행 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 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군사 기본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킨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 추구는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력·물자가 본격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표 4-3.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구분	부대 성격
목적	목표물 습격 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미사일기지·비행장 등 주요 전략·전술 거점 무력화
저격 여단	주 전선 돌파, 82mm 박격포 및 방사포로 전략 목표물 타격, 국군 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 저격 여단	함선·레이더기지·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공기부양정 보유
공군 저격 여단	공군기지 장비·시설 타격
항공 저격 여단	병참 시설 파괴, 증원 차단, 거점 확보
군단 정찰 대대	밀로 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 여단	핵심 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 6개 중대 편성(120명) 60mm 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보유

출처: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자료 종합

1970년 하반기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 대통로’(땅굴) 작업을 명령했다. 이는 베트남전쟁 사례처럼 땅굴 침투 부대와 지하당 세력을 연계시켜 불시의 기습으로 상대 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대피호를 포함한 지하시설물이 8,2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수입한 터널굴착 장비(TBM) 300여대가 북한의 갱도, 지하시설 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2)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해안선이 긴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 및 정규전·유격전을 잘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무장한 적이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³⁴⁾

34)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평양), 『인민군』, 1987, pp.43~47. 최근 들어 북한은 소련군이 전차부대의 신속한 기동으로 NATO군 방어진지 돌파를 위해 운용하려 한 작전기동단(OMG) 개념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게 원용해 발전시켰다. 그러나 개활지가 많은 서부 지역 이외에는 적용상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배합전략이란 중국 마오쩌둥의 유격 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을 의미한다.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붙들어 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주민 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상으로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나 현실 능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도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 지속 역량을 고려할 때 결코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전쟁의 승패에는 병력 수,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 요소가 아니라 전장 종합 환경, 병력의 교육 수준, 무기의 질, 과학·기술 수준,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 우발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수중 전력, 상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교훈 삼아 1990년대 이후부터 전방부대의 경보병화로 특수전 병력을 기존의 10만에서 20만으로 확충, 유사시 포병 및 미사일에 의한 선제 공격 후 전후방 특수전 부대 동시 투입으로 우리 군의 전략 요충지에 대한 선제 타격 및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부대 창설 및 평시 대남 사이버 도발 등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화력·기술력 열세 만회를 위해 4세대 전쟁³⁵⁾ 방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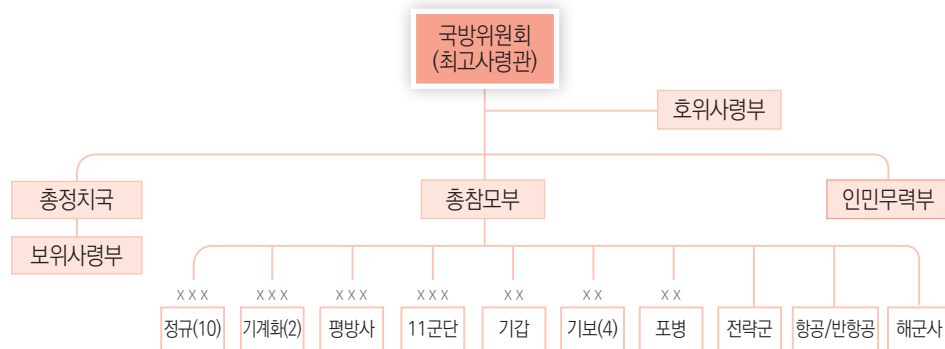
35) 윌리엄 린드(W. Lind)에 의하면 '제4세대 전쟁'이란 강대국에 대한 약자(중소국가, 테러집단 등)의 비정규·비대칭 전쟁을 의미한다.

제3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사 조직

(1) 군 지휘 체계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다. 국방위원회는 국방사업 전반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있다.



xxx: 군단, xx: 사단, 평방사: 평양방어사령부, 전략군사령부 : 구(舊)전략로켓 사령부, 항공/반항공사령부: 구(舊)공군사령부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5.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군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주요 시설 경비 임무 등을 맡고 있다.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의 지도로 반체제 세력을 단속하는 군 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은 군 내의 당 조직을 통해 군 인사와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 관련 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2) 군사 기구

국방위원회

북한의 주요 군사 기구로는 국방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신설된 이래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을 개정할 때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8년 헌법에서는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자 국방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정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선군혁명 노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②국가 전반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③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 사항 이행 ④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⑤국방 부문의 중앙 기관 설치 및 폐지 ⑥군사 칭호 제정 및 장령(장성)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등이다.

한편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무력 전반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 무력의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이 국가 영도자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게 하였다. 이는 국방위원장이 단순한 국방 부문의 수장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 최고 통치자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헌법 개정에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김정은은 국방위원장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다.³⁶⁾

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당-국가체제'라는 면에서 조선인민군도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와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1982년 11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 정책의 수행 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북한은 2013년 2월 3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투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2013.2.3)에서 '군력강화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토의가 있던 9일 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 후 2014년 3월 1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투방위력 강화를 위한 실천문제'와 2015년 2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국가 방위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 전략적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36)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76.

총정치국

북한은 노동당의 군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군대 내의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대 내에서 당의 정치 사업과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의 업무는 전군의 주체사상 무장, 군대 내 당의 유일사상 확립, 군내 간부·당원들의 당 생활 조직·지도, 공산주의 교양 교육 실시, 군내 당 및 청년동맹조직 사상 교양을 위한 선전선동 사업,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각종 운동 및 사상교육과 장교의 인사 관리 등이다. 또한 군대 지휘관이 당 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하고 시정시킬 권한도 있다.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연대급 이상은 정치위원, 대대급 이하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각급 군사지휘관의 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총정치국장은 주요 군 간부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총참모부

북한의 총참모부는 북한군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군사집행기관으로서, 인민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을 지휘·통솔한다. 총참모부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로 개칭되었다. 1970년 초반 이후부터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의 직책으로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해 군을 직접 지휘·통제하였다. 이러한 군에 대한 지휘는 김정은 시대에도 변화가 없다. 북한 군사체계는 총참모장 예하에 군종·병종별 부대가 편제된 통합군 체제로 되어 있다.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 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때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현 내각)에서 분리되었으며, 1986년에 중앙인민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

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인민무력부는 1998년 9월 인민무력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0년 9월 9일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되었다.³⁷⁾

2. 군사 제도

(1) 병역 제도와 병영생활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입영대상자 부족, 여군 비율 축소로 인해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 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가운데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북한의 군 복무 연한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37)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473.

‘전민 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 10년, 여성은 지원 시 7년으로의 무복무 기간을 각각 단축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³⁸⁾

부대에 따라 10~30% 비율을 차지하는 여군은 대개 수송·행정 부서에 배치되거나 위생병·통신병 또는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에서도 근무한다.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 사고자는 제대 후 직장 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병영 생활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 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³⁹⁾’이 있다.

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운동을 경쟁하며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중대 쟁취운동’, 연대급으로는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동’, 사단·여단급으로는 ‘금성진위부대 쟁취운동’이 있다. 판정 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 공급이 우선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여군 포병의 훈련 장면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38) 북한의 인민군 복무 기간은 내각 결정 제148호로 정하였지만 이 규정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 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39) 군무생활 10대 준수 사항은 ①군사 규정 철저히 준수 ②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군사 명령의 철저히 집행 ④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당 조직 비밀 엄격 유지 ⑥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히 준수 ⑦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⑧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 금지 ⑨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⑩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부모 사망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군 복무 기간에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평균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건설, 영농 등 비군사 노동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한편 부대 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끼 쌀밥에 야채, 절임 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사단별로 임시 보양소를 운영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외부 지원의 영향으로 부대의 급식 상태는 2000년 이후부터 다소 나아졌으나 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군인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독립 소대부터 여단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대가 염소와 돼지 등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콩은 모든 부대에서 경작하고 있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 의관 8~10명, 여군 간호병 10여 명),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때는 사단 군의소(군의관 20~25명, 여군 간호병 50여 명),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관 60~70명, 여군 간호병 포함 민간인 여성 간호원 130명 정도)으로 각각 후송 되거나 감정제대⁴⁰⁾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부수입이 많아 경제사정이 다소 나은 국가안전보위부 예하 국경경비

40) 북한군에서도 1995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부양자가 없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제대'(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있다.

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軍民)관계를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군의 민간에 대한 부담과 각종 피해 일소를 위해 군민관계 훼손시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계급 구조와 당 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 일반병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장성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우리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 있으며, 일반병의 경우 상등병과 전사로 구분하되 사기 진작과 서열 중시를 위해 다시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4등분하고 있다.

북한군 장성 계급 서열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순으로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면서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김정일도 사망(2011.12.17) 후 2012년 2월 14일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한편 북한군 내 모든 각급 부대에는 군사 계통의 참모부, 정치 계통의 정치부, 보위 계통의 보위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는 당 조직이 구성되어 북한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능 행사를 의미한다. 북한군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가 있고 연대급 이상은 ‘당 위원

회', 중·소대 단위에 '당세포' 및 '당 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당 위원회와 별도로 군 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은 가운데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표 4-4. 군 간부 양성 과정

계급	과정	비고
징집 대상	군사동원부 차출 (특수부대 우선, 해·공군, 지상군 보병 순)	특수부대, 특과 우선
훈련병	각 부대 신병교육대(일반 3개월~특수부대 9개월)	신병교육 기간은 경제난으로 감축
병사	전사→초급병사→중급병사→상급병사	5~7년 경과
하사관	하사관학교(3개월)하사→중사→상사→ 특무상사(사관장) * 경 보병, 민경, 저격병은 우수병사(3~5년근무) 추천을 통해 5년 이내 하사 진급	10년 복무 후 중사로 제대
소위	군관학교 2년(지휘자반: 최우등 시 중위 임명) 4년(대학반: 중위)	군관학교 정치·군사 교육은 5:5 군사대학 정치·군사 교육은 3:7
중위	2~3년 경과 진급	
중대장	4~6년 경과 후 지휘관	
대대장	3~7년 경과 후 김일성군사대학(3년) 졸업	
연대장	김일성군사대학 전술연구반(2년) 수료	장성은 명령만으로 진급

출처: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자료 종합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 업무와 군대 내 정치 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내 정치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관여하고 있다. 북한군 일반 사병들은 약 20%, 특수부대는 약 40%가 각각 당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군 내 부대 단위에 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이는 각급 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아래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군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 당사일치(黨社一致),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⁴¹⁾

북한군 내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 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이 전시 국가관리 체제에서 영토 및 체제 수호 임무를 넘어 최고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보위, 군사의 3개 조직이 중첩으로 짜인 북한의 군대는 1인 독재체제에 순응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41) 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 당사일치(黨社一致)는 노동 당원과 비당원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구 사로청)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제4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 전력 및 장비

2014년 10월 기준 북한의 상비 전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총 1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 병력 63만여 명의 1.9배 규모다.(<표 4-5> 참조)

지상군

북한의 지상군은 국방위원회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전·후방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구(舊) 경보교도지도국),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방 지역에는 4개 군단 산하 기존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고 별도로 각각 1개의 경보병 사단을 신편하였고, 지상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 이남의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강습돌파(強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서울이 근접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5. 남북 군사력 비교(2014년 10월 기준)

구 분			한국	북한	
병력 (평시)	계		63만여 명	120만여 명	
	육군		49만 5,000여 명	102만여 명	
	해군		7만여 명	6만여 명	
	공군		6만 5,000여 명	12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5
			사단	44(해병대 포함)	81
			기동여단	14(해병대 포함)	74(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차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포	5,6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연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6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해군	수상 함정	전투함정	11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공군	공군	전투임무기	40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6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5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6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90여 대	300여 대	
예비전력 (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39.

북한 지상군 부대의 특징은 기계화부대, 전차부대,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부대, 기계화부대, 미사일부대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여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모습

기습 공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격시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 부대를 대부분 기동화·기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몇 배 규모나 되는 위장진지 및 모의 장비, 전방 전개 지역에 공격시 이용할 대량의 갱도 진지 등은 추가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 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 장비 가운데 전차는 주력인 T계열 신형 전차(T-62/72 등)가 주종을 이루며, T-54/55 전차는 폐기시키면서도 일부 구형 전차와 경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 대수는 4,300여 대이며, 이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400여 대의 1.8배 수준이다. 한국이 성능이 다소 우수한 전차와 대전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천마호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 미사일 등은 성능 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한 폭풍호 전차 생산, 23mm 자주대공포의 도입·생산·배치 등 장비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해군

북한 해군은 총 82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0%가 전방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 척이다. 또 고속상륙정 90여 척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이 260여 척,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떨어지고 먼 바다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 보유와 전진 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 해역에서 대지·대함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실크웬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현재 전방에 배치된 실크웬은 서해의 덕적도,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공기부양정(고속 상륙정)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 장비는 40~52 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 능력이 있어서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해군 전력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2개 해상 저격 여단, 40여 개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해 사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⁴²⁾ 이와 같이 잠수함 전력, 신형 어뢰, 수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서 천안함 폭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측 해군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군

북한 공군은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는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

42) 「중앙통신」, 2015년 5월 9일자

기동기 330여 대, 헬기 30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는 전투 임무 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해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아 전장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 및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20여 개의 작전 기지와 예비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7년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대시켰다. 또한 1998년 3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 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시동원령을 선포하고,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도상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9년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 대비 태세와 훈련 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⁴³⁾된 반면에 부대내 정치사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특수부대와 통신부대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43) 2015년 8월 4일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였으나, 북한의 대화 제의로 남북 고위급회담(2015.8.22~24)에서 '8·25 합의'를 거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전 대비 해커 전문가 양성, 경보병 부대 증편, 야간·산악·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전과 정밀 유도무기 회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자·전파 교란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3월 소형무인기의 불법 침투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GPS교란·정보체계 공격 등 전자전 및 사이버 위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혼란을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관 공격 등 사이버전을 강화하고 있다.

2. 예비 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全民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을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띠는 노농적위대,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 가운데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한 교도대를 각각 조직하였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현 고급중학교) 군사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 전력에서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행정 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의 경우 대학생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학년 중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와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며 연

간 500시간 고강도 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 등 현역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전쟁 발발 즉시 동원되어 후방 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되며 교도대의 총 병력은 60만여 명이다.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구 분	규 모	비 고
교도대	60만여 명	전투 동원 대상 - 남자: 17~50세, 미혼 여성: 17~30세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 예비군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계	770만여 명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8.

노농적위대는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군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 동원 가능한 남성, 17세 이상 30세까지 여성 가운데 교도대 비편성자를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 경계, 지역 및 대공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며 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570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 교내 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사격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 체제를 보위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 역할을 한다. 유사시 군 하급 간부 전투력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며 훈련은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 받고 있다. 총대원은 약 100만여 명이며 인원과 훈련 시간이 대폭 증가되었다.

기타 준군사 부대로는 인민보안부와 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되

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이 있다.

3. 전략무기 개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무기 개발로 대외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핵무기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핵 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⁴⁾ 북한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 가재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핵 개발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다.⁴⁵⁾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후 1970년대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1990년대 들어와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 완성에 주력하였다.

44)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2004, p.54.

45) 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p.95.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10.21)로 대북 경수로 제공,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등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및 IAEA 사찰 수락에 합의하였다. 그 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상, 경수로 공급 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이어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미·북 간 입장 차이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역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자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14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가 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핵 폐기와 금융 제재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 차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그 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북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위한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2·13 합의’는 미·북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 제네바합의와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북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주요 핵시설 3곳을(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 공장) 폐쇄하였다. 그러나 핵 신고서는 목표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겨 2008년 6월 26일 제출되었다.

한편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검증 절차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이 시료 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2006.10.14)를 무시하고 2009년 4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는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정된다. 북한은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을 통해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2013년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들어와 북한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⁴⁶⁾

미사일

북한은 미사일기술 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 독자 생산 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1987년부터 이란·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 사정 거리가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 (KN-O2)을 시험 발사하였다.⁴⁷⁾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⁴⁸⁾ 같은 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각각 발사하였다. 2012년 4월 13일 외국의 주요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 결속과 군사강국, 대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은하 3호’를 발사함으로써 1만km로 추정되는 장거리 운반 능력을 과시하였다.

46) 2014년 3월 30일자 북한 외무성 성명

47) 미국의 민간단체 ‘국제위기관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틴 수석연구원은 2008년 2월 3일 미국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SSI)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자급자족 단계에 이르렀으나 고급 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8) 유엔안보리는 2009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자산동결 등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은 의회에 제출(2008.3.3)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이란 등에 수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7. 북한의 미사일 제원⁴⁹⁾

구분	SCUD-B	SCUD-C	노동	중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kg)	1,00	770	700	650	500	650~1,000 (추정)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방사	개발중

화생무기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화생무기가 핵 문제에 가려져서 군사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대량살상 무기(WMD)로 잠재적으로 군사적 위협 요인이 될수 있다.

북한은 강계, 용성 등지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흥남, 만포, 아오지, 청진 지역에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⁰⁾

화학무기는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무기는 콜레라, 탄저균, 천연두 등의 자체 배양 능력을 보유하고 정주, 문천 지역에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급기술은 파키스탄, 이란 등 국가와의 협조와 중국·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 미국 'Popular Mechanics'는 2007년 2월호에서 북한은 화학제 5,000톤 보유, 32개 지역에 생화학 공장 운영, 20개 지역에 생물무기 시설, 12개 지역에 화학무기 시설, 미사일과 아포의 30%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제5절 대외 군사 관계 및 대남 도발

1. 대외 군사 관계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는 1948년 이후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소조약'), 7월 11일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중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북·중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소조약'의 경우, 소련 붕괴 직후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이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당초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었다. 조약 체결 일방이 시한 만료 1년 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

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효력은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되었다.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보다는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 간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 선언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후 2001년 4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 분야 협력 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탄도요격미사일(ABM) 방어 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 협조 발전, 주한 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군사대표단과 공군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 등 유대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김정일은 러시아 방문시 러시아 극동군의 훈련 센터에 들러 러시아 군의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2011년 8월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조난시 수색구조 훈련에 합의하였으며, 시덴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다. 2012년 8월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공군 간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하였다.

북한은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 군사대표단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오텐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고, 환영식에 당·정·군 간 부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군 간부들만 참가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5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핵 관련 입장을 교환하고 북·중 군사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6년 1월 김정일이 군 원로들을 대동하고 중국의 광저우 등 산업지역 시찰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4월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 일행이 방북하여 군사 분야의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

2008년 12월 12일 양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의 대외사업 담당자들과 만나 양국 군대 간 상호교류와 협조강화를 강조하였다. 2011년 8월 북·중 우호 협력 조약 체결 50주년에 즈음하여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방중하여 양측의 군사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그 밖에 2001년 5월 북한 공군대표단의 파키스탄 항공단지 시찰을 비롯해 6월 고위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위산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2008년 7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여 농업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2012년 5월 리영호 전 총참모장 등 고위군사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군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4월 아프리카, 6월 쿠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북한이 동남아·중동·아프리카·중미 지역과의 군사관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 목적 뿐만 아니라 무기판매, 군사기술 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및 시리아 등 아랍 국가와 군사 협력을 지속해 왔고, 특히 이란에 핵과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남북 간에는 군사분야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 실무회담 등 군사대화와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2004년 6월 3~4일 개최된 제2

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로써 쌍방의 합정이 대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상대측에 부당한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도 제거하였다.

2005년 7월 20일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개소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5년 8월 13일부터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남북 군 당국 간에 유·무선 긴급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상에서 남북 합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교신 및 불법 조업 선박에 관한 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2006년 3월 2~3일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과 5월 16~18일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서해 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12.12~14)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2000년 이후 남북군사회담에서 12건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1년 2월 8~9일 개최된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으나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2. 대남 도발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⁵¹⁾

51)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51.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 공격과 침투·도발 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하여 왔다. 북한이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적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의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 변화와 양보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혹은 이와 반대의 순서, 즉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대화 및 협력과 같은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 공세’를 선행한 후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은 우리에게 행한 각종 대남 공작과 침투 도발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6·25 남침(1950년)이다. 또한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남침용 땅굴을 건설한 사례(1972년)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아웅산 폭탄테러(1983년)를 감행한 전력도 모두 상기에 언급한 양면 전략에 속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북한은 남북 경협과 대북 경제지원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잠수정 침투, 핵실험(2006년, 2009년, 2013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 등을 감행하였다.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 공격을 벌인 연평해전(2002년), 쌀·시멘트 등 대북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2010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등도 마찬가지다.

(1) 6·25 남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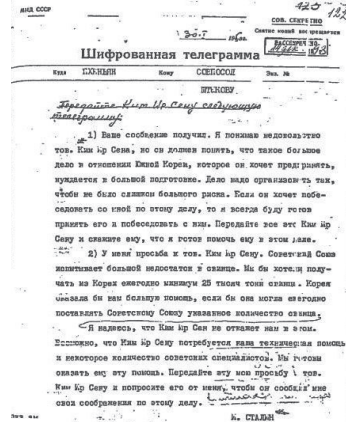
북한이 행한 침략·도발의 대표 사례는 1950~1953년에 벌어진 6·25 남침 전쟁이다. 소련 군정 아래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무력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북한의 6·25 남침은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과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그 결과 남 북한 300만여 명의 인명 사상, 10만여 명의 전쟁 고아,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한반도 문제가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어 냉전체제의 서막을 만들고 남북분단을 공고화시키는 시발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6·25전쟁을 앞두고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군사지원을 약속 받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남북 지도자들 간 정치협상을 주장하거나 평화통일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등 위장평화 공세를 병행하였다.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1949.3)

인 것은 북한군의 무기가 월등히 많았다는 점 이외에도 북한군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이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과 교전 경험이 풍부한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 출



남침을 승인한 소련 문서(1950.1.3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을 넘어 기습 남침 전쟁을 전면으로 개시하였다. 전쟁 개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단기간에 밀고 내려갈 정도로 북한군은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북한군이 초기 강세를 보

신인 반면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군은 지원 장비도 매우 열악하고 훈련 기간도 극히 짧았기 때문이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공격을 불법 남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을 돌파하여 1950년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투는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소련은 유엔을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유엔군이 이에 응함으로써 1951년 7월 휴전 회담이 개최되어 2년여 기간의 협상과 전쟁을 지속한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최종 체결하였다.

1950년 6월 당시 군병력을 보면, 북한군은 20만 여명이었으며, 한국군은 10만 여명에 불과했다. 전차는 북한군이 242대를 보유하고 있던 데 반해 한국군은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현대전의 핵심 지원 전력인 화포는 북한군이 2,492문이었으며, 한국군은 1,051문으로 약 2배에 이른다. 다만, 대전차 화기의 경우 북한군이 550문이었으나, 한국군은 2,040문으로 약 4배 많았으나 포탄이 부족했다. 함정은 북한군이 110척, 한국군이 36척으로 약 3배 많았으며, 항공기의 경우 북한군이 226대, 한국군이 22대를 보유해 약 10배 차이가 나 당시 남북한 군사력 수준차는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14만여 명의 한국군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하였다. 북한의 피해는 180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또 남한의 경우 생산 시설의 40% 이상이 파괴되어 경제가 거의 마비되었으며, 북한은 대부분의 주요 산업 기반과 자원 생산 시설이 초토화되었다. 1948년 신생국으로 새로 출발한 남북한은 불과 2년 만에 발발한 이 전쟁으로 주요 산업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을 상당수 잃게 되었다.

(2) 주요 대남 군사도발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 및 대내외 실리추구와 영향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긴장 조성,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6·25 전쟁 전후로 1,959건에 이르는 육상 및 해상에서의 침투 행위를 비롯하여 994건에 이르는 총격과 포격, 습격, 해상 교전과 선박 납치, 영공 침범과 미사일 사격 등 총 2,953건⁵²⁾의 도발을 자행하는 등 화전양면 전술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 대남 압박 공세, 경제지원 요구, 남남 갈등 유발 등 다목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각종 군사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육상과 공중 도발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시기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 복구 사업이 마무리되는 1960년대부터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대남 전략을 바탕으로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동서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남조선 혁명투쟁’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하였다.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총리회담 실무접촉 등 각종 대화를 제기하는 한편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지속하였다.

52)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306.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이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할 때 폭탄을 터뜨려 부총리와 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어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승객 및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항공기를 폭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냉전 시기에 북한이 무장공비·특수부대·게릴라 침투 공격, 판문점과 휴전선 일대의 국지성 도발, 민항기 폭파 및 납치 등 군사 행위를 지속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 핵실험 및 화생방 전력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8월 4일 DMZ 지뢰도발과 함께 8월 20일 연천군 일대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였고, 8월 21일 전선지대에 대해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해상 도발

북한군의 대표적인 해상 침투·도발 행위는 제1차 연평해전이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북방한계선(NLL)⁵³⁾을 넘어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 함정 간 포격전이 발발하였다. 이 전투는 6·25 전쟁 이후 남북의 정규군 간에 벌어진 최초의 해상 전투였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NLL에서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53) 지난 6·25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1953.7.27)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육상 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 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후(1953.8.30)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우발성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우리 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시키기 위하여 NLL을 설정하였다. 동해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 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에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휴전 직전에는 황해도 섬과 해변 지역까지 유엔군의 점령 아래에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을 공산군 측에 양보하였다.

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계획적으로 우리 참수리 경비정 배후를 기습했다.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대청해전’이 발생하였다. 우리 해군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북한 해군은 경비정 1척이 파손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민을 가리지 않는 대남도발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동시에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NLL을 유엔군에 의해 일방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한편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셋째, 남북 군사회담에서 주도권 확보 등 북한이 정치적 부수 효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다.

최근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스스로가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 1984년 북한에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 접촉 지점을 NLL 상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나포·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 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다.

이처럼 NLL은 사실상 남북 간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 지역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해로서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것은 정전협정,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

해 설정된 선으로 우리가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로 쌍방의 관할 구역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침범해 오고 있다.

남북 간 불가침 경계선 합의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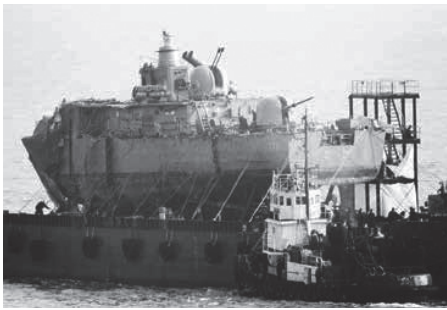
표 4-8. 1999년 이후 북한의 서해상 도발 주요 사례

1999.6.15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영해 침범해 우리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제 사격함으로써 포격전 발생. 우리 해군 9명 경상, 북한군 다수 사상(제1차 연평해전)
2002.6.29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근해 NLL 침범해 우리 해군을 공격. 우리 해군 6명 전사 및 18명 부상, 북한군 30여 명 사상(제2차 연평해전)
2009.11.10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무단 침범해 남하하면서 우리 해군의 경고에도 사격을 개시함으로써 전투 발생. 북한 함정 파손 및 퇴거(대청해전)
2010.3.26	북한 잠수함정이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침투하여 어뢰 공격으로 기습함으로써 천안함이 침몰됨. 우리 해군 46명 전사
2010.11.23	북한군이 연평도의 민가와 군사시설에 포격해 와 우리 군이 대응사격함으로써 50분간 교전 발생. 우리 해병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18명 중경상. 북한 측 지역 상당수 피해
2014.3.31	북한군이 NLL 서해 7개 지점에서 500여발 해상 사격, 100여발 NLL 남쪽에 낙하. 우리 군 K-9 자주포 300여발 대응 사격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p.252~267 참고로 작성함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잠수함을 침투시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폭침, 해군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였다.

북한은 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의 민가와 군사시설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 행해진 우리 군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방사포 사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우리 군의 응사로 50분간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포탄 공격이며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북한의 폭침 후 인양된 천안함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괴된 민가

이처럼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또한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원점까지 타격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한편 2014년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2014.3.26)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의장명의로 '구두언론성명'(2014.3.27)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안 백령도 NLL 남쪽 지역에 해안포 및 방사포 포격 도발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즉각 대응사

격을 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5년 5월 동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했다.

표 4-9.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구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의 공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을 이용한 어뢰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포와 해안포로 170여 발의 포 사격
작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31일, 민·군 합동조사단 편성 (현역 59명, 관 17명, 민 6명) ● 4월 12일, 73명으로 재편성 (한국 49명, 외국 24명) ● 5월 20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공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 47분~15시 15분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50발 대응 사격 ● 15시 12~29분 북한군은 방사포와 해안포 20여 발로 2차 공격 ● 15시 25~41분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30발 대응 사격
피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조원 104명 중 46명 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병 2명 전사, 18명 중경상
사건 피해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2명 사망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건물 133동(전파 33, 반파 9, 일부파손 91)과 전기통신시설 파손, 10군데 산불 발생
북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 남한 날조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 조치라 주장
대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 남북 간의 교역과 교류 전면중단과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행 금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 발표 ● 유럽의회,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6.17) ● G8 정상회의, 북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 ●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 규탄(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강력 요구, 국회도 중대한 무력 도발 행위로 규정 하고 강력 규탄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 규탄

출처: 유관 기관 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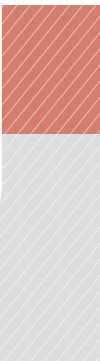
V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제1절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제2절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Key Point

01

북한 경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협동적 소유보다 인민적 소유 비중이 압도적이고,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장기간 고수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경제난 이후 유사 재산권이 형성되고, 기업 자체의 계획지표가 등장할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02

북한은 초기부터 자력갱생 노선, 중공업 우선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고 사회주의식 공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들 정책기조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각각 계승되고 있다.

03

북한은 1960년대 이후 5차에 걸친 장기 경제계획을 시행하였지만 이들 계획은 완충기를 설정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북한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침체→마이너스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 북한 경제는 2000년대 들어와 플러스 성장세를 6년간 나타낸 후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다시 침체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다시 미미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04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과 통제 정책을 반복하며 대외경제의 제한적 개방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범 운영과 20개 경제개발구 신설(2015. 9월 현재)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핵 보유 의지와 함께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1절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1.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초기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계의 비효율성을 점차 개혁해 나갔다.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계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로 소유제도 면에서 집단 및 국가의 소유만 인정한다. 둘째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원배분 면에서 중앙계획 당국의 계획이 주요 역할을 행한다. 셋째로 최종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 면에서 중앙계획 당국의 지도 및 명령지표가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경제의 비효율성과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시장 기능을 부분 도입하며 점차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시장사회주의 체제 등으로 변화해 나갔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 기능을 체제 내부 차원에서 부분 활용하는 부분개혁 체제를 실험하다가 결국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반면에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 변화 과

정과 대비되게 스탈린식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의 전형을 유지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실상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유지가 곤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경제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공식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 계획경제 기능의 마비로 경제 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일부 경제관리 개선조치들만 취함으로써 제도와 현실이 괴리된 경제체제의 이중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1) 국가소유 위주의 사회주의 소유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소유로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 분야는 농업 부문의 협동농장이 전형을 이룬다.

한편 북한은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개인소유의 대상은 텃밭을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합법 경리 활동으로 얻은 수입, 근로자들의 노동소득 몫, 이들 수입으로 구입한 소비품 등으로만 구성되고 생산수단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협동적 소유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처음부터 사회주의 소유 제도가 국가소유 위주로 구성되고 협동적 소유 형태는 다음 <표 5-1>에서 보듯 그 비중이 다소 낮게 구성되는 형태였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철저하게 중앙집중적 계획관리 아래에 놓여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협동적 소유 역시 사실상 전 인민적 소유 형태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소상품 경제 형태를 완벽히 소멸시키고 개인소유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만 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격한 국가소유 위주의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1. 총 공업생산액 중 소유 형태

구분	1946	1949	1956	1959	196	1963
사회주의 경제 형태(%)	72.4	90.7	98.0	100.0	100.0	100.0
(국영)	(72.4)	(85.5)	(89.9)	(89.5)	(89.7)	(91.2)
(협동경영)	(0.0)	(5.2)	(8.1)	(10.5)	(10.3)	(8.8)
소상품 경제 형태(%)	4.4	1.5	0.7	0.0	0.0	0.0
자본주의 경제 형태(%)	23.2	7.8	1.3	0.0	0.0	0.0

출처: 『조선중앙연감』(1964), p.171.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동적 소유 비중은 나라별로 20~40%를 차지했다. 1980년대1 폴란드의 경우 개인 경작지가 약 70% 이상이었고,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경우에도 수공업 및 소공업 부문에서 소상품생산 경제 형태가 상당한 비중으로 잔존하고 있었다. 물론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합법적 경리활동

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소토지 경작물, 상설 시장에서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소유 대상으로 공식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확대일 뿐 최근까지 엄격한 국가소유제를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소유 위주의 엄격한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재산 축적 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장사나 식당 운영 등 각종 개인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화폐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소규모 공장·기업소나 상업기관 등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의 사유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종합시장이나 장마당의 매대도 매매 또는 양도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는 관할 기관에 뇌물을 주고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주택의 개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택의 개인 사유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경제 활동으로 사유 재산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재산 관념이 부동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는 제도상으로 사회주의 국가소유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유 현상들이 등장하여 ‘은폐된 재산권’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집체적 경제관리 방식

북한은 1958년 토지 및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를 “중앙 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⁵⁴⁾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즉 중앙의 계획기구(국가계획위원회)가 당의 지침을 받아 인민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분야별 각 경제 단위에게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등 명령을 내려 경제 단위들이 이를 집행하는 계획경제 체계를 1960년대 초에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철저하게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강조하는 ‘명령형’ 계획경제 체계였다. 여기서 ‘계획의 일원화 체계’란 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을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하부 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내각의 각 성(省), 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들도 각기 계획을 작성하지만 이들 수치는 모두 중앙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이렇게 일원화된 체계이어야만 각 경제 단위가 당과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주관주의 등이 타파되고 계획의 유일성이 보장된다고 인식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치 사업과 경제정책을 반영해서 계획지표를 수립해야 하므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 사업에서 수령 및 당이 지도하는 ‘유일적 계획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계획의 세부화’란 중요한 것만 계획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 부문 간, 단위 기업소·공장 간 계획들이 철저하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사소한 것들까지 자연 발생 요소를 허용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장 가동률, 품질 수준, 생산품 가격, 제품의 규격 등까지 계획지표화하는 것을 말한다.

54)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433

북한의 계획화 체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중앙 집중 성격, 하부 경제 단위들의 자율성 범위, 당에 의한 통제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엄격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지표가 '명령지표'보다 '지도지표' 성격을 띠었고, 공장 내부의 경제 활동까지 계획지표화하지 않았다.

예컨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중앙 단위의 계획지표는 큰 방향의 8개 정도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 중앙 단위의 계획지표가 1만 개가 넘을 정도였다. 이러한 엄격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점차 이완되어 나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경제난 때문에 변형된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즉 경제난에 의한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및 계획 체계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략상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 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 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해 관리하고 있다. 그 밖의 경제 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⁵⁵⁾ 그리고 전략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단위들에 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과하고 있다. 계획지표의 형태로 '액상지표'가 부과되면서 각 경제 단위는 본래의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시장을 활용해 계획지표를 달성하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계획지표를 수행한다는 명분하에 비합법적 시장지향적 경제활동도 확산되어 나갔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공장, 기업소, 협

55)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183

동농장에 북한 특유의 경제관리 방식도 도입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지배인 유일 관리제(소련), 노동자평의회에 의한 노동자 자주관리방식(유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리 방식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이른바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⁵⁶⁾라는 명칭하에, 도 농촌경리위원회(산하 조직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리 협동농장관리위원회), 기업소·공장 당 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경제관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따르면 이들 관리 방식은, 경제 사업에 대한 당·국가·유일적 지도와 정치 사상에 의거한 경제 사업, 철저한 계획화가 수행되도록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가 배합되는 관리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공장, 기업소의 생산 및 경제 활동을 공장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직장장, 직장 부문 당비서, 작업반장, 일부 생산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다. 공장·기업소 내의 대표 구성원들이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의사와 결정에 근거하여 진행되도록 하였다.

2. 경제정책 기조와 변화 모색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3대 경제건설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 등을 3대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 왔다. ‘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정책기조들을 부분 수정하고 있지만, 아직 본질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6) 대안의 사업 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남포시 대안구역)을 방문하여 지시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 관리 형태를 말한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공장·기업소의 최고지도 기관으로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종합 지도하는 생산 지도 체계를 뜻한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⁵⁷⁾이라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 및 최종 재화의 생산을 자체 조달을 기본으로 하여 대내 수요를 충당하고,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체 인민경제 구조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민경제를 완결된 자립형 경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건설 노선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내부 자원의 동원에 의거해 성취하겠다는 수입 대체형 경제발전 노선으로서 비교우위 발전론을 거부하는 경제건설 노선이다. 모든 국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고,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거나 뒤떨어진 생산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화 생산을 자체 해결하기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 요소를 활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과거 마오쩌둥 시절 중국 역시 이 발전 노선을 기본 경제건설 노선으로 삼음으로써 많은 경제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했었지만, 1978년 이후 비교우위 발전론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국제경제 질서에 적극 편입해 나감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비교우위 발전론을 제국주의 착취론이라고 거부하며 자력갱생론을 경제정책의 한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과거처럼 엄격한 자력갱생론에 의거한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환경에 처하면서, 최근에는 부분 완화된 ‘개방형’ 자력갱생론을 내세우고 있다.

즉 1991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2002년 개성공업지구(2002년 10월), 금강

57)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08

산관광지구(2002년 11월) 등을 설치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2013.5.29)하여, 2015년 12월 현재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를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 담보이다”⁵⁸⁾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조응해 국내 경제와 분리된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개방형’ 자력갱생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 구현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노선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⁵⁹⁾라고 주장했다. 이 경제건설 노선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 소련, 중국 등이 ‘사회주의 발전법칙’으로 오랫동안 신봉해 온 경제발전 전략이기도 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체제 경쟁을 해야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급속한 시간 내에 “미국을 따라잡자”, “영국을 따라잡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비를 위한 분배를 최대한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에 집중된 축적 자본을 특정 산업부문, 특히 군수산업이나 생산수단 부문에 집중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 주력한 북한 역시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60~70년대에 인민경제비 투자 지출에서 70% 이상을 중공업 부문에 편중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북한의 산업 구조는 구소련처럼 중공업 부문 위주로 편성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경부터 농업·경공업 부문이 극심하게 낙후되는 산업 구조의 불균

58) 『로동신문』, 2012. 10. 21.

59)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5-716.

형 현상이 초래되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90년대 이후 에너지난, 기초원자재난, 외화난이 도래하면서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군수공업 부문의 확대재생산 유지를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변경하고, 군수부문과 연관된 일부 중공업 부문의 생산력 유지에만 역점을 두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본래 병진 노선은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선도 국가들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사회주의 진영 내 독자 노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 우위 확보를 의도했던 북한은 1966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노선을 당의 경제건설 노선으로 확정했다.⁶⁰⁾ 당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건설과 국방 정책을 옹기 배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병진 노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북한은 구소련·중국과 달리 인민경제의 규모가 사실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병진 노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경제 정책의 기초로 채택한 것이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부터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매년 총 예산의 약 10% 비중에서 1967~1971년 5년간 30% 이상 증액되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사비 지출은 매년 총 예산의 14~17%로 편성되고 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북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는 기본 토대로서 오늘날까지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중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변모시키고, 군

60) 『로동신문』, 1966.10.8.

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군수생산 계획을 인민경제 계획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북한 민수산업과 소비경제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경제난 이후 군수산업이 단순히 국방경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시장을 활용해 잉여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독립된 경제 공간의 성격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즉 북한 경제 내에 ‘군 경제’라는 특권경제 영역을 확대시켰다.

선군경제 건설 노선

김일성시대에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김정일시대에는 선군경제건설노선으로, 김정은시대에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의미 일부만 약간 변화시키며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경제 건설 노선이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으로 규정된다.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8년 당시 북한은 잇따른 자연 재해, 기근과 더불어 공장 가동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던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 일부 기관들은 당시 북한 민수산업 부문의 공장 가동률을 약 20% 수준으로 추정할 정도였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1993년 제1차 핵 위기 이후 핵 개발 의지를 지속 표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한편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도 보전하는 체제생존



선군경제 건설 노선 관련 포스터

전략으로 선군혁명 노선을 채택했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군수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김일성 사회주의체제를 보존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후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국가재원을 군수산업 유지·강화에 집중 투입하고 민생경제는 사실상 자력갱생 원리에 맡기는 이원화된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 건설 노선에 의한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이 북한 특유의 산업구조를 유지시켜, 경제난 회복 이후의 북한 발전 수준을 이른바 '단변 도약'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¹⁾ 기존의 병진 노선에 의해 국방공업, 중공업이 북한 산업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문부터 회생시키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기본 토대가 빠르게 구축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또한 국방공업의 발전을 통한 첨단 과학 및 기술 발전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체제수호 입장의 왜곡된 논리로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보다 북한의 산업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최근까지 애로를 조성하고 있다. 국가는 군수생산 지표 달성을 우선시 하는 계획화 사업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민수산업 분야는 '90년대 파괴된 생산력 수준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시장화 확대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제도와 경제 현실간의 괴리 현상을 확장시켰다.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김정일의 선군경제 건설 노선보다 더욱 확장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61) 박명혁,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기본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²⁾ 즉 선군경제 건설 노선처럼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이 이전의 병진 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기존 북한 경제의 모순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 역시 국가의 투자 자원 배분에서 민생경제 부문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부분 활용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기존처럼 체제 내부의 부분 개선 조치 수준에 한정된 정책만으로는 민생경제의 활성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의 주장대로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1980년대 중국처럼 경제정책의 기초 변화를 근본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관련 포스터

62)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전문, 2013년 4월 2일자.

둘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외부 자본의 유입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위기로 '빈곤의 함정'에 처해 있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내부 자원 동원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내부 자원의 동원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제2절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1. 거시적 현황과 과제

북한은 1965년 이후 거시경제 총량 지표를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 상황의 필요에 따라 간혹 일부 지표만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도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 숫자만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는 체제 선전 차원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990년부터 자본주의 국민소득 추계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발표하는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는 그나마 의미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과 1인당 국민소득 추계시 다양하게 입수되는 북한의 산업별 생산량 추계치를 토대로 하되, 남한의 물가·환율 통계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가가치 및 화폐가치가 남한보다 현격히 낮고 물가 구조도 국정 물가와 시장 물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물가와 환율을 적용한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통계는 사실상 과대 추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추계치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흐름을 시계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를 통해 북한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소득과 성장률

국민소득 추이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통계에 의거해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1990년대의 공장 가동률은 20% 안팎에 불과했으며, 이 당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 기간산업 및 군수공장만 겨우 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만 제외하고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석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던 구소련이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의한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중단·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연관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 경제는 전시가 아닌데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축소재생산을 겪게 되었다.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

구분	'90	'95	'98	'99	'02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북한 성장률	-4.3	-4.4	-0.9	6.1	1.2	3.8	-1.0	-1.2	3.1	-0.9	-0.5	0.8	1.3	1.1	1.0
남한 성장률	9.9	8.9	-5.7	10.7	7.4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1999년 이후 북한 경제는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지만, 전반적 회복 추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즉 2000~2005년 6년간 잠시 연평균 약 2.2%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다시 연평균 -0.1%에서, 2011~2014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북한과 같은 최빈곤 국가가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2014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약 34.2조원(한화 기준)으로서 남한의 1/44, 1인당 국민소득은 138.8만원(한화 기준)으로 남한의 1/21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 남북한 국민총소득 격차가 약 1/11, 1인당 국민총생산 1/5에서 더욱 확대된 것이다. 향후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북한의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별 성장률 추이

북한 경제의 위기와 정세 상황은 산업별 성장률 추이를 살펴볼 때 보다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에 북한의 제조업과 광업은 심각하게 추락했었다. 가장 최악이었던 1997년도에 광업의 성장율이 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 성장률은 -18.8%에 이를 정도였다. 이 당시 북한 제조업 가동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북한 제조업과 광업의 급격한 축소재생산은 원유도입량이 1/3 수준

으로 감소하고, 이것이 전력난·원자재난 등으로 연결되는 공급경제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1998년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산업연관 관계를 복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표 5-3>에서 보듯이, 광업 및 제조업의 성장률은 2003년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4~2008년 5년간 연평균 2%대의 성장세를 잠시 시현하고, 2011년 이후 1%이하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표 5-3.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90	'92	'94	'97	'99	'00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농림어업	-10.5	-3.3	2.8	-2.7	9.2	-5.1	4.2	4.1	5.3	-2.6	-9.1	8.0	-1.0	-2.1	5.3	3.9	1.9	1.2
광업	-5.6	-5.7	-5.2	-15.8	14.2	5.8	-3.8	2.5	3.1	1.9	1.5	2.4	-0.9	-0.2	0.9	0.8	2.1	1.6
제조업	-3.2	-18.3	-3.9	-18.3	7.9	1.4	-1.5	0.3	4.8	0.4	0.7	2.6	-3.0	-0.3	-3.0	1.6	1.1	0.8
(경공업)	0.9	-7.6	0.1	-14.2	2.9	6.3	2.7	-0.2	3.8	-0.6	-2.2	1.3	-2.1	-1.4	-0.1	4.7	1.4	1.4
(중공업)	-4.1	21.3	-5.5	-20.3	10.4	-1.0	-3.9	0.6	5.4	1.0	2.2	3.2	-3.5	0.1	-4.2	0.2	1.0	1.0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3.5	10.5	0.4	6.1	-11.5	-1.5	1.1	0.8	0.3	3.9	-1.6	-1.0	1.4
서비스업	0.7	0.8	2.3	1.1	-1.7	1.1	-0.2	1.3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 각 연도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90년대의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 다소 부분적이며 불균등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에 관건인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전략에 따라 전략산업, 기간산업 등 이른바 '4대 선행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군수공업과 연관된 산업부문에서 미미하지만 부분 산업연관 관계의 회복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식량·비료 등 민생과 관련된 원자재를 상당 부분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덕분에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농업 생산력의 부분 회복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시장으로 인해 서비스·유통·건설 분야가 여타 경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부문 중 서비스분야는 유일하게 2004년 이후 기복 없이 10년간 플러스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중화학 공업 일부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며 산업연관 관계의 복구에 주력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중화학공업 부문의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3대세습의 정당성 확보와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공업 부문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10년 만에 개최된 전국 단위의 경공업 대회에서 김정은이 “경공업 공장·기업소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어야 한다”⁶³⁾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용품 공장, 방직 공장, 식료품 공장, 화장품·신발 공장 등에 대한 설비 대체 투자를 몇 개 단위에서 시범 시행했다. 그러나 <표 5-3>에서 보듯이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산업 정상화의 핵심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어 경공업 부문 전반의 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식품공장

(2) 산업 구조

북한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공업화 추진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농업 부문의 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평균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다음 <표 5-4>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광공업 부문은 40% 이상이었으며, 특히 1980년에는 60% 비중으로까지 확대되

63) 노동신문, 2013.3.19일자.

었다. 농림수산업은 평균 25% 안팎을 차지하였고, 서비스 부문 비중은 하락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공업 발전만을 추구한 사회주의 공업화와 자립적 경제발전 노선의 결과로서, 자본주의 공업화 과정과는 상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4. 북한의 산업 구조 추이

(단위 : %)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농림수산업	28.9	21.5	20.0	26.8	27.6	30.4	25.0	20.8	23.4	22.4	21.8
광공업	41.3	57.3	60.0	42.8	30.5	25.4	28.9	36.3	35.9	35.7	34.4
서비스, SOC, 기타	29.8	21.2	20.0	30.4	41.9	44.2	46.1	42.9	40.7	41.9	43.8

자료: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업화 과정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농업 부문 하락, 서비스 부문 상승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2014년 남한은 농림어업 비중이 2.3%, 광공업 비중이 30.5%, 서비스 부문 및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이 6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상반된 산업 구조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과 자립적 경제발전 노선을 추구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경제난이 도래한 1990년대 이후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다. 민수 부문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1990년대에 광공업 부문 비중은 급락하는 반면에, 농림수산업 비중과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표 5-4>에서 보듯 2000년의 경우 광공업은 25.4%, 농림수산업은 30.4%,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44.2%의 비중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배급제 붕괴와 식량난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구조는 산업생산력이 불균등하게 일부 회복하는 추

세 속에서 경제난 지속과 시장화 현상을 반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광공업 부문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업 부문 비중이 1990년대 이전으로 복귀하는 한편,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2. 경제 부문별 현황과 과제

(1) 기초 원자재 생산

북한의 산업생산력은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이 1990년대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초 원·부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을 저하에 기인한다. 에너지 공급 감소로 철강·시멘트·화학·비료 등 기초 원자재 생산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간재와 최종 소비재 부문의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몇 가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통해 북한의 기초 원자재 생산력 실태를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철광석·비철금속·강철·시멘트·비료 등 주요 기초 원자재 공급량이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미미한 회복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 경우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1991년 대비 철광석 생산의 경우 약 66.9%, 강철 약 38.5%, 비철금속 약 38.3%, 비료 약 62.4%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멘트만 유일하게 약 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멘트 생산 부문이 자본투자 규모가 작은 데다가, 북한의 대표 시멘트공장인 상원 시멘트연합기업소에 대한 해외자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 10만 가구 아파트 건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에 주력해 시멘트공장 설비 투자를 우선 시행했었다.

표 5-5.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단위: 만 톤)

연도/부문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91	816.8	22.7	316.8	516.9	80.4
1993	476.3	146.4	185.9	398.0	90.1
1996	344.0	11.8	120.8	379.0	53.6
1998	289.0	9.7	94.5	315.0	39.2
2001	420.8	9.2	106.2	516.0	54.6
2003	443.3	9.4	109.03	554.3	41.6
2005	491.3	10.7	116.8	593.0	45.0
2007	513.0	9.2	122.9	612.9	45.4
2009	495.5	9.1	125.5	612.6	46.6
2010	509.3	9.2	127.9	627.9	45.9
2011	523.2	9.1	122.5	645.2	47.1
2012	519.0	9.0	122.2	644.6	47.6
2013	548.6	9.2	121	660	48.5
2014	547.1	8.7	122	667.5	50.2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2) 에너지 생산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의 산업 가동률을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식량난과 더불어 북한 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으로 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수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 추이와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표 5-6.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만 톤, 천 배럴, 억 kWh)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석탄 생산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00	2,550	2,580	2,660	2,709
원유 도입	18,472	11,142	6,670	6,861	3,694	2,851	4,376	3,900	3,841	3,878	3,870	3,856	3,834	4,237	3,885
발전량	227	247	231	213	170	194	190	206	225	255	237	211	215	221	216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연도.

원유 도입

원유 도입은 1990년에 18,472천 배럴을 도입하였지만, 2014년에는 3,885천 배럴에 그쳐 도입량이 1990년 대비 약 21%에 불과하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구상 무역 방식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했으므로 외화 부족으로 인해 원유 도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대중 원유 도입량은 연평균 50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원유의 대부분은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운송 분야,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착화용 등에 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가정의 석유 소비는 2011년 기준 전체 수요량의 약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가정연료는 나무류, 무연탄, 갈탄, 진탄 등 가공되지 않은 석탄류 순으로 조사됐다.

석탄 생산

북한은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산업의 정상화는 곧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1990년 3,315만 톤에서 2014년 현재 2,709만톤으로서 81.7% 수준만 회복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석탄 생산 부문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부터 자력갱생발전 노선에 따라 산업 에너지를 석탄에 의존하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을 취해 왔다. 즉 석탄 에너지에 토대를 둔 공업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의 1980년대 석탄 생산은 이미 심부화(深部化)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또 채탄 장비 노후화, 신규 설비 투자

부족, 자재 공급 애로까지 겹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석탄 생산량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에다 1990년대 중반에 3년 연속 일어난 대규모 홍수는 서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던 많은 탄광을 붕괴시켰고, 당시 수해를 본 탄광들 가운데 많은 곳이 아직도 과거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

원유 도입량, 석탄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연결되어 전력 생산량 또한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5-6>에서 보듯이, 북한의 발전량은 2003~2008년 6년간 연평균 5%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2009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1990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사실 1990년 발전량 자체도 그 당시 수요량의 약 40%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의 전력난은 1980년대 중반경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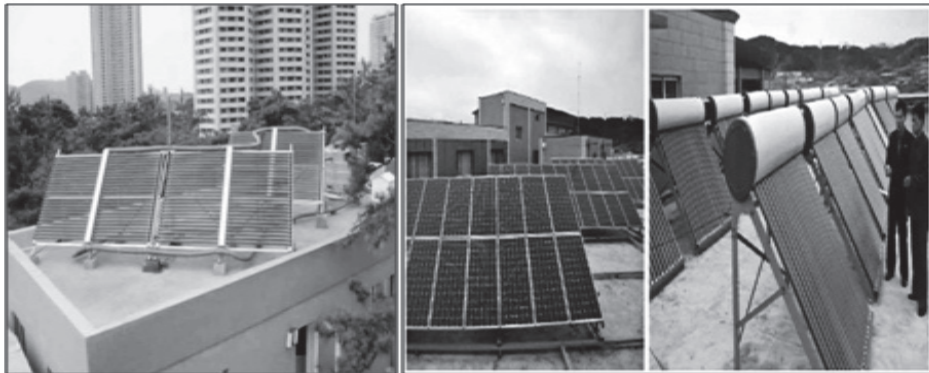
북한은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강·하천을 활용한 중소형 발전소를 ‘고난의 행군’ 이후 약 6,800여개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 중소형 발전소들은 소규모인 관계로 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낙후된 설비 사용과 일정하지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2000년 이후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자강도 희천발전소, 양강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신설 발전소 중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강·하천을 활용한 중소형 발전소를 ‘고난의 행군’ 이후 약 6,800여개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 중소형 발전소들은 소규모인 관계로 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낙후된 설비 사용과 일정하지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반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을 세우고, 북창·평양 화력발전소 등 핵심 석탄 화력 발전소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 교체 및 보수, 일부 탄갱의 기술 개선 및 설비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다. 메탄가스 등 대용 연료 개발 및 풍력, 태양열, 조력 등 대체 에너지의 활용을 모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전력산업 복구가 난망을 보이자, 개별 가정, 소규모 서비스 기관·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으로부터 9W, 11W, 100W 등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생활경제 차원의 소규모 투자에 기초한 것으로서, 북한 전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전력산업의 정상화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투자가 도입되어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한 평양 주택과 기관들

(3) 식량 생산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 집단영농 생산 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등으로 인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여 만 톤의 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한 546g만을 배급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등으로 기근 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이 중단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 원자재 생산 급락,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도 400만 톤 이하로 급감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표 5-7>에서 보듯이,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1997년 3년간 식량생산량은 평균 354만톤에 불과, 감량배급(1인당 546g/일) 기준으로도 식량 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표 5-7.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 : 만 톤)

연도	'95	'97	'00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식량 수요량	534	530	518	536	548	545	560	543	540	548	546	534	540	543	537	549
전년도 생산량	413	369	422	395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25	445	484	503	507
부족량	121	161	96	141	123	114	106	95	139	117	135	109	95	59	34	42

주: ① 1995~2010년간 식량수요량은 농촌진흥청이 추계한 것으로, 감량배급(성인 1일 546g)기준으로 계산.

② 2011년 이후로는 WFP/FAO가 추계한 것으로, 1일 최소 칼로리 기준량(1인당 458g)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농촌진흥청(1995~2010, 1~12월 기준), WFP/FAO(2011~2015, 11월~10월 기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 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국제사회의 농업 지원, 북한 당국의 식량 증산 정책 등에 힘입어 400만 톤 대 생산량을 회복하고, 2014년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 사상 최대치인 507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북한이 매년 평균 상업적으로 약 3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수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식량 부족량은 10만 톤 내외로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가장 식량 부족량이 적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식량문제만을 매년 '주공전선'으로 삼던 과거와 달리, 농업 외 수산·축산분야도 강조하며, 곡물 이외 단백질 섭취 문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북한 농업 생산력이 농업 인프라의 부족과 가뭄·홍수 등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또 분배체계의 왜곡, 경제 양극화 현상의 확대 등으로 외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엔기구는 최근에도 북한 전체 인구에서 식량 절대량 부족 인구를 약 15~20%로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만성 영양실조 계층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체농법을 부분 수정하고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라는 개선조치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1980년대 초 인민공사를 해체한 중국의 농가생산책임제 개혁처럼 소유제 개혁을 시행하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다락밭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

분조관리제는 1966년에 모든 협동농장에 도입한 제도로, 협동농장의 기층 단위인 분조 내 노동 단위(10~25명)에 일정 면적의 농경지와 생산 도구 등을 주고 국가가 해당 분조의 정보당 수확량을 정하여 수행 정도에 따라 분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1996년에 식량난 심화로 곡물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분조 내 노동 단위 규모 축소(7~8명), 분조에 목표 생산량의 초과분에 대한 현물 처분권 부여 등 일부 내용을 바꾸었다. 그러나 목표량 자체가 비현실적인 데다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 자체도 늘 부족해서 1990년대의 분조관리제 개선 조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김정일 정권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한 후 2004년도에 협동농장 분조관리제의 분조 내 노동 단위 규모를 7~8명에서 3~4명으로 축소하여 가족 단위 영농이 가능하도록 일부 시범 실시한 제도이다. 북한당국이 2006년부터 시장통제와 더불어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실험 시행이 폐지되었으나, 김정은정권이 출범한 후 2012년도에 다시 부활, 일부 협동농장과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협동농장으로 전면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4) 재정 규모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 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 자금까지 부담하고, 생필품을 생산비 이하로 공급해주는 배급제 운영,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까지도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에서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 구소련에 비해 더욱 중앙집중적인 계획시스템과 배급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민총생산(GN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비중은 90%수준으로서, 평균 40~60% 비중을 보였던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재정난도 초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극심한 기근이 진행되었던 1995-97년 사이에는 재정규모를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의 위기가 심각했고, 1990년대 말경 재정규모는 1994년 대비 약 46% 수준(달러표시 기준)으로 추락했다.

표 5-8. 북한의 재정 규모 추이

연도	달러표시(억달러)	북한 원화 표시(억원)	대미 환율(원)
1990	165.6	355	2.14
1994	191.7	414	2.16
1995~'97	-	-	-
1998	91.0	200	2.20
2001	98.1	217	2.21
2002	-	-	-
2003	22.3	3,234	145
2005	29.0	4,057	140
2007	32.6	4,406	135
2009	35.9	4,815	134
2011	577.7	5,669	98.3
2012	61.2	6,217	101.5
2013	66.2	6,563	99.2
2014	70.9	6,983	98.4
2015	74.3	7,366	99.1

주1) 2015년 재정규모는 예산수입 계획규모.

2) 북한의 예결산은 매년 증감률만 발표하므로 금액은 추정치, 달러 표시 금액은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추계.

3) '95~'97년의 미발표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2002년 미발표는 7.1조치 계기 재정의 조정 때문임.

자료: 통일부

북한의 재정은 2000년대 이후 산업생산력이 불균등하게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재정난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식량 배급제는 체제유지와 관련된 인구의 약 10% 정도에만 적용되고 있고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며,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들 또한 제도적 명의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는 개인 부담에 의해 작동되고 있고 국영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도 대부분 중단되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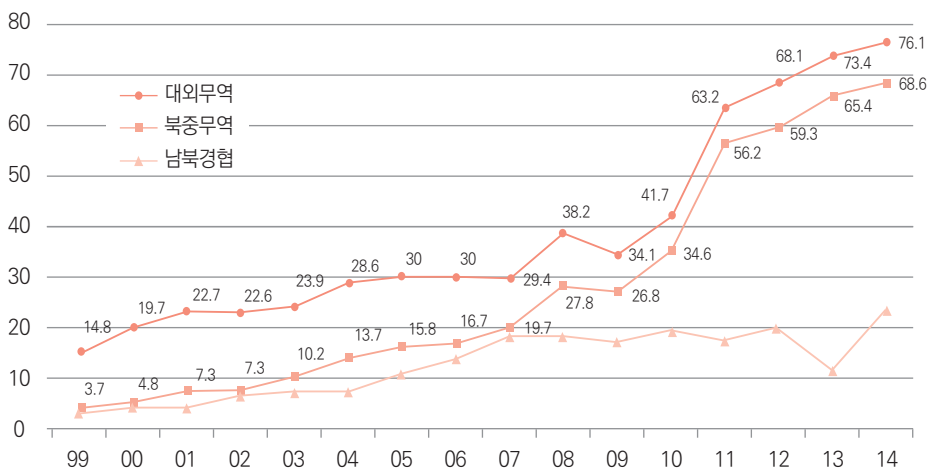
한편, <표 5-8>에서 2003년~2015년간 북한의 경제성장율이 연평균 1%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의 재정이 연평균 약 9.8%씩(북한원화 기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북한 재정이 사실상 비계획경제 부문의 경제 활동에 상당 부분 의존되어 도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계획 부문의 경제 단위들이 시장과 연계하여 계획지표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단위들이 시장 활동에서 얻은 수익금을 이익금, 거래수입금 등 국가납부금 명분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재정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각종 공공재 건설, 각급 학교 운영비, 인민군대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보급 등도 '사회적 과제'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준조세들로 충당하고 있다.

(5) 대외무역

북한 경제는 냉전시대에 자력갱생 발전 노선을 경제정책 기조로 하고, 구소련이 원유 등 전략 물자들을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따라 대부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거의 10%가 넘지 않는 구조였다. 대외경제관계는 북한 내수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산요소들의 수입을 위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제난 도래 이전 북한의 무역액은 1990년 42억 달러가 가장 높은 규모였다.

그림 5-1. 북한 대외무역과 북중·남북 교역 규모의 추이



자료: 무역협회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단 일화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대외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지체함으로써 북한 산업생산력 유지에 필요한 투입 원자재 수입 곤란과 더불어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역의 붕괴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2014년 현재 76억달러로, 1990년 대비 약 8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미미한 회복세를 보인 것에 비해, 이는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이다. 경제성장율이 2000년대 전·후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복을 보이고, 연평균 1%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낸 것에 비한다면,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2000-2014년간 연평균 약 20%씩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 내용은 북한 경제의 기초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함께 확대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90년대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억~10억 달러로 늘어났다. 북한 경제의 미미한 회복세와 시장의 발달로 인해 수입은 급증한 반면, 수출은 1차 자원에만 의존함으로써 수출 증가률이 수입 증가률에 못 미쳐 왔던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이 중국과 남한에 편중되는 구조,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증대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중무역은 1999년 25%에 불과했지만, 2014년 북한 대외무역의 9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사업으로 한정된 반면, 북중경제 관계는 투자협력, 위탁가공, 노동력 수출, 일반교역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의 대외경제 부문이 어느 한 국가에 90% 가까이 의존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표 5-9. 북한 대외 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단위 : 억 달러)

연도	'99	'00	'02	'04	'06	'08	'10	'12	'14
총교역규모	14.8	19.7	22.6	28.6	30.0	38.2	41.7	68.1	76.1
북중교역규모	3.7	4.8	7.3	13.7	16.7	27.8	34.6	59.3	68.6
비중(%)	25	24.4	32.3	47.9	55.7	72.8	83	87.0	90.1

주: 남북 경협을 제외한 비중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증하게 된 것은,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 급증, 경제회복을 위한 설비자재의 수입 증가, 시장의 발달로 인한 소비재 수입의 급증,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길림성 훈춘 권하세관을 통과하고 있는 화물차들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역규모 확대는 기초 원자재, 공업완제품, 에너지, 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고, 수출은 1차 자원(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및 위탁가공 제품에 편중되는 후진국형 구조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14년 북한

은 대중국 교역에서 무연탄 등 광물성 연료(40.3%), 철강석(11.9%) 등 광물성 제품을 52.2% 수출하고, 식량·에너지·설비자재·완성 공업제품 및 소비제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정책적으로 무역의 다변화, 다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대중국교역 일변도, 완성제품 수입, 1차 자원 수출이라는 후진국형 교역 구조는 단기간내에 개선될 전망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외자도입의 곤란, 산업 생산력의 정체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북한의 경제난은 산업연관 관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투자 재원을 군수공업 및 연관 기간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민생경제는 자력갱생에 맡기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경제 건설 노선을, 김정은 시대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화 개혁을 시행하지 않은 채 시장을 묵인하다가 다시 통제하는 경제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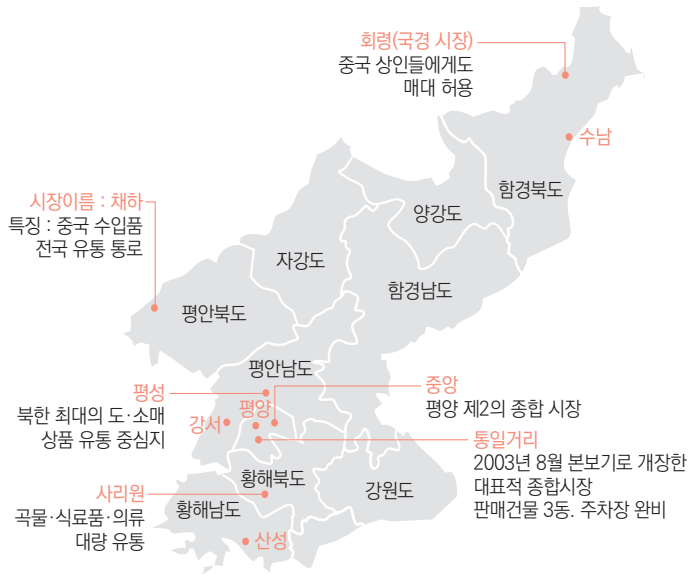
1. 시장의 활용과 통제

(1) 시장화 현상

주민들의 민생경제를 자력갱생 원리에 맡긴 북한의 정책은 점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을 확산시켜서 2000년대 초에 북한 경제 내 시장이 양과 질로 구조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식량 및 생필품 부족이 확산되자 기존의 10일장 형태로 열리던 합법 농민시장이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변모되고,

1990년대 중반경 배급제 마비 이후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식량·공산품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2.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처음에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가 중단될 당시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 목적으로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시장에 등장했었다. 그러나 점차 국경무역 개방 및 국가재산의 전유·약탈·탈취 등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들이 장마당에 유입되자 여러 차례 교환 활동으로 부가가치와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원리를 인식하고 상업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장마당 참여 주체들은 처음에는 ‘등짐장사’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장사인 ‘되거리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장사’ 및 ‘차판장사’ 등으로 분화해 나갔다.

1990년대 말부터는 상설시장에서 장사하는 ‘매대장사’로 정착해 나갔다. <그림 5-2>에서 보듯이 대표성을 띠는 시도 종합시장들이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발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소도시까지 유통망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또한 계획경제 부문 내의 국영기업소 및 생산 단위들은 계획 체계 작동의 핵심인 '자재공급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계획지표'가 아닌 '기업 자체 지표'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로 국가계획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즉 본래 그 국영기업소의 생산활동과 상관없는 무역 활동이나 상업 활동 등으로 국가납부금을 내거나 투자자인 '돈주(전주)'와 결탁해 생산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 활동 내에서 합법적인 비계획(시장) 활동 또는 불법적인 비계획(시장) 활동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 내에 시장화 현상이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된 것은, 1995년 공장·기업소·기관별로 식량 문제를 알아서 자체 해결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경제 단위는 식량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각기 외화벌이 회사를 조성해 상업 및 무역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북한의 유통시장이 확장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으로 군부가 협동농장, 공장, 철도, 운수, 체신 등 경제 부문의 전 영역에 걸쳐 경제 활동의 대체자로 등장하고 군경제 기관들에 의한 비계획적 경제활동이 증가되면서, 북한의 시장공간은 양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군·당 등 특권기관들이 자본을 보유한 이른바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과 결탁해 비계획 경제 활동의 영역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면서, 북한

의 시장은 북한경제 내에 질적으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시장화 현상은 유통 부문을 넘어 생산 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시장 활동의 행위자도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당·정·군 기관들에까지 확대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시장 기능의 부분 제도화

시장화의 양적 확산과 질적 구조화 현상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계획 기능의 분권화와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모색하도록 압박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재정 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국가의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과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 및 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여타 경제 부문들은 불가피하게 일부분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여타 경제 부문들로부터 잉여 경제의 이전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시장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셋째로 이미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공간을 국가의 통제 아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였다. 7·1조치는 ①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② '변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지표 변경, ③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의 현실화, ④ 협동농장 분조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 확대, ⑤ 주민들의 모든 소비품 및 식량 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2003년),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2002년), 수입물자들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2004년) 등의 개설, ⑥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고, 궁극에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던 '체제내적 개혁'의 성격을 가

진 조치였다. 당시 북한 당국은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라는 정책노선을 병행적으로 강조했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의 성과에서 실리를 최대로 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김정일 정권은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민수생산 부문의 경우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통해 자력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시장기능 일부를 부분 제도화 했던 것이다.

그러나 7·1 조치는 “계획형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이라는 정책 의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부문별 시장(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주택 등)의 부문별 양적 성장·심화와 더불어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를 더욱 더 초래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를 후퇴시키고 시장을 단계별로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다.

(3) 시장 통제와 화폐 개혁 시행

시장의 통제

7.1조치 시행 이후 2000년대 중반 경 북한의 시장은 생계형 형태에서 부의 축적 공간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며,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신흥 부유 계층도 형성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다양한 형태의 개인 경제활동(임노동, 장사, 개인 경작, 개인 가정교사, 개인 식당운영, 개인 숙박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 현상이 확대되어 나갔다.

나아가 계획경제 부문이 점차 시장경제 부문에 침식당하거나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인민경제 내에 군 경제, 당 경제 등 특권경제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권경제 기관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합법을 내세운 불법 행위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

와 부패경제 확대 현상도 나타났고, 북한 주민 대부분의 소득 취득과 소비 생활이 공식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심각한 체제 위협 의식을 느끼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장 통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처음에는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제한, 장사 여성의 연령 제한, 매대의 폭 및 장사 품목 수 제한, 메뚜기 장사꾼(종합시장에 고정 매대가 없는 장사꾼) 단속 등의 수준이었지만, 2008년 이후 종합시장마저도 철폐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을 철폐하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 임금은 의미 없는 금액인지 오래였고,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2009년 상반기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하면서 대규모 도매시장의 대명사인 평양 인근의 평성시장을 폐쇄하고, 계획경제 체제의 복원을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하였다.

화폐 개혁

화폐 개혁은 예고 없이 신·구 화폐를 1:100 비율로 교환하는 조치였다. 이때 가 구당 북한 원화 10만원(후에 50만원으로 조정)을 교환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시장 철폐, 외화사용 거래 금지, 여러 당·군 산하에 난립되어 있는 무역 회사들의 무역성 산하로 귀속 등의 조치들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

그 밖에 구화폐를 모두 회수하고 신화폐만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발권 능력 회복과 함께 재정 확충을 도모했다. 2009년 당시 북한은 김정은을 3대 후계자로 공식화하고, 이른바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건설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자금들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3대 세습 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던 시장세력들을 통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2009년 발행된 북한의 신화폐

그러나 화폐 개혁은 시행 직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북한이 이른바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경제정책들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첫째, 북한 원화 가치의 추락과 북한 경제의 위안화·달러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둘째,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예컨대 쌀 1kg의 가격이 화폐 개혁 직전인 2009년 11월 초에 비해 2013년 11월 말 약 250~300% 수준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셋째, 장마당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국영기업소, 계획경제 부문까지도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재정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급 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북한경제 내에 시장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과거와 같은 계획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복원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2010년 2월 초 이후 재차 종합시장 및 외화 거래 허용과 특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의 활동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후 시장에 대해 김정은 정권 출범 때까지 묵인 정책을 시행했다.

화폐 개혁의 내용

- 신·구 화폐 1:100 교환(저금소 저축은 1:10 교환)
 - 가구당 10만 원 상한 교환 → 나중에 상한선이 5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짐
- 화폐 개혁과 동시에 시행된 조치들
 - ① 종합시장 폐쇄, 농민시장으로 강제 전환
 - 상인 보유 물자, 화폐 모두 국영상점으로 이관 및 국가기관 납부
 - ② 외화 사용 금지
 - 개인의 외화 상거래 불법, 보유 외화 모두 당국에 헌납
 - 기업소·무역회사 외화 수입은 24시간 내 저금소(은행) 입금
 - ③ 노동자·농민의 임금 종전대로 지불
 - 1인당 500원 배려금 지불, 농가 가구당 15만 원 현금 분배

(4)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 재시도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정권 말기 희천발전소 건설 등 몇몇 대규모 건설사업들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산업생산력은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물적 기반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극심하게 확대된 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정책과 시장의 부분 활용→통제→북인의 반복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3대세습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강성국가 구호는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난과 기근, 탈북자 증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이 내세운 구호이다. 최악의 대내외적 위기속에서 체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김정일 정권은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거부하고, 정치·사상·군사·경제 등 각 부문에서 김일성 생일 100주년 되는 해인 2012년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북한은 2008년도부터 이른바 '주체공업'(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과 관련된 흥남 비료공장 등 일부 공장들에 대한 설비투자, 평양 10만세대 아파트 건설, 자강도 희천 발전소 건설 등에 주민 총동원 정책을 시행했다.

셋째, 경제관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의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시장이 북한경제 내에 구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을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확대와 더불어 특권 세력들의 지대소득 확대만을 초래하고 있다. 즉 시장 활동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 및 잉여 가치가 국가의 재정으로 유입되어 산업경제 정상화에 투입되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만을 확산시켜 왔을 뿐이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포하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경제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단지 명칭만 변경해 유지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시장화 현상 일부를 수용해 경제의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과거 '7·1조치'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경제 각 부문별로 전격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아직 대외적으로 그 전모가 공표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

상을 위한 투쟁을 다그치는 관건적 고리⁶⁴⁾라고 하며, 내부에서 시장기능 부분 활용 조치들을 재도입·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⁶⁵⁾ 해외 언론과의 북한 경제학자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분야에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일부 지역과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작업조인 분조(15~20여명, 50정보) 내에 포전을 담당하는 최종 노동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간에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는 포전담당책임제 도입을 통해 농민의 생산의욕이 제고되어 식량 증산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조심스럽게, 지역별로 변형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균량미 수매 우선 원칙, 비현실적인 계획 수매량, 기존 협동농장 조직체계의 유지, 분배 토지등급의 차이, 분배 토지면적의 편차, 여전한 주체농법의 강조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둘째, 공장·기업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독립채산제 및 경영분권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장의 경우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결정 등에 있어서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기업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력·자본·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출기업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들은 사실상

64) 노동신문, 2014.10.22.

65) 조선신보는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서 새 경제관리 체계에 따른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고 (2013.4.11),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013.11.6).

66) 조선신보, 2014.12.29일 수매양정성 김지석 부상의 인터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2004년 확대조치 방안을 대부분 재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1조치 실험 중단→시장의 통제와 목인의 반복 속에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상황을 사후적으로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당의 지도, 사회주의 집단적 소유제 원칙을 구현하는 가운데 시행하는 것으로서 “유연한 집단주의 경제관리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역시 ‘체제내적 개혁’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시행되고 있어 향후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제한적 대외 개방 정책

(1) 모기장식 개방과 4대 특구 개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연관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제공받아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내세우고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증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외자를 공업 부문 약 36억 달러, 인프라 부문 약 9억 달러, 서비스 부문 약 1억 달러 등

총 투자 건수 119개에 47억여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996년 9월과 199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포럼을 열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약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그쳤다.⁶⁷⁾ 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카지노, 운수업, 상업 등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었다. 투자자도 화교 자본이 약 70%, 조총련 자본이 약 20%를 차지하여 서방 자본의 투자는 미미하였다.

북한은 '모기장식 개방론'에 기초해 내륙 지역과 차단된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운영하려고 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대외개방은 대내 개혁과 동시에 진행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대내경제의 개혁조치 시행하지 않았고 남한 자본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자력으로서는 '90년대 붕괴된 산업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변방의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갔다.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신의주·개성·금강산까지 더하여 4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신의주는 특수행정 단위로 중앙의 관할 아래에 두지만 자율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정치제도 면에서는 홍콩식을 경제특구 제도 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선천 특구를 선별 혼합한 방식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로 개설되었다.

67) KOTRA, "2002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경제관계를 중심으로", www.kotra.or.kr/main/info/nk.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조항이나 남북한 합의와 달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으로 잠정 중단되어 있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시행된 2009년 이후 몇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다. 2013년 상반기에 166일간이나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다.

(2) 대중국 개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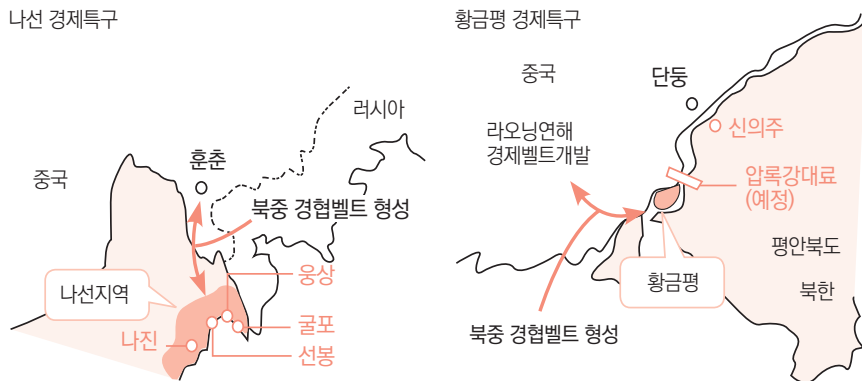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연이은 대남 도발로 남북 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정책을 변화시켰다.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함께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 지역의 교량,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대·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북한이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려 했던 것은 북·중 간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 수요도 작용했다. 우선 중국은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5~2010년) 추진 이후 향후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동북 3성 지역을 주목했다. 따라서 동북 3성 지역 개발에 주변 지역인 몽골,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계발전이 절실했었다.

특히 2009년 9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개방선도구’의 개발에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 확보가 절대 요구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10년 5.24조치의 돌파, 그리고 2012년 강성국가 달성을 위한 경제건설 등으로 북중경협이 필요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 등 북한 내부 정세 변화 요인으로 인해 양 지역 경제특구 개발은 랍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선 북·중 간에 4대 산업(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을 육성하기로 합의한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형식상 관리위원회 건물만 건축된 후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나진·선봉 특구의 경우 중국 자본 투자가 주로 식당·가라오케·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이고,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자본의 대북 투자 역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5-3.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3) 경제개발구 신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대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설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2015년 12월 현재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총 26개에 이른다.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5개의 경제특구(나선 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

대)를 제외하면,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나 된다.

표 5-10.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단위	종 류	지 역	
중앙급 경제특구 (5개)	나선 경제무역지대	직할시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평안북도	
	개성공업지구	직할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평안북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강령 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진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무봉 국제관광특구	양강도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혜산경제개발구	양강도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공업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농업개발구	속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관광개발구	온성서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시

자료: 북한 투자제안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 개발 실태와 전망」 및 노동신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추진은 기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모방해 경제특구·개발구를 중앙급·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 정부에도 경제특구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급 경제개발구들은 개설 규모가 최저 1.5km²~최고 5km²(평균 3km²)이고, 목표 외자유치 규모도 1억달러 내외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⁶⁸⁾

둘째, 기존의 종합 경제특구가 아닌 각 지방 정부들이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기초로 특화된 경제개발구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0월까지 발표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들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개발구 5개,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특구 4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국제녹색시범구 1개 등이다.

셋째, 기존과는 달리 경제개발구 지대 밖의 북한 기업이 새로운 경제특구·경제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경제개발구법 제20조), 지대 내의 외국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경제개발구 기업창설규정 제21조) 제도화하였다. 나진 및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대 밖 북한의 기업들과 위탁가공 내지는 생산공정의 분업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여러 현실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북한의 시장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반복적인 중단 위기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시장경제 의지 및 전문가 부족,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불안정 요소 등이 외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68) 북한 투자제안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개발 실태와 전망」, 자료 참조.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대외정책을 시행하며, 최고 지도자가 개혁·개방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산업·시장의 연계를 위한 대내 시장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고, 중앙·지방 정부가 외자유치에 필수적인 법제도 및 인프라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외자유치의 관건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인프라 등 자본 유치의 여건이 마련되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핵개발 포기 의지를 적극 표명하지 않는 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김정은 정권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추락한 산업생산력을 복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질서에 적극 편입하여 해외자본을 활용하는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제도는 계획경제이지만 현실은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화 확대를 통해 산출되고 있는 부가가치들을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기조를 전제로 한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 능력 강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모색하는 병행전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보다는 다소 민생경제 회복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며 ‘북한식’ 변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즉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체제유지 분야에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북한식 변화'의 모색과 중단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통제와 묵인 속에 '90년 이후 북한 시장화 현상이 양적·질적으로 지속 발전되어 온 양상과 달리, 제한된 개방과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이라는 양면 정책을 시행→중단→재시도 등으로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이 시도하는 '변화정책'들은 현실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사후적으로 수용하는 소극적 조치들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 경제체제는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크게 확장되고 이중 경제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향후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내재적 딜레마가 김정은 정권의 선택지에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경제개발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북한식 세습 체제의 내구력에 손상을 입히고 체제전환 요소를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향후에도 '북한식 변화 경로'를 반복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 추세속에서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 기적 성격을 누적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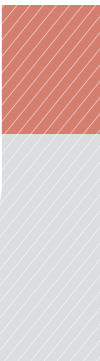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

제1절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제2절 북한의 문예정책과 실태

제3절 북한의 언론



Key Point

01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을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국가배급제붕괴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02

북한의 학교교육은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와 혁명활동, 주체사상 학습 등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한다.

03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 노동당의 이념, 정책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과 예술은 국가의 통제 아래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강조한다.

04

북한 체제에서 언론의 역할은 당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선동하며, 당의 혁명사업 실천을 위해 주민을 조직·동원하는 데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인민대중의 집단 교양자, 조직 동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체제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1절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 교육 목표

교육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광복 이후 사회주의체제 건설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상의무교육제도’ 수립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기자재, 연료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마당’ 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부정, 부패 현상이 학교교육에도 반영됨으로써 부정 입학과 성적 조작 등 각종 교육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교육 제도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와 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교육 관련 법령은 취학전 교육, 초중등학교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 분야별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내용, 행정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1977년 9월 5일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을 근간하는 교육법(1999), 보통교육법(2011), 고등교육법(201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012년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등 일련의 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북한 교육 체계의 기본 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로 명시되어 있다.⁶⁹⁾ 북한이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다. 북한 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 갖추어야 할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북한 교육에서 혁명사상 교육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 노동당 정책 및 혁명전통 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등이다. 또한 과학기술 교육은 선진과학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다. 체육 교육은 노동과 국방

69) 2009년 헌법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가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로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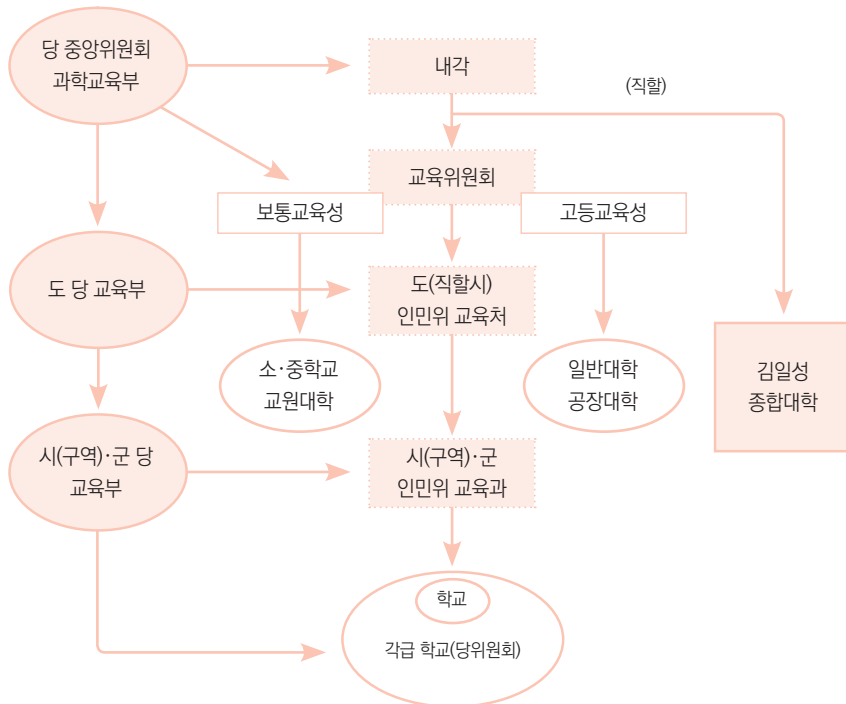
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신체적 단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한편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교육행정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북한은 당-국가 체제로서 당이 국가 기구와 사회조직 일체를 통제·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정책의 집행 및 행정은 내각의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과 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다.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그림 6-1〉과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구체화하며 학교는 당과 내각의 교육정책을 실시한다.

노동당

교육과 관련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 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권한을 우선 행사하고 인사나 교육 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지만 실권은 학교에 파견된 당 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고 사상교양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

행정·실무 업무는 내각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교육위원회 산하에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 유치원과 소학교·중학교 및 교원대학, 고등교육성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각각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 지침을 각 도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해당 시·군·구역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각급 학교는 최종 하달된 내각의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이 실시된다.

학교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장과 학교 단위 초급당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 각 분과와 경리주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학교는 교과별 분과, 소학교는 학년별로 분과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학교 당 위원회가 있고, 이 당 위원회 산하에 교원사회 단체 및 학생사회 단체 등 사회·정치 활동 조직이 있다.

이와 같이 노동당이 실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이에 따라 학교

당 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관리·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의 권한을 능가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당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학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3) 학제

1) 북한 교육 제도사의 변천

사회주의 교육 제도 확립

북한의 교육제도는 정권 수립 이래 현재까지 당과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이 이뤄져 왔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정권 수립 초기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 도입 시기(1945.8~1950.6)로 학제 체제개편을 통해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학제로 재편되었다. 광복 후 6·25전쟁 발발 전까지 북한 지역은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체제 수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 부문은 ‘북조선 학교 교육 임시 조치 요강’ 발표(1945.10)에 이어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편하고 인민학교 4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의 학제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 교육 제도는 사회주의 교육으로 개편을 시도했으며, 특히 문맹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제 강점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교육을 위한 ‘성인 학교 체제’가 도입되었다.

6·25전쟁 후 복구시기(1950.6~1959.10)의 북한 교육제도는 전후 복구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는 구호 아래 학생들의 노력동원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한편 1956년부터 4년제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58년부터는 중학교까지 7년제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노력동원과 이념 교육의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을 시도하였다.

1960년대 북한은 전후 복구와 함께 사회주의체제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교육에서 기술교육을 강조했다. 기술교육 강조 시기(1959.10~1966.12)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기술 전문학교를 창설한 데 이어 고급중학교를 폐지하고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하여 1인 1기 기술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학제는 4년제 인민학교, 3년제 중학교, 2년제 기술학교, 2년제 고등기술학교, 3~5년제 대학으로 구분되었다.

북한의 기술 교육 강조는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의 실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어 인민학교 4년과 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2년제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주체적’ 교육 체계 수립과 변천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적’ 교육체계 수립이 시도되었다. 1972년 노동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9월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포괄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 교육 전반에 걸쳐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어린이 교육보육교양법’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학제도 2년제 유치원,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중등학교(1978년 고등중학교로 개명),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교육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교육의 전문성과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재 교육 등이 행해졌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 양성

을 위해 각 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영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또한 소학교 4학년부터 주 1시간씩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2년 9월까지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11년 의무교육 제도가 실시되었다. 2012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4년제 소학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5년제 소학교, 중학교 6년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를 분리하여 교육한다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2013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4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 6-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2~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4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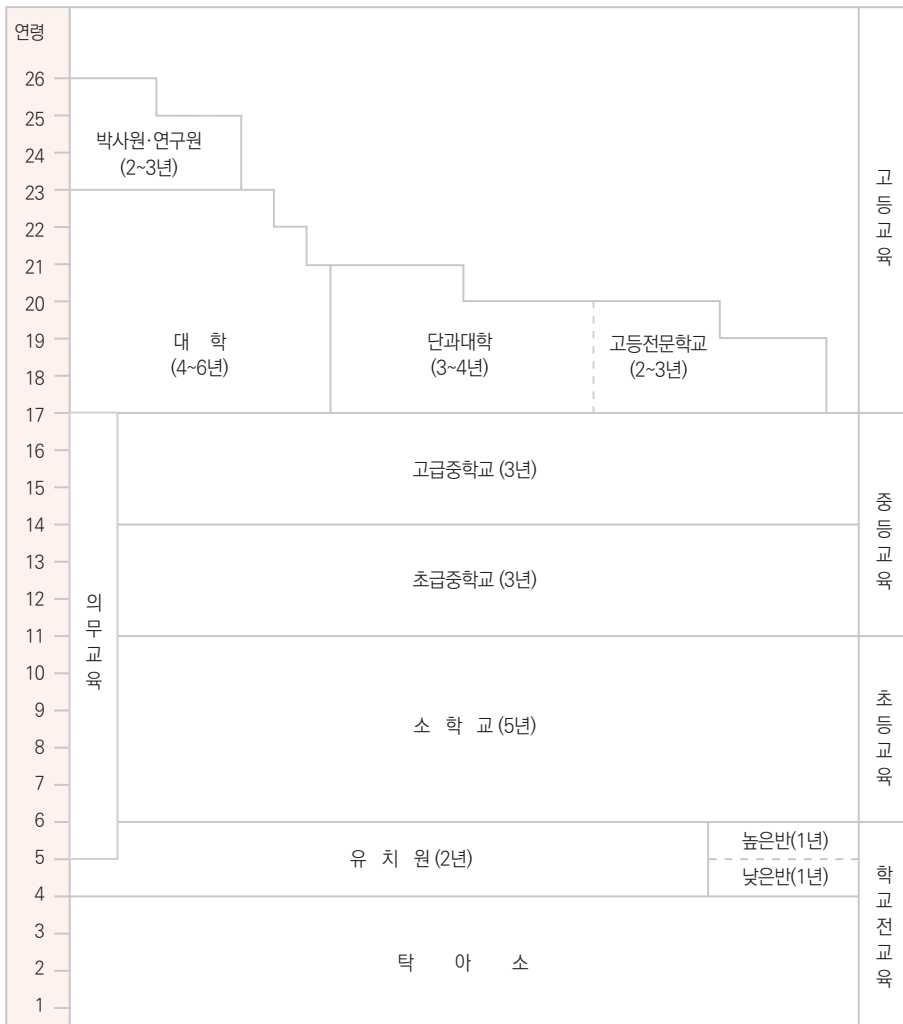
2) 학제 구분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6-4(6)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된다. 당초 북한의 학제는 4-6-4(6)년제로 1972년부터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등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2012.9.25)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 발표로 인해 2013년부터 소학교는 5년, 중학교 6년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12년 의무교육제는 2013년 4월 개정된 헌법(3장 45조)에 명시되고 일부 시범

실시를 거쳐 2014년 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한편 북한은 기본학제와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따른 특수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6-2. 북한의 학제



고등교육과 특수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운영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인문과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 최근 들어 자연과학부의 졸업 연한이 1~2년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9월 1일에 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개학일이 4월 1일로 환원되었다. 방학으로는 여름방학(8.1~31), 겨울방학(1.1~2.16), 봄방학(3월 말 1주일)이 있다. 3월에 학년말 시험을 치르고, 4월 1일 새 학년이 시작된다.

보통교육

북한에서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가르치는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광복과 더불어 「북조선 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 과정을 포함한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후 수차례 학제를 개편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제는 2012년에 개편된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 등 유치원과 초·중등 단계를 포괄한 12년제 의무교육이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모든 자원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국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인간 발달의 전면 육성을 명분으로 들어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켜 각종 노력동원 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노력동원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어 있다.

소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일반중학교 학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1~4학년) 내지 10주(5~6학년) 동안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 노력봉사를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김매기 전투’, 모내기를 하는 ‘봄 전투’와 가을걷이를 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되어 20~30일씩 계속된다.

또한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 시설 개·보수 등 학교운동을 위한 제반 비용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률을 증가와 취학을 급감 등 학생들의 학습 수준 전반도 저하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무상의무 교육은 선전과 달리 그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평등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 분야 과목, 농촌 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 분야의 과목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정보기술의 인재양성을 위한 조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수재교육과 외국어·컴퓨터 교육 등 특수교육은 실제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일부 지역의 특수계층에게만 기회가 부여될 뿐 일반 학생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실한 교육운영 속에 교육 외 각종 노력동원과 가중된 부담 등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한 최고인민회의 ‘결정’(2012.9)에서도 이 같은 실정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내실 있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 지도와 법률 통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된 국가동원 이외의 학교 등에 과도한 사회과제 부여 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

북한에서의 고등교육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설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25전쟁 후 3개년 복구건설기(1954~1956)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등 의무교육의 전반 실시를 위해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에는 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70) 기간에 공장대학이 증설되었다. 제2차 7개년 경제계획(1978~1984) 기간에는 부족한 각급 학교 건설을 위해 소규모 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 및 일반 단과대학과 함께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 등 산업체 부설 현장대학이 설립되었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보통교육과 다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보통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이므로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으나 대학 진학은 대학 입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각 교육위원회가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해 주고, 시·군 인민위원회 대학 모집과는 도에서 할당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

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이며,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 환경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직통생'이라 한다. 시험에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사회인으로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보통 시험성적 순에 따라 결정되지만 인성이나 소질도 중시돼 일종의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별 성적 차 등을 인정하는 고교등급제 실시로 지역별 학력 차 등을 감안하여 합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부정 입학, 성적 조작 등 교육 비리가 확산되면서부터 대학의 입학 요건은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 교재·교복·숙식비 등 각종 교육 경비, 학교 시설 관리, 유지와 같은 학교운영 경비 등을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이 부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명문대학 내 당·정 간부, 외화벌이 지도원 등 권력층 자녀들의 부정 입학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 혁명학원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무용, 음악, 조형 예술, 교예 등에 소질이 있는 특기자들을 가르친다.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옹계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 개성, 청진, 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 교육은 과학, 수학, 물리 등 이과 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성분만이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제1중학교에서는 일반 중학교와 다른 특수 교재(전문대 수준)로 자연과학, 컴퓨터, 영어 등을 배운다. 졸업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서 1대 1 교육을 받으면서 농촌지원 활동과 군 입대 면제 등 혜택을 받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수재교육 기관의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강성대국 건설 구호 아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 북한 당국의 수재교육 강화는 첨단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건설과 국가 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이 학원의 입학 자격은 소학교 졸업자로서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 가운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다.

최근 북한은 보통교육법 제정(2011.1.19)에 이어 고등교육법 제정(2011.12.14)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일꾼 양성과 함께 기초 과학기술과 외국어 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김정일 집권 이후에도 이어져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이끄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새로운 학제 시행과 함께 첨단기술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혁명학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 교육 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혁



만경대혁명학원의 수업 모습

명학원은 1947년 10월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8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이며 입학 자격은 혁명 유가족 및 당·정 고위 간부 자녀들이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모두 기숙사 생활과 엄격한 군사조직 아래 의무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 대우를 받으며, 졸업 후에는 군 또는 특수 요직에 진출한다.

2. 교육과정과 방법

(1) 교육과정

초등교육 과정

초등교육의 경우 <표 6-2>와 같이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⁷⁰⁾ 특히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예능, 국방, 외국어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당 수업시간은 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도화공작 순으로 하여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 수학이 4분의 1 등 이 두 과목의 시간 배당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북한의 소학교 새 교육과정에는 유치원 과정과 함께 교과 통합과 탐구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음악이 음악무용으로 변경되고 새로 도입된 소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그림 이야기 형식을 활용하여 탐구학습을 강조하고 있다.⁷¹⁾



소학교 학생들

70) 학제 개편으로 소학교 과정이 4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교육과정 자료 미공개로 개편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71) 유치원 교과서가 이전에는 9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됐는데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됐다고 한다. 『교육신문』 2014.5.8

표 6-2.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시절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수학	6	6	6	6
6	국어	6	6	7	8
7	자연	2	2	2	2
8	위생				1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영어			1	1
13	컴퓨터			1	1

주) 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학제 개편 이후의 교육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2. 1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 말 1주일 간 봄방학)

중등교육 과정

중등교육의 경우 기본 6년제로 진행되다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식경제강국'을 이끌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과학, 컴퓨터 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⁷²⁾ '지식경제강국'은 김정은 정권의 국가적 슬로건인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 12년제 의무교육기간 연장과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72) 『교육신문』, 2014.5.8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2012.9.25),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채택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재학 연한 확대
-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학교와 3년제 고급학교로 구분 운영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작성, 새로운 교과서 편찬

2.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

-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 혁명인재로 키워나가는데 이바지 할 결의 표명
- 일반중학교(중등일반지식)/ 기술고급중학교(일반교육+해당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게 기초기술교육 시범적 실시)
- 수재교육 및 교육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필요한 조건과 환경 마련

-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들이 지원
- 법령 발표후 2년 동안 교실을 신·증축, 교구 비품들을 생산 보장

초급중학교

2013년 개정된 초급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학습, 소년단생활, 과외체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23개 과목을 교육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교과목이 각각 16개와 22개로 분리 증대되었다.

초급중학교 교과목의 경우는 고급중학교에 비해 통합형의 교육과정으로서 ‘김정은 혁명활동’ 관련 교과목과 함께 ‘자연과학’, ‘음악무용’ 등의 통합교과목이 도입되었다. 이외 개정 이전의 제도, 실습 등의 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이 컴퓨터이외 기본지식, 통계, 그림파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기술 과목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도입되었다.

교과목과 시수의 편성은 과학기술과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따라 수학에 이어 자연과학과 외국어 교과의 시수가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외국어 교과의 경우 영어 교과의 수업시간수 비중이 확대되었다.

표 6-3.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⁷³⁾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6	국어	5	5	5
7	영어	4	4	4
8	조선력사	1	1	2
9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6	5	6
11	자연과학	5	5	5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1주)	2(1주)	2(1주)
15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 북한의 교육과정은 주당 교수시간과 집중교수(주 단위로 표시)시간을 명시하고 있어 위의 체육시간의 주당 수업시간은 2시간이며 괄호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함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4시간으로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학습과 청년동맹 생활과 과외체육 등으로 편성되었다. 개정 이전에 비해 ‘김정은 혁명력사’ 과목이 신설됐고, 세분화된 분과형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초급중학교의 ‘자

73) 2013년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 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내용을 간단히 재구성한 표

연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초급중학교에서는 없던 '현행당 정책', '심리와 론리', '한문', '공업(농업)의 기초', '군사활동초보'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교과영역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초급중학교와 같이 수학과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교과이며 영어교과의 비중도 높다.

표 6-4.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⁷⁴⁾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3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력사		2	4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2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1	1	1
5	당정책	1주	1주	1주
6	사회주의 도덕과 법	1	1	1
7	심리와 론리			1주
8	국어문학	3	2	3
9	한문	1	1	1
10	영어	3	3	3
11	력사	1	1	2
12	지리	1	1	1
13	수학	5	5/4	4
14	물리	5	4	3
15	화학	3	4	2
16	생물	3	3	2
17	정보기술	2	1	1
18	기초기술	2주	3주	3주
19	공업(농업)기초			4
20	군사활동초보		1주	1주
21	체육	1	1	1
22	예술	1	1	1

74) 2013년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 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내용을 간단히 재구성한 표

대학교육 과정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르나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 과정은 전공 학과의 특성에 맞게 지정한 과목과 전 대학에 규정된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기초는 전공에 필요한 준비 과목으로 강좌별로 결정되고 전공은 지정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

교과영역별 수업시간 비중을 보면 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교과 영역 비중이 다르지만 보통 정치사상 교과 25%, 일반 교과(외국어, 체육) 10~15%, 일반기초 10~40%, 전공기초 10~40%, 전공 10~15% 등이다.

최근 북한은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실용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및 컴퓨터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 설치하여 IT 중심 학부로 대학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 및 학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와 학과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안을 개편하고 있다.

(2) 교육내용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와 혁명활동, 과학기술 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각각 가르친다. 체육 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교육은 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이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김일성 가계 우상화, 즉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시절’이나 ‘혁명활동’ 등 교과목을 배운다.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김정은의 혁명활동과 혁명역사까지 가르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활동’을, 고급중학교에서 ‘김정은 혁명력사’ 교과목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에는 반미·반일 등 반제국주의의 투쟁과 대결을 강조하는 내용과 자본주의의 문화유입을 경계하는 계급교양도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대미 적대 및 투쟁 의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미 교육과 함께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 침투를 배격하는 교육 강화,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입대 장려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상 이완의 방지를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와 러시아어보다 영어와 중국어가 인기있는 외국어가 되었다.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 대학의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도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시켜서 외국어 실기 능력과 일상 회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목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강의도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과학부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외국어 교수 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금성 제1중학교 컴퓨터 수업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과외교육 기관이다. 소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위해 건설된 일종의 학생회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을 '학생소년궁전'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2,000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해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의 소조실과 활동실 200여 개가 갖춰져 있다. 여기에 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 전시장 등이 있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함께 평양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특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표방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강조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과 함께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속선상에서 “지식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김정은이 전국교육일꾼대회(2014.9.5)에서 지식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⁷⁵⁾

75) 『교육신문』, 2014.4.3

이 같은 북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사상교육 강화는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정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기초기술 교육과 실습 또는 생산 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달되고 있어 학습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⁷⁶⁾

(3) 교육방법

북한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된 다섯 가지 사회주의 교육방법에 기초하고 있다.⁷⁷⁾ 첫째,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으로, 학생들 자신의 사고 활동으로 교수 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방법에는 설명을 통한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문답식 학습을 통한 교육, 직관을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교육, 긍정 감화 교육 등이 있다.

설명을 통한 교육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은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으로 폭넓은 견해를 쌓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답식 학습방법은 같은 책상에 앉은 학생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시험에 대비한 문제집을 교사가 미리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 주면 답안집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데 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교수내용을 직관으로 이해하도록 학습수단으로 실물을 많이 활용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장 견학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76) 조정아, 「북한의 교육: 체계와 문화」, 2005년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pp.330~332.

77)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32』, pp.389~398.

말한다.

긍정 감화 교육은 사상학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범사례를 대중 앞에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총화하고 분발하도록 이끄는 사상교육 방법이다. 북한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전형 가운데 하나인 ‘…따라 배우기’ 운동이 이 교육 방식의 한 사례이다.

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이는 학생들을 공산주의 혁명 인재로 키우는 데 필요한 방식이다.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의 강화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은 학생들을 정치사상 측면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학생들은 학생소년단,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녹화근위대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건설 지원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후대 교육을 전 사회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학교 이외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 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사상 강연, 과학토론회 발표 모임 등 다양한 소조활동으로도 이루어진다.

다섯 째, 취학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행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이 어릴 때 형성되어 평생 동안 공고히 발전된다는 전제 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평생 동안 지속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각각의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북한은 단순한 지식 습득만이 아닌 지적 능력과 지식탐구 방법의 향상을 위해 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암기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시켜 시험을 암기테스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실시하는 한편 컴퓨터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사고능력 배양, 지능교육을 위해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을 실시하고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 발표회, 교수방법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한 교사에게 ‘새 교수방법 등록증’을 수여하고 우수 교원에게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는 김정일이 2003년 무봉중학교 현지지도를 실시한 것을 기념하여 우수 교원에게 칭호를 수여한 제도이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 간 경쟁으로 교육의 물적 토대와 질 향상을 위한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교원의 자질향상의 방법으로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교육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교원에게 창안증을 부여함으로써 교원 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수안 및 교안자료 전시회, 교편물 전시회, 소논문전시회’ 등의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⁷⁸⁾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종합, 판단추리 능력과 상상력, 창조력, 언어 및 문자와 그래프표현 능력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열람, 습작, 계산능력, 창조적인 학습능력 등이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⁷⁹⁾ 한편 중등교육에 있어 평가방법의 개선방향으로 ‘원리적인 인식과 응용능력’ 위주의 평가가 제시되며 이 방식은 대학입학 시험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사업의 정보화’, ‘교육의 현대화’ 강조에 따라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교수매체의 멀티미디어화, 컴퓨터와 인터넷기반

78) 『교육신문』 2013. 10. 31.

79) 『교육신문』 2012. 11. 29

교육의 발전, 학습환경 및 교수방식의 설계 중시와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연구 심화 등 다양한 교육기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시설, 기자재 등 여건 마련이 관건이며 특히 정보기술 등 일부 과학기술 관련 교과목의 내용은 컴퓨터 등 첨단교육 시설이 없이는 정상적인 실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과 창조형의 인재 양성은 병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북한교육이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원하는 구성원, 즉 체제순응형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 과외활동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초급중학교가 6시간, 고급중학교가 7시간이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오전 8시에 시작한다. 소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20분간 ‘업간체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30여 분 동안 점심시간을 갖는다. 중학교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의 오후 교과시간이 있어 1~2교시가 더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과운영 전체는 소학교와 유사하다.

80) 『교육신문』 2014. 1. 2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수업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 반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4시에 시작하여 1강좌를 하고 5시 반에 정규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체능 과목 위주로 교원들에게 불법 과외를 받기도 하지만 과외 받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계층별 격차가 크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것이 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보충수업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교조, 외국어소조, 예체능소조 등이 있다. 매일 방과 후 2~3시간 실시된다.

북한 학생들의 과외활동 특징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결합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은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소학생은 연간 2~4주, 중학생은 연간 4~10주,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대학생은 연간 12~14주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진다.



소년단 입단식

북한의 주민은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 7세가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고, 소년단 일원의 상징인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또한 청년동맹 가입 후 곧바로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들어가게 된다.

군사교육 훈련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해당된다. 대학생이 되면 준군사 조직인 대학교 교도대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교도대 복무 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연대, 학부는 대대, 학과는 중대, 학급은 소대로 각각 편성된다.

(2) 학생의 이탈과 처벌

북한 학생들은 학교 규칙과 조직생활(소년단, 청년동맹 등)에 의해 규율 통제를 받지만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이탈 행위를 하기도 한다. 북한 학생의 이탈 행위는 주로 결석을 비롯한 각종 학교규율 위반과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이성 교제 등의 생활규율 위반이다. 경제난 이후의 규율 위반 행위는 절도와 마약(빙두) 거래·복용 등 불법 행위를 비롯해 장발, 종대바지(졸바지), 외국어가 쓰인 옷 등 ‘자유주의’나 ‘황색바람’ 등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따른 모방 행위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학교규율 위반 현상은 특히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심각화 되고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가족 해체와 북한사회 전반의 통제 이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처벌 권한은 청년동맹에 있다. 물론 교원들도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에게 처벌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서 벌을 준다.

(3)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며 대학 교원의 경우 교수라고도 한다. 다만 유치원 교사는 교양원으로

불린다. 일반 교원의 경우 임금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을 받고 대학 교원은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등 북한에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 혜택이 축소하고 학교관리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면서 교원의 처우와 인식이 나빠졌다.

한편 교원들도 끊임없는 업무와 배급 중단에 따른 생활고로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들은 직업 혁명가라고 하여 마음대로 조직생활에 빠질 수 없고 장사에 나서거나 퇴직할 수도 없는 사회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난 이후 교원은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다.

도시 지역의 남성 교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농촌에서는 뚝배기 농사로 연명하기도 한다. 미혼 여성 교원들은 질병이나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 여성 교원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결근하기도 한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시·군 당 교육부 모르게 7~10일씩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학급 몇 개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몇몇 교원들은 성적 조작, 입시 부정과 같은 불법 행위나 비밀 과외학습 지도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가 저하됨에 따라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은 보위부나 안전부 또는 시·군 교육기관이나 군 당 지도원 등 권력기관으로 진출을 선호한다.

교원이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양성 대학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고, 각 도에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 교원대학은 3년제로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각각 양성한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 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

하며,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의무교육 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한 교원들을 충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 군별로 교원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다.⁸¹⁾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 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다.

북한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부진 학생 또는 우수 학생의 학습지도를 한다. 월요일에 학습과 총화 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 모임을 하며 나머지는 교재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중학교 교원의 분과 모임은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 모임은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들은 갖가지 노동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철도공사 지원, 주변농장 지원, 식수, 국토정리 등 시기마다 제기되는 노력동원과 봄·가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노력동원이 있다.

81) 『교육신문』 2014. 10. 2.

제2절 북한의 문예정책과 실태

1. 문예정책

(1) 목표

북한의 문학예술은 문학을 비롯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다. 북한은 목적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예정책은 예술성보다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 체제 유지를 위한 홍보와 선전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적 가치는 배제되고 예술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였다.

북한 당국이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토대로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 확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여 동기 부여, 지도자(수령)에 대한 충성심 확보, 대남 적화통일의 정당성 확보를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

북한의 문학예술은 광복 후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투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북한의 문인과 예술인들은 시기별 당의 노선에 따라 해방 직후에는 모범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 방법론으로 주창한다. 이 시기 주요 과제는 토지개혁, 건국사상 총동원 대회 등의 새로운 사상을 북한주민들에게 교양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유형, 모범적인 인간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1950년대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발전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와 천리마 운동이 창작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작업은 부르췌아 사상과의 투쟁, 당성원칙의 철저한 고수, 천리마 시대의 주인공인 노동 영웅의 전형화였다. 한편 작가들에게는 사실적 창작을 위해 현장 체험이 요구되었다.

1967년 주체사상이 체계화된 이후에는, 항일혁명문학이 유일한 전통으로 인정받으면서 주체형의 단일꾼 묘사와 수령 형상화가 주제이자 소재가 되었다. 문학예술에서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1980년대 경제난에서도 당과 지도자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숨은영웅’을 발굴하여 선전하는 ‘숨은영웅 형상문학’이 집중 창작되었다. 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 등 사회주의권이 급변하는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지키세〉 〈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등과 같이 북한 주민들을 사상성으로 결속시키고 사회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2000년대의 특징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문화예술에 구현하는 것이다. 북한은 문학예술 작품을 통해 선군담론을 일상화하면서 체제유지에 전력한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문학예술의 목표가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체제 유지’가 된 것이다. 동시에 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관련 주제를 전면화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의 강조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진다. 김정은은 자본주의 문화유입에 맞서 사회주의 도덕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북한 체제유지에 전민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도자(수령)에 대한 충성심 확보

북한의 문예정책은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⁸²⁾ 계열의 문인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반제항일투쟁을 주제로 하는 ‘항일혁명투쟁’ 작품만이 정통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작했다는 작품을 재창작하기 시작한다. 대표적 예가 5대 혁명가극(〈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 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5대 혁명연극(〈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 대회〉)이다. 또한 김일성 개인의 혁명투쟁을 담은 영화 〈누리에 붙는 불〉, 〈백두산〉, 〈사령부를 떠나서〉와 총서 ‘불멸의 역사’가 1972년부터 2007년까지 33권이 출판되었다. ‘불멸의 역사’는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부터 김일성의 당 창건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김일성의 정통성과 위상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는 198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 작품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된 10부작 예술영화 〈조선의 별〉이다. 〈조선의 별〉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제작된 5부작 〈민족의 태양〉과 함께 김일성의 혁명투쟁을 주제로 하며, 사실과 허구를 교차 배치하여 김일성 가계의 혁명사를 사실화 하고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문학예술 소재에 다소 다양성이 보이면서 시문학의 서정화 경향이 나타나고 도시와 농촌 갈등, 세대 간 문제, 여성문제, 애정문제, 전통소재 등 다양한 현실 문제가 소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대표작에는 〈홍길동〉, 〈임꺽정〉, 〈도라지 꽃〉 등이 있다.

82)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은 1920년대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 안석영, 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 문예단체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한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도라지 꽃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 강화에 역점을 두는 작품은 경제난이 심화되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된다. <나는 첫 세대다> <받으시라 인민의 환호성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등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찬양하는 작품들이다. 동시에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100부작 계획의 <민족과 운명>을 제작한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제작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작품은 62부까지 확인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북한체도의 우수성과 지도자에 대한 복종·헌신이다.

2000년대는 “문학예술작품은 마땅히 시대정신에 맞아야 하며 시대의 숨결을 담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 집권 이후 주창되고 있는 선군정치와 이를 정당화하는 선군영도 업적을 작품에 반영하는 ‘선군혁명 문학예술’의 창작이 독려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연극 <웃으며 가자>, <철령> 등이 있으며, 이 시기 작품은 경희극으로 공통점은 ‘희극성’이다.⁸³⁾ 김정은 시대에도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라는 주제는 변함없다. 2014년과 2015년 새해 조선중앙TV는 <인민이 너를 아는가>를 방송했는데, 주제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날이 온다고 해서 주면 따르고 안주면 탄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범적 극중 인물의 대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독려하는 것이다.

83) 경희극은 북한 문학예술이 경제난 등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 미래를 보여줌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해 나가는 한 예가 된다.

대남 적화통일의 정당성 확보

마지막으로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반자본주의 이념을 본격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문학예술 작품에 남한 사회의 부패상,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 특히 주한미군의 병폐를 집중 부각시켜 왔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남한 사회의 부패를 강조하는 독연극, 촌극, 만담 등이 상당수 공연되었다. 김정일은 ‘남조선 괴뢰들의 반인민적인 부패상을 폭로 비판한 작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공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남한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제작을 장려했다.⁸⁴⁾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정책은 선전선동에 일차 목적을 두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문예이론

북한에서는 초기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

84) 류동남, 「조선예술」, 1997., 2호.

의적 사실주의는 예술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창작의 형식 면에서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 면에서 사회주의 경향성, 즉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문예이론

북한의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균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북한은 ‘주체문예이론’⁸⁵⁾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인민대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주체사실주의가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북한은 그 인민의 주인이 되는 수령 형상화에 초점을 둔다. 창작의 기본 이념과 창작방법에 관한 모든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에서 찾는 것이며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와 창작 방법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수령의 위대성, 고매한 품격, 전형의 창조가 되는 것이다.

북한 문학예술인들은 김정일의 예술이론서에 입각하여 창작하고 있으며,⁸⁶⁾ 이와 함께 모든 작품에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하여 대중성·오락성이 강화되고 있다.

85)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서 사실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체의 중심에 수령을 두고 이를 예술로 형상화하는 창작 방법이다. 주체문예이론은 인민대중을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유일사상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예관을 잘 드러내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86) 김정일은 주체문예이론의 확산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예술이론서들을 출판했다. 여기에는 〈영화예술론〉(1973), 〈연극예술에 대하여〉(1988), 〈무용예술론〉(1990), 〈음악예술론〉(1991), 〈건축예술론〉(1991), 〈미술론〉(1991), 〈주체문학론〉(1992) 등이 있다.

종자론

북한 문예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종자론⁸⁷⁾’은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 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따르면 종자론은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 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자란 소재, 주제, 사상을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자 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동시에 종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서 이에 의거한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군중예술론

군중예술론은 문예창작이 타고나거나 선천성과 같은 재능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창작의 주체가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여 대중의 참여를 선동하는 이론이다. ‘군중예술론⁸⁸⁾’에 따르면 예술은 개인의 독창성이나 창조성이 아닌 집단에 의해 창조되고 향유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바수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7) 종자는 작품 창작이나 어떤 일에서든 중심이 돼야 할 핵심을 뜻한다.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자론’은 문학예술 부문에서 지도자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가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수령 체계 및 김정일 후계체제와 연계되어 사상 부리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88) 군중예술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1950년대 등장한 문예 정책으로, 근로대중에게 문학예술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문학예술의 대중화는 1982년 김정일이 전국문학동신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학예술 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동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고 강조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서한으로 말미암아 ‘창작의 군중화’라는 당의 방침을 강조하여 모든 군중이 예술을 통해 좀 더 쉽게 사상을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집체작과 집체적 예술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창작제도와 창작단체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에 걸맞게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 또한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집단창작은 김일성이 제안하고 김정일이 주도했다는 ‘3위 1체 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⁸⁹⁾

창작제도

문예정책의 집행기관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였으며, 1998년 헌법 개정으로 ‘내각 문화성’으로 바뀌었다. 당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을 감독하며, 문화성과 같은 행정 조직은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한다. 즉 문학·예술가들은 작품을 자발적으로 창작하기보다는 정권 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며, 예술작품 구상 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및 작업 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 평가에 이르기까지 문화성과 문예총 산하의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창작의 집단화를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은 이 단체에 소속되어야 작가·예술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문예총은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 ‘무용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사진가동맹’ 등 분야별 문학·예술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서 근로인민 대중의 예술활동은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준중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이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각 동맹의 후보명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됨으로써 직업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밖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전업 작가 가운데 약 40%는 문학통신원 출신으

89) 3위 1체 체제란 당, 행정기관, 문학·예술인(또는 그 단체)이 공동으로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직장인으로서 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경우다.

창작단체

문학작품의 창작에는 1967년에 설립되어 소설가 50~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4.15문학창작단’과 1948년 창립된 ‘조선문학창작사’가 있다. 영화에는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조선인민군4.25영화문학창작사’가 있다. 미술창작의 대표적 단체로는 1959년 창립된 ‘만수대창작사’가 있는데, 이 단체에 소속된 미술가는 1천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작품의 판매 등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예술단체로는 ‘국립무용단’, ‘국립민족예술단’이 있으며 〈장고춤〉, 〈갈춤〉, 민족가극 〈춘향전〉 등 민족적 작품을 창작한다. 연극단체로는 ‘국립연극단’과 ‘국립희극극단’이 있으며, 북한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는 ‘만수대예술단’과 ‘피바다가극단’이 있다. 음악공연을 창작하는 단체로는 ‘보천보전자악단’, ‘삼지연악단’, ‘모란봉악단’ 등이 있으며, 최근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청봉악단’이 있다. 이외 각 도에 ‘지방예술단체’가 있다.

2. 문학예술의 실태

(1) 문학

북한에서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 인식된다. 이는 문학이 모든 장르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학을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문학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

롯된 창작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술성보다는 얼마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70년대 초반부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작품들을 장편소설로 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 내고자 하였다. 이는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지주와 자본가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가 모범·공정의 인물들로서 노력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 문학의 소재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 중앙(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 가계를 소재로 하여 한 방향의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생활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러한 변화상이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지만 줄거리는 남녀의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 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 등 4개의 새로운 문학개념이 나타났다. 추모문학은 김일성의 사망을 추모하는 문학으로, 김만영의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여기에 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년대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군릉을 발굴·복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문학개념으로,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인상을 사상 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2000년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잇는 개념으로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을 문학작품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를 미화하기 위해 전우애를 강조하거나 강성대국 건설을 굳이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출하는 작품이 눈에 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인 <총대> <라남의 열풍> <조국찬가>를 비롯하여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리> <백두산총대>, 서정시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등이 대표 작품이다. 또한 선군문학의 본보기 작품으로 김정일 외 김일성, 김정숙 등 소위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창작이 강조되어 2009년 김일성의 업적 등을 형상화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인 <변영의 시대>와 <대박산마루> 등이 출판되었다. 2011년에도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미래>가 출판되었다. 해방 후 김일성이 혁명가 유자녀들을 키워주고 김정숙이 이들을 위해 학원창립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개인의 일상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과 유머 등 간단한 읽을거리는 물론 성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 주민의 일상적 삶을 다룬 작품인 김성옥의 <나의 멋>과 <유치원마당가에서> 등이 있고, <조선예술>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등 유머란에 다양한 유머를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홍석중의 <황진이>는 성애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황진이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추모문학이 주를 이루었고, 2013년부터는 <불의 약속>, <붉은 감>, <12월의 그이> 등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를 합리화하는 작품이 제작되었다. 최근 2014년 5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김정일은 '창작가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명작 창작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한바 있다. 2014년 말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의리의 전역>은 해방 이후 김일성의 업적 칭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음악

북한의 음악은 인민의 계급의식과 공산혁명 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양 및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음악은 서사음악과 성악음악, 사실음악과 민속음악, 단순한 화성음악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발간한 노래집의 절반 정도는 소련 민요와 중국풍의 국민 가요식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단조로워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으며 창법에서는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요로는 당 정책 선전가요, 서정가요, 혁명가요, 조선가요 등이 있으며, 김일성 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문학예술년감」(1998)에 실려 있는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76곡의 악보를 보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음악이 52곡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합주하도록 하는 등 전통음악의 양악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음악은 비정치적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노래도 많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통민요의 발굴에 역점을 둔 작품이 창작되었다. 2003년에 나온 <황해산타령> <새타령> <느리개타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다. 계몽기 가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 아래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음악가동맹 주관으로 계몽기 가요를 발굴·정리했으며, 190여 편의 노래가 수록된 ‘계몽기 가요집’을 2000년에 펴내기도 했다. 북한은 “민족의 수난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가요들”이라며 <고향의 봄> <반월가(반달가)>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일제강점기에 부르던 계몽기 가요

를 편곡하여 보급하고 있다.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이 강조되면서 ‘고난의 행군’을 거쳐 선군정치가 완성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선군장정의 길>과 민요풍의 대중가요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북핵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면서 ‘조국애’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널리 불리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결전의 길> 등과 같은 전시가요가 있다.



아리랑

김정은 시대에는 모란봉악단이 2014년 9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신작음악회를 진행했다. 노래에는 <그날의 15분>,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등과, 민요를 여성 독창과 방창으로 부른 <바다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바다>, <세월이야 가보라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는 김정일의 음악관에서 알 수 있듯 체제결속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3) 영화

북한에서 영화는 다른 어느 예술 장르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조선중앙연감」에서는 「영화연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09년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영화 관련 업무의 효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영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갖추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영화가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부문의 모든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 장르로서 대중에게 호소력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크게 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도 하고 정서교양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지침으로 삼는 「영화예술론」(1973)에 따르면 “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 감정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배우는 단순히 연기자가 아닌 공산주의 사상, 감정, 생활체험 등을 미적·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구체화해서 재현하는 노동계급 예술가로서 연기하도록 요구된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됨으로써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의 전형인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줄거리도 주요 주제가 되었다.

영화는 1960년대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제작되는 등 방대한 작품 제작에 치우쳤다. 그러나 시리즈물이 해외영화제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과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1987년에 제작된 <보증>도 북한 영화의 기존 틀을 깨뜨리고 북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권위주의, 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 차별 등을 표현하였다. 신(申)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이러한 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 확보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김정일의 지시로 50부작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 다시 100부작으로 제작이 확대되었다.

김정일시대 북한 영화는 「선군혁명 문학예술론」에 따른 선군정치를 반영한 작품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군사 관련 영화다. 2003년 대표작으로는 <이어가는 참된 삶>이 있다. 이 영화는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당시 전사한 병사의 자녀와 그 주변 인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 밖에도 <그들은 제대병사였다>와 <여병사의 수기> 등이 2003년에 제작된 대표 영화이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영화작품으로 <그는 대좌였다> <젊은 녀단장> 등 이른바 군인의 혁명정신을 실천하는 모범군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제작되었다. 또한 2006년에 상영된 <한 여학생의 일기>와 같이 경제난 이후 자본주의 요소 유입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완 세태를 반영한 영화 등이 사상교육 강화 차원에서 제작됐다.



한 여학생의 일기



최전연의 작은집

김정은 시기에 북한은 『조선예술』(2014. 6.)을 통해 부르주아 영화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전파자이므로 ‘우리의 영화 영역은 물론, 우리 생활속에 0.001%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정은은 2014년 11월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흥미 위주의 영화를 배격할 것을 당부했는데, <포성없는 전구>와 <최전연의 작은집>등은 이 같은 김정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라 할 수 있다. <포성없는 전구>는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내용이며, <최전연의 작은집>은 개인을 희생하여 동료를 살리는 군의관의 이야기이다. 김정은시대 영화의 주요 화두는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개인인 것이다.

한편 기록영화로는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을 기리는 김정일의 일대기를 다룬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1~3부)의 제1부 <조선을 빛내이리>,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이시며>, 제3부 <온 사회에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려>가 2009년에 제작되었다. 김정일 생애에 관한 기록영화 제작은 <위대한 력사> 제21부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시여> 등 이른바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제작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3대세습의 후계 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지도자에 대한 '대를 잇는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기록영화는 계속 제작됐는데 <영광의 기치 1년> 등은 김정은 집권 1년의 행적을 미화한 2011년 작품이다. 2014년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지켜 북한 사회를 번영시킨 공로자들을 따르자는 내용을 담은 <선군시대 공로자들>(3)이 창작되었다.

이외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신상옥·최은희가 북한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7편과 이훈구의 시나리오로 만든 <봄날의 눈석이> <생의 흔적> <자연에게 물어보라> 등이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이들 영화가 사실주의에 충실한 데다 정치성·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 색채가 풍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4) 연극

북한에서 연극은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 예술분야이지만 1970년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극은 1978년 6월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하여 대규모 무대에서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발전하게 되었다.⁹⁰⁾ <혈분만국회>(1984), <3인1당>(1984), <딸에게서 온 편지>(1987), <경축대회>(1988)은 <성황당>(1978)과 함께 5대 혁명연극으로 지칭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이 작품 모두를 1920년대 항일운동을 하면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3인1당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담론과 함께 군인, 군인가족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군인들의 김정일과 당을 위한 영웅적 투쟁이다. <웃으며 가자>(2000), <계승자들>(2003), <철령>(2003)이 대표작이며 이 작품들은 희극적 특징으로 경희극으로 분류된다. 2010년에는 경희극 <산올림>이 제작되었는데, 북한은 이 작품이 180여 회 공연에 2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말한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연극은 경희극과 같은 희극 공연이다. <사랑>(2012)이 대표적 작품이며 평양민속공원을 짓는 내용으로 '김정일 애국주의 만세'의 구호가 등장한다. 공연의 특징은 화려해진 의상과 탐이 완공될 때 뒤의 영사막을 내림으로써 효과를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 2014년 3월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5대 혁명연극 중 <혈분만국회>가 김정일의 현지도 30년을 기념하며 공연된 바 있다. 북한에서 예술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반복을 통해 북

90) '성황당식' 연극의 특징은 '흐름식 입체무대미술'과 '방창'이다.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은 무대전환 시 암전 없이 무대 움직임으로써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창'이란 무대 밖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 주민의 기억을 동일시하며 지도자의 업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랑



사랑

(5) 텔레비전 드라마

최근 북한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비슷한 것으로는 텔레비전 소설, 텔레비전 연속소설, 텔레비전 연속극, 텔레비전 단막극 등이 있다. 텔레비전 소설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텔레비전 단막극은 텔레비전 드라마로서 텔레비전 소설, 연속극은 1편으로 끝나는 단막극과 각각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 영화도 있다. 텔레비전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로서 일반 예술영화와 달리 등장 인물도 적으며, 상영 시간도 길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텔레비전 영화의 경우도 단편보다는 시리즈 형식이 많다.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심 주제는 지도자 가계에 관한 것과 지도자와 함께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도 생활속에 드러나는 부부간 갈등이나 세대 차이 등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연속극 <엄마를 깨우지 말아>(3부작, 2002년)와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한 <가정>(9부작, 2001년)은 이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극 <따뜻한 우리집>(2부작, 2004년), <수업은 지속된다>(8부작, 2006년), <사랑의 샘>(3부작, 2009년),

〈우리 여성축구팀〉(3부작, 2011년) 등이 지속 제작되고 있다.

김정은시대 텔레비전 연속극에는 〈꿈을 속삭이는 소리〉(2부작, 2012년), 〈자기를 바치라〉(10부작, 2012), 〈징벌〉(16부작, 2012), 〈기다리는 아버지〉(2부작, 2013),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3부작, 2014) 등이 있다.⁹¹⁾



기다리는 아버지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6) 무용

북한의 무용은 율동을 통해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보람을 주는 예술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하고 우리 고유의 춤가락이 있어야 한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지만 무용 형식에서는 신 체미, 율동미, 시감의 메시지보다 힘·규모·조직 과시가 특징인 것이다.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전투성 짙고 선동하는 동작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91) 〈기다리는 아버지〉는 경상유치원의 뛰어난 교육환경으로 피아노 신동이 공쿨에서 1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김정은의 '사회주의 문명국'에 부응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유망한 축구선수가 지방 소학교의 축구교사를 자원하여 차세대 육성에 힘을 쏟고, 마식령 속도로 일반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이다. 김정은을 위해 명예를 포기한 축구선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으로 불리는 현대무용이다.⁹²⁾

김정일 시대인 2011년에는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 <산울림 총각>, <장군님 그리시는 마음>등이 창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김정일이 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초강도 강행군길을 간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7.27 소위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기념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한 승리의 7.27>이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북한에서 무용은 다른 예술처럼 우상화와 체제수호를 위한 수단인 것이다. 2014년 노동신문에서 '민속무용'에 대한 소개글이 올라온바 있는데, 이 역시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의도보다는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무용에서 특이한 것은 1970년대부터 강조된 주체문예의 일환으로 무용 동작을 기록하기 위해 무용표기방법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한글과 같이 자모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용 동작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실용성은 없어 북한에서조차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무용표기법이 완성되었다고 선전하며, 1992년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무용표기법 국제강습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 수만 명이 동원된 화려한 집체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02년부터 2013년의 12년에 걸쳐 9차례 공연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92) <조국의 진달래>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시기 여성 유격대원들의 조국애를, <눈이 내린다> 역시 여성 유격대원들이 눈보라 치는 밤에 눈길을 헤쳐나가며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춤>은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3장 2경에 나오는 방앗간 가무를 독립시켜 발전시킨 작품이며, <사과풍년>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3장에 나오는 무용가운데 한 작품이다. 협동농장원들이 사과풍년을 기뻐하며 김일성의 은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인물화가 강조되는데, 북한에서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사상'이 드러나게 그리는 것이다.

선전화는 포스터의 일종이며 정치선동이 목적이다. 선전화는 정치선동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미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당의 정책 등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형식을 갖는다. 북한은 선동화의 원칙으로 기동성, 호소성, 예술성 등을 든다.

유화에서도 조선화의 기법을 도입하여 응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화가 갖추어야 할 조선화의 기법은 색이 두텁지 않아야 하며, 색이 밝아야 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유화의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조선화를 적용시킨 것이라 하겠다. 유명한 유화작품으로는 <보천보의 화불>,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만풍년>, <전후 40일만에 첫쇠물을 뽑는 강철전사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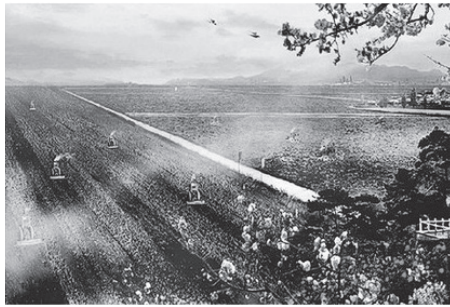
조각에는 환각, 부각, 투각 등이 포함된다. 애국열사릉 및 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은 사실주의풍이면서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다. '만년화'라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모자이크화처럼 그려서 일상 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다. 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 관련 조형물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1971년 건립되었다가 2002년에 새롭게 증축된 <무산지구전투 승리 기념탑>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탑이며, 2004년에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대형 병풍 형식의 작품 <백두산천지의 216 봉우리>는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보석화는 조선화를 바탕으로 그 위해 보석가루나 색을 입힌 돌가루를 뿌리는 것이다. 돌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입체감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조선보석화의 원리가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설명하며, 만수대창작사 산하에 조선보석화창작단을 설립하여 외화벌이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의 역사를 그린 '선군 8경'이 있다. 각각은 <백두산 해돋이>, <다박솔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장자강의 불야성>,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응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이다. 선군 8경의 특징은 풍경화이지만, 순수자연이 아니라 김정일이 시찰한 초소<다박솔 초소>, 김정일의 지도로 종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된 장자강변<장자강의 불야성>, 김정일의 구상으로 대지로 변한 밭<한드레벌의 지평선>을 그리므로 전통풍경화와는 거리가 멀다.



보석화



한드레벌의 지평선

제3절 북한의 언론

북한의 언론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주의 언론은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⁹³⁾ 언론인은 북한에서 당에 충성하는 ‘문필전사’로 호칭되며, 2000년대 후반에는 ‘선군의 붓대’로 표현된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언론은 북한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 매체에 보낸 친필 서한에서 ‘언론 매체가 사상 교양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체제 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93) 『노동신문』 1만호 발간기념사설(2001.12.1)

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대중의 지도자 및 안내자로서의 존재 가치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에 부과된 일차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의 선전·옹호에 있다.

1. 신문

북한은 다양한 매체 가운데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실천을 위해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⁹⁴⁾ 이와 같이 북한의 출판물은 인민대중의 집단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이론」에서는 북한 신문의 선전·선동 기능과 조직자기능, 문화·교양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을 제시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⁹⁵⁾ 이에 따라 북한의 신문은 노동계급의 이익 복무를 비롯해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에 충실해야 하는 계급성 및 당성을 띠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성과 대중성을 고수하며,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진실성과 전투성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다.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

94)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96

95) 배순재·라두림, 『신문이론』, pp.25~26



북한의 신문

북한의 주요 신문으로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비롯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 개의 지방지가 있다. 이 밖에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과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교통신문’ 등 기관지, 공장 및 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북한에서 신문은 일반시사 종합신문과 부문별 신문으로 나뉘기도 한다. 일반시사 종합신문은 정치, 경제, 문화, 정세분야의 시사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신문으로 ‘노동신문’을 의미한다. 부문별 신문에는 사회생활과 인민경제 중심의 신문으로 ‘체육신문’, ‘문학신문’, ‘교육신문’ 등이 있다.⁹⁶⁾

96) 『광명백과사전7: 교육·언어·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이상 북한의 신문들 가운데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등은 일간지다. 기관별로 발행하는 신문들은 격일간이나 주간지로 발행되며 발행 부수도 많지 않다.

북한은 신문 기사의 종류를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다루는 사실, 사상적·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논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공동사설을 쉽게 풀이한 해설, 정치문제들의 의미를 다루는 정론,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장하는 논평, 단평, 정세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 등 총 29가지로 분류한다.⁹⁷⁾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노동신문사가 발행하는 북한의 대표 신문이다.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통합하여 현재의 노동신문으로 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김정일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당 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⁹⁸⁾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어떤 계기가 발생했을 때 정론이나 사설 등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총 6면 내외로 발행되는 조간신문으로 지도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건을 다룰 때에는 9~10면까지 발행하기도 한다. 조직으로는 최고책임자인 ‘책임주필’ 밑에 고문 부주필과 3~7명의 부주필이 있다. 그 아래로 편집국과 당 역사교양부, 당 생활부, 혁명 교양부, 과학문화부, 남조선부, 국제부 등이 있다. 노동신문의 특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이름이나 교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글자보다 눈에 띄도록 고딕체로 크고 진하게 표기하고 있는

97) 『광명백과사전7: 교육·언어·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98) 『조선대백과사전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489

점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기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1면에 실리며 1면에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모두가 실릴 수 있다. 또한 노동신문은 철저한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철자법 등에서 오류가 없으며 배포는 국가기관이나 당원으로 한정된다.

김일성이 1981년 ‘모든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에서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 30분씩 의무적으로 노동신문 신문설을 독보하는 제도’를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소속 단체와 직장은 독보회를 열어 노동신문을 낭독한다. 하급 단위이나 일반 주민은 ‘독보회’에서 들음으로 보도의 내용을 알게 된다.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북한의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로서 1946년 6월 4일 창간되었다. 1945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한 이후 이를 개편하여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1948년 9월부터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 당정책 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⁹⁹⁾ 민주조선사에서 대형 판으로 주 6회 발행되고 있는 민주조선은 내각 기관지 특성상 행정 실무와 관련된 문제 등이 많이 실리고 있으며, 정권 기관에서 채택한 결정 사항이나 정령·법령 등을 상세하게 취급한다. 조직은 책임주필과 부주필이 관리하는 가운데 그 밑에 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교육문화부, 국제부, 재정경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9) 『조선대백과사전10』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97

편집의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1면과 2면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정치지도 동향과 사진, 이들에게 보내온 외국의 축전이나 편지 내용, 우상화 선전 사·수필 등을 게재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내각의 기관지이면서도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지도 통제를 받고 있다. 기사는 주로 조선중앙통신사와 노동신문의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노동신문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신문이다.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후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연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제호도 ‘노동청년’으로 바뀌었다. 1996년 1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 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되면서 이 단체의 기관지인 ‘노동청년’도 명칭이 ‘청년전위’로 바뀌었다.

청년전위는 “청소년들 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설 선전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 키우며 청년 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을 임무를 하고 있다.¹⁰⁰⁾ 즉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며,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여 이의 완수를 위한 일에 헌신하도록 권고하고, 청소년들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교양할 것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청년전위의 기사 내용은 ‘노동신문’에 실린 여러 문제를 청소년과 결부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조직은 책임주필과 부주필 아래 편집국 안에 청년생활부, 학생부, 군

100) 『조선대백과사전2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31

중문화부, 사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방송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하며,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밑에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사업 체계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나 통일전선부에서 방송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산하기구로서 문화성이 각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당과 내각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조직 편제상으로는 내각에 속해 있으나 위원장은 노동당에서 임명하고,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체계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앙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이며 직속으로 방송예술단과 방송학원을 둔다. 인력은 3천여명이며 10여 개의 직속 국처들이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는 지방방송을 관장하는 시·도 방송위원회와 하부조직으로 제3방송(유선방송)을 담당하는 군·리 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가 설치되어 있다.

(1)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에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등이 있고 대외 방송으로는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를 서비스한다. 북한을 대표하는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 방송으로,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조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 방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제 치하에 있던 평양방송국을 모체로 출발하여 1967년 12월 제1중앙방송(대내)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됐다가 1972년 11월 제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 제2중앙방송은 평양방송으로 각각 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용)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 뉴스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의 보도, 사설, 논평, 노선기사 등을 대부분 인용 보도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한 '평양FM 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서 북한의 혁명가곡을 비롯하여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등 클래식음악을 방송하고 있다.

북한에는 '제3방송'으로 불리는 독특한 유선방송이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우리의 케이블TV와 달리 전 가구를 유선방송망으로 연결,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어서 일종의 사내방송이나 대학방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텔레비전 방송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하여 ‘교육문화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개성텔레비죤’ 등이 있다.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주체사상과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1963년 3월 ‘평양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70년 4월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1974년 4월 15일 김일성 62회 생일을 계기로 컬러 방송을 시작했으며, 1999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54주년을 맞아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조선중앙텔레비죤의 편성지침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의 현지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기존의 방송진행 시작 시간은 평일(월~토) 5시, 일요일은 9시부터였는데 2013년 8월부터 평일 오후 3시,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9시에 방송이 시작된다. 현재 주요 프로그램은 김정은 선전프로그램이며 영화방송 시간이 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를 집중 방송한 바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저녁 8시 뉴스시간에 30대 안팎의 젊은 앵커들이 등장하여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도 한다.¹⁰¹⁾

‘개성텔레비죤’은 개성에 위치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1971년 4월 15일 방송을 시작하여 1991년 10월부터는 컬러 방송을 시작한 대남 전용 방송이다. ‘교육문화텔레비죤’은 1997년 2월 16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맞아 신설한 텔레비전 방송으로 평양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한 대내 방송이다.

10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료.

1983년 12월 개국한 '만수대텔레비죤'은 평양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및 명절에 한해 예술 공연, 영화, 스포츠 등을 주로 방송하고 있어 평양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필요에 따른 주민의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내용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드라마를 방송 황금시간대(오후 8:30~9:30)에 편성하는 한편 작품 소재와 내용도 당 및 수령과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 이외 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갈등 해결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2월 9일 부터 기존의 표준화질(SD) 방송을 중단하고 고화질(HD) 방송으로 완전 전환했다. 2001년부터 태국 통신위성 타이콤5를 통해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을 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송출하고 있다.



VII

북한의 사회와 주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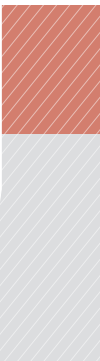
제1절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

제2절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제3절 북한의 종교

제4절 북한 주민의 일탈과 사회통제

제5절 북한의 인권



Key Point

01

북한의 계층구조는 핵심계층, 동요계층(기본계층), 적대계층(복잡계층) 등 3계층을 기반으로 한다. 북한은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불평등 구조를 하고 있다. 성별 불평등도 구조화되어 있는 가운데 북한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02

북한 주민은 당국이 지향하는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야 했다. 북한 주민은 하루 생활과 생애 과정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으며, 일생을 노동당 외곽 단체에 의무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국가배급에 의존해 오던 의식주는 자체 해결해야 하며, 명절과 일요일에도 여가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03

북한은 종교를 아편 또는 미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의 종교 단체는 노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대외 선전도구 또는 외부지원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04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생계형 범죄, 권력형 범죄, 공공질서 위반 행위 등 일탈과 범죄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졌다. 북한 당국은 집단주의 학습과 조직생활로 자발적 동조를 유도하는 한편 공포정치를 통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05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억압하고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 대해 우려를 지속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주민이 인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제1절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

사회구조란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질서를 의미한다. 사회구성원간 상호작용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할 때 그 상호 작용은 유형화되며, 예측 가능한 질서를 이루게 된다. 사회질서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사회계층이란 물질적 또는 상징적 보상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의미한다. 계층의 개념으로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계층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정의는 없다. 다만 막스 베버의 계층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차원(소득과 부 등)을 계급, 정치적 차원(영향력 등)을 권력, 사회적 차원(교육과 직업 등)을 지위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1. 북한의 사회계층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복구 사업을 마치고 사회주의 제도 개혁을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 주민을 출신 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 조사 사업은 북한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성분 조사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내용은 <표 7-1>에 요약되어 있다.

표 7-1. 북한 주민 성분 조사 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시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 재등록 사업	1966.4~1967.3	100만 적대위의 사상 결속을 위한 주민 성분 분류 (직계 3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 사업	1967.4~1970.6	주민 재등록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 요해 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 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 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갱신하면서 불순자 색출과 통제 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 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 자료로 체계화
북송 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 교포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 자료로 체계화
주민증 갱신 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 문건 정비
주민 재등록 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 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 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공민증 교체 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332.

북한이 계급 정책을 공식 수립한 것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구조의 기본틀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공민증

갱신사업'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성분 조사를 지속 실시하였다.

북한의 차별화한 성분 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아래 실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자세히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부류를 조정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 상당수가 불법 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 행위에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다.¹⁰²⁾

북한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듬해인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피상적 관찰일 뿐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 격리 현상,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할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여성의 사회 참여는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이라는 이념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주체적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라는 정치·경제적 목적에 동원된 결과일 뿐이다. 북한 여성은 광복과 동시에 '민주여성동맹'이 창립되고 나서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다양한 정치사상 운동에 동원되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노동력 수요·공급 불일치에 대한 완충 작용의 '산업예비군'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여성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

102)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p.330~331.

당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자 여성은 직장에서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그리고 경제 사정이 점차 악화되면서 개인 부업 성격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운영되고, 여기에 여성 '유휴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밥 공장'이나 '반찬 공장' 또는 탁아소와 유아원 증설은 여성해방이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노동(가사노동)을 담당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여성은 공식으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활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혁명가의 아내, 혁명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며 상당한 경우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여성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지위도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하늘처럼 모시던' 남편들도 집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엄격한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부분적인 변화를 근거로 북한 여성의 지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차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여성 정책이 여성을 참다운 인격체로서 사회 참여를 장려하였다기보다는 노동력 착취와 체제 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는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의 특징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계층이동이라고 한다. 수직이동은 계층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 수평이동은 계층 지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 간 또는 직업 간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북한 주민의 계층이동은 주로 수평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수평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층 지위가 의미 있게 변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계층이동은 성분 정책에 의하여 인위로 통제되며 거주 지역과 직업은 주로 성분 정책에 의하여 배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사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계층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복잡 계층 주민이 능력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상층 이동을 경험하는 경우다. 임대농과 고용농의 분리, '돈주'(錢主)의 등장도 북한에서 계층이동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이는 북한의 계층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계층 구분에서 경제적 지위 또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지위 변화로 계층이동이 활발하다고 결론을 맺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정치 배경, 개인의 연줄, 기술 수준, 물질적 신분 상승 욕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 요인은 기존의 성분 정책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¹⁰³⁾

북한의 계층구조는 인위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성분과 '당성(黨性)'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객관화된 요소로 측정되지만 북

103)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정영철 등,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pp.162~229.

한국의 경우 이러한 요소의 불평등은 인위적인 성분 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상위계층일수록 고등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지위가 높고, 권력기관 직업을 배정받으며 각종 분배에서도 특혜를 받게 된다.

둘째, 귀속 지위(ascribed status)에 근거한 폐쇄 체제(closed system)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핵심 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핵심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 지위가 이어진다. 반면에 출신성분이 나쁘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위계층으로의 진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기본 계층이 핵심 계층으로, 또 복잡 계층이 기본 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당성’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북한의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 형성·유지 및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토지 개혁으로 지주 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토지를 소작농, 빈농, 고용농 등에게 무상 분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화(집단화)를 전면 단행하였다. 이후 의식주 관련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 기관의 통제 아래 분배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당국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직된 성분 정책은 북한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권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계층구조가 이념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층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한 국군 포로는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구조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표와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흔히 사회 지배층은 그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제도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를 확산시켜 나간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하루 생활과 여가 등 일상생활이 집단주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의 집단주의화는 사회통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

1. 북한 주민의 가치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수립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3대권력세습'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통치 논리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한편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북한이 발전시켜 온 가치관의 논리는 크게 사회주의 혁명(건설), 사회안정, 위기 극복으로 나눌 수 있다(〈표 7-2〉 참조). 사회주의 혁명(건설) 논리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공산주의(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봉건주의는 ‘썩어빠진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 착취 사회로서 혁명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로서 집단의 노력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이상사회다.

표 7-2. 북한의 이념 체계와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주요 내용
사회주의 건설 (혁명) 논리	자본주의·봉건주의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취 사회, ‘썩어빠진’ 사회, 불평등 사회 ● 혁명의 대상
	공산주의(사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계급 사회, 평등사회, 집단주의
안정 논리	수령(김일성) 이상화	주체사상 ‘창시’ 및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 수령론 ● 사회정치적 생명론 ● 사회주의 대가정: 수령·당·인민의 일체감
	김정일 이상화	유교 덕목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덕정치/광복정치(‘통큰 정치’) ● 충성과 효성
위기극복 논리	북한 사회주의의 정당성	북한식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족제일주의 ● 과학적 사회주의
	김정은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왕가: ‘태양절’, ‘대를 이은 충성’ ● 절대 충성 요구: 수령결사옹위정신 ● 21세기의 태양, 선군혁명의 계승자

북한에서는 1960년대 말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주로 사회안정 논리를 전파해 나갔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북한 주민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한다. 수령(아버지)-당(어머니)-인민(자식)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의 부여자라며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김일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김일성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 결정되면서 김정일 세습 및 이상화 논리도 개발되었다. 유교 논리가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 핵심 요소인 충효사상과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을 동원하였다. 북한 주민은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야 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발전이 정체되고 급기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등 새로운 논리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1세기 태양'으로, 결사옹위 정신과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여 목숨으로 보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켜 왔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김일성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야 했다. 이들 가치관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체제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적 가치관(ideal valu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외형상 당국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반면 내면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현실적 가치관을 발달시켜 왔다. 결국 북한 주민의 행동 양식은 이상적 가치관과 현실적 가치관 간 타협의 산물이며, 북한 주민들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특징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사경제 활동이 발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주민들 사이에는 돈과 금전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나 가족주의 성향도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와 정보가 유입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1) 평등주의와 차별 의식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토지, 자본, 공장 등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하고 이념상으로 평등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는 평등 이념은 사회주의 혁명 및 권력의 1인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 의식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 사회가 불평등 사회이며 그 불평등 구조는 인위적 성분 정책 시행 결과라는 점에서 불평등 사회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당 간부의 부정부패, 성분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불평등 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능력보다는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 및 거주지까지 영향을 받으며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 계층과 일반 주민 간에는 의식주, 교육, 경제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사회적 신분 상승 등 조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회와 삶의 질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2) 집단주의와 사회적 나태 현상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생활화 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생활의 기초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다. 헌법에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집단주의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성보다 동지애 및 의리를 중시한다.

집단주의는 공동 노력과 공동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일상에서 '사회적 나태' 현상을 보인다. 사회적 나태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가 작아지는 현상이다. 북한 주민이 겉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취도가 낮으며, 이러한 사회적 나태 현상이 북한 경제의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3) 획일주의와 선호위장

북한은 당의 혁명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리·이익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북한 주민 모두가 주체사상을 생활신조로 여기고 있다. 집단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통제, 조직생활 통제 등 다양한 통제수단을 동원한다.

집단주의와 사회통제의 결과는 실생활에서의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으로 나타난다. 선호위장이란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 간의 괴리 현상으로, 공장·기업소에서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개별 영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적 가치관이다. 북한 사회가 표면으로는 단결되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 내면이 취약한 것은 선호위장의 결과다.

(4) 수령중심주의와 집단사고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써 권력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수령과 함께하도록 요구된다. 북한 주민은 '수령의 교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슴에 단 배지('초상휘장')에서부터 가정·직장·사회 등 일상생활 구석 구석에서 '수령과 함께' 생활한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야 하며, 집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모든 교과서에는 단원별로 '수령의 교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김일성 부자를

송배하는 정치사상 학습을 진행한다.

수령중심주의는 결과적으로 '집단사고(groupthink)'를 가져왔다. 집단사고란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본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나 대안은 무시하고 내리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북한 사회의 경직성은 수령과 체제에 대한 충실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논란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2. 하루 생활과 생애 과정

(1) 하루 생활



무궐도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평양 시민들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는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로 볼 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대체로 오전 6시를 전후하여 기상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일반 주민은 대부분 잡곡밥이나 강냉이(옥수수)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 반찬이다. 계란이나 소시지를 먹을 수 있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북한 주민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무궐도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을 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 사항 전달, 강연회 등 당 정치 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노동 신문을 보면서 토론하는 등 30분간 진행한다.

정규 노동작업은 8시에서 낮 12시까지 4시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등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낮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보통 공장·기업소·농장 등 작업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직장이 인접한 동료 집에서 먹는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먹기도 한다. 주로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먹으며, 여유가 있는 가정은 김밥에 감자볶음이나 소시지를 먹기도 한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밥, 빵, 짜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물·돼지풀·채소 등을 채취하고, 집에 도착하면 집짐승(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며, 오후 작업을 위해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개인 경작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침시간을 가지며, 오후 일과는 2시에 시작하여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장원의 경우 일의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총화 시간이며 일주일에 1회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비판’과 동료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하는데 비판 기준으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 노동을 하거나 학습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평일에 개인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가동률이 저조하다 보니 노동자 상당수가 잡담을 하는 등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일과 후 잔업도 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 정기 개최가 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보낸다.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개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을 수선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성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땀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2) 생애 과정

유아기

아기가 출생하면 세대주는 주거지 분주소(파출소)에 가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받아와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인민 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등록을 하며, 다시 분주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구역)·군 안전부에서 확인을 받아 직장 식량 취급자에게 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민족 등을 기록한다. 아이는 생후 3개월이 지나면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일반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높다. 나이가 4세에 이르면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며, 5세가 되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높은 반에 편입된다.

아동기·청소년기

나이가 6세가 되면 소학교에 입학해서 5년간 교육을 받으며, 11세가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높은반(5세)에서부터 소학교(5년)와 초급중학교(3년)를 거쳐 고급중학교(3년) 교육과정이 북한에서 말하는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으로 그 기간은 모두 12년이다. 7세가 되면 소년단에 편입되며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편입되어 집단생활을 하면서 정치사상학습을 받는다.

성년기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대학진학, 군입대, 직장배치 등 3개의 진로가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대부분 군입대, 여성은 주로 직장 배치를 받는다.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은 중학교 졸업생의 약 13%다. 직장생활 또는 군대생활 중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 거의 상관없이 배치된다.

북한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은 연애 위주로 하지만 농촌 지역에는 중매 전통도 남아 있다. 배우자를 찾을 때 혼인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그 기반도 출신성분보다 사랑과 경제적 능력으로 변하고 있다. 혼수는 대체로 여성가 장만한다. 예식장은 따로 없으며 공공회관이나 신랑의 집에서 식을 올린다. 혼인식이 끝나면 공원이거나 김일성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린다. 신혼여행은 없으며 신랑의 부모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인 휴가는 1주일이지만 보통 사흘 쉬고 출근한다.

노년기

1960년대 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이란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갑이 사라졌으나 1970년대 부활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혼인과 회갑 등의 행사를 간소하게 치를 것을 권장한다. 북한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없으면 공원 등지에서 소일하거나 손자를 돌보기도 한다. 노년층은 배급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점차 회복되어 최근에는 약 69세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 우리처럼 여성의 수

명이 남성보다 약 7년 길다. 장례는 보통 3일장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고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1~2일장이 보편화되었다. 장례를 치를 때 남자는 검은 완장을 차고 여성은 흰 리본을 꽂는다. 1970년대는 화장이 강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장이 일반화되었다.

3. 조직생활

표 7-3. 북한의 주요 사회조직

단체명	가입 대상	조직 규모	구성 방법 및 활동	창립일
소년단	소학교 (2학년 이상)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학교 2학년에 순차적으로 가입 조직생활, 토끼 기르기 등 과업 수행 	1946.6.6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청년동맹)	14~30세 학생, 군인, 사회인	약 500만 명	당원을 제외한 해당연령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교양, 당 후비대 사업, 경제건설, 통일 및 대남 정책 지원 등 	1946.1.17
민주여성동맹 (여맹)	여성: 31~60세	약 2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11.18
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 (여: 60세)	약 13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1946.1.31.
직업총동맹 (직총)	노동자,사무원: 31~65세 (여: 60세)	약 16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9개의 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 습득, 자력경쟁 지도 	1945.11.30

출처: 통일원, 『1995 북한개요』, 1995, p.8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53 등

북한 사회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집단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다. 북한 주민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북한의 어린이는 출생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탁아소 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익히게 되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당

이나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 한다. 직업이 없는 전업 주부인 경우 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1) 소년단과 청년동맹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7세가 되는 소학교 2학년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북한의 소학교 학생은 2학년이 되면 예외 없이 소년단에 입단하여 활동하며 14세가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활동을 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한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단 입단식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김정일 출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출생일), 소년단 창립기념일인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든 학생이 입단할 때까지 친구 간에도 소년단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구분되는데 먼저 입단한 학생은 자랑스러워하는 반면에 입단을 하지 못한 학생은 친구를 시샘하여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소학교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먼저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먼저 입단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한다.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의 경우 입단식 자체도 거창하게 진행한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 맹세를 읽게 한 뒤 붉은 벵타이와 휘장을 달아 주는 행사를 치른다. 입단식에는 시(구역)·군의 간부들을 포함하여 항일빨치산 투쟁이나 다른 일로 훈장을 받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입단하는 아이에게 직접 붉은 벵타이를 매어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 준다. 입단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사회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앞으로는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충실히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학교소년단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는 등 조직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각 학교에는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조직담당 위원장과 사상담당 위원장 등 학생 간부가 있다. 학교소년단위원회는 학급별로 특정 과업 수행을 지시하며, 학생들은 조를 편성해 이를 관철해야 한다.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고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이 과업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또한 소년단은 토요일에 분열 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한 뒤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 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즉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도 소년단 입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 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시(구역)·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시(구역)·군 청년동맹 심의에서 합격해야 최종으로 소년단의 표지인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 가입식을 거쳐 청년동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허리에 차고 다닌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원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 시(구역)·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 등 조직생활을 책

임지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조직생활 평정서¹⁰⁴⁾에 최종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위해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2) 노동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사실상 의무가입 조직이라면 노동당은 선택적 가입 조직이다. 노동당은 국가보다 상위 조직으로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려고 하지만 소수의 선택된 주민만이 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당 입당은 1년 동안의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한다. 후보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당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해야 하며, 당세포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자격 유무를 결정하면 시·군 당 위원회에서 비준해 준다. 예외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화선입당(火線入黨),¹⁰⁵⁾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수행의 최소 단위다. 한 직장에 당원이 5명 미만이면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세포에 속하게 하거나 두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

104) 평정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성분과 조직생활 참여 정도, 평소 행실 등을 기록해 놓은 문건이다. 유치원 높은반에서 작성되기 시작하며 조직을 옮길 때마다 따라 간다.

105) 화선입당은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에 들어가는 일종의 특권이다. 주로 전쟁이나 건설 현장 또는 국제대회에서 공헌이 큰 사람에게 화선입당 특권이 부여된다.

포를 만들기도 한다.

노동당 가입자는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입당하지 못하면 30세까지 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지속한다. 30세가 되어도 입당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총동맹(직총), 농민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각각 소속을 옮기게 된다. 직업총동맹 산하에 세부 직업별로 직업동맹(직맹)이 구성되어 있다.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않는 전업 주부가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민주여성동맹(여맹)으로 소속을 옮긴다.

직맹,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이란 크게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 보통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반 및 낮은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 정책,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혁명노작’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습과정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생활총화는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으로, 대체로 1주일에 한 번(주총화) 조직별로 개최한다. 생활총화를 할 때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비롯하여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근거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한다.

(3) 인민반

북한 주민은 소학교에서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인이나 전업 주부 등 직장이 없는 주민은 크게 노동당, 여성동맹, 인민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인민반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 수는 많지 않다. 직장이 없는 노인이나 전업 주부 가운데에는 당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조직생활을 하며, 전업 주부의 경우는 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그럼에도 인민반 생활을 등한시할 수도 없다.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전업 주부)'들은 여맹 활동과 별도로 인민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대체로 20~40가구로 구성된다. 도시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인민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민반을 구성하는 가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당초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인민반 활동은 주로 노인이나 전업 주부인 가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인민반에서는 인민반장의 지도 아래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생활총화를 진행하는 등 조직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인민반별로 배정된 과업을 수행한다. 인민반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지시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민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과업수행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증가하였다. 특히 돈이 경제력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과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조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통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예를 들

면 여행이나 이사를 위해서는 당의 통제 뿐만 아니라 인민반장부터 직장에 이르기 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활동 평점을 잘 받아야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직장에서 승진도 마찬가지다. 조직생활에 불성실할 경우 '자유분자'로 낙인 찍히는 등 주민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으며 생활총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조직생활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의식주 생활

(1) 식생활

북한 주민의 식량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즉 배급 및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다. 배급에 의한 방법은 전통적·제도적 식량 조달 방법이다. 북한에서는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식량공급 급수를 책정하며, 이 급수에 따라 식량을 차등공급하여 왔다. 식량공급 급수는 모두 9급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에 따른 1일 공급 기준은 <표 7-4>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이는 영아에게 주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다. 유해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배급할 경우에도 등급별 정량이 지켜지지 않는다.

연로보장을 받는 노부모와 직장에 배치되기 전의 자녀, 세대주의 부양을 받는 전업 주부(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 준다. 협동농장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로 배급받는다. 각 농장원이 받는 결산분배량은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작업반에서 원래 계획의 80%를 달성하면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는다. 따라서 분배량은 작업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작업반에서 같은 양의 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표 7-4.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 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 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 보장자, 전업 주부(가주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1~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미만의 유아

물론 식량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애국미 명목으로 10%를 감축하고 다시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12%를 감축하는 등 식량배급을 지속 줄여왔다. 배급도 한달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두달씩 건너뛰기도 하였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1995년 말에 이르러서는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 배급을 중단하였다.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체계가 평양 시민과 군부대 등 특수계층을 제외하고 와해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농장에서 식량을 훔치는 사람도 늘어났다. 텃밭과 폐기밭 등 사경작지를 가꾸거나 돼지나 염소를 키우는 농민도 증가했다. 도시 주민들도 텃밭을 갖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식량을 구입하는 곳은 주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났으며, 아직까지도 생필품 대부분은 장마당에서 구입한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2009년 11월 말 실시된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보유 화폐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하

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화폐개혁과 함께 금지된 장마당은 다시 허용되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 현상을 보이면서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하반기 현재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2,000~4,000원으로 장마당 쌀값은 kg당 6천원을 넘고 있는 바, 2개월 월급을 모아야 쌀 1kg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의생활

배급제도는 의생활 분야에도 오래 동안 적용되어 왔다.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인민반에서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의복 또한 식량과 마찬가지로 당국에서 배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중앙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로 나누는 등 의복을 급수에 따라 차별 배급해 왔다. 중앙공급 대상자는 고급모직물을 배급 받는다. 특히 예술가와 기자·교원 등 특수집단과 당 및 내각의 간부들에게 좋은 옷감과 의복을 공급한다. 그러나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질이 나쁜 옷감을 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 판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한다.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공급은 사실상 식량 배급 보다 먼저 중단되었다. 의복의 개인구입에 익숙한 주민들은 의복을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입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학생복은 아직도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2년에 한 벌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최근에는 국정가격으로 공급한다. 국정가격은 장마당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해 학생복 구입도 장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명분으로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을 입고 여성은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블라우스,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인과 해외 교포의 왕래가 많은 평양, 원산, 청진 등의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옷을 많이 입었다. 1980년대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 기사들이 게재되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영역이 머리 모양과 화장법에까지 확대되었다.



파마머리를 한 북한 여성 아나운서

북한 주민의 복장이 변화된 계기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 주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외국인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새를 흉내 내는 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는 당국이 ‘민족전통’을 강조하자 매체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선전하는 등 전통 복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젊은 여성들의 옷차림에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패션쇼(‘조선옷 품평회’)는 대담하고 서구화된 옷차림을 보여 주고 있는 바 짧은 치마와 단정한 정장스타일은 대표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가방 등 액세서리도 서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 여성의 옷차림은 다소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생활고로 말미암아 옷을 여러벌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 주민들은 점퍼나 스웨터·인민복·작업복 차림이며, 주로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젊은 여성의 경우 머리를 손질하고 가볍게 화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어 1호로 분류되는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협동농장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또는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문화주택을 배정받는다. 2호인 학교교원이나 일반노동자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아파트를 배정받는다. 3호인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 단위 부부장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는다. 4호인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베란다 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리고 특호로 분류되는 중앙당 부부장, 내각 부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을 배정받는다. 주택 배정은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경우 주택을 다시 배정받기도 한다.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체육인에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

골동에 위치한 원통형 아파트와 함께 개인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반 주민의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¹⁰⁶⁾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혼부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2세대가 더불어 사는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택 문제의 하나는 취약성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색도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 취약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 문화주택

북한 당국은 주택의 개인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정식으로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동거인으로 등록한 뒤 세대주를 변경하는 편법을 써서 주택을 거래하고 있다.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는 원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은 비록 주택의 소유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장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을 이른다. 6기는 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사진기 또는 녹음기 등이다. 가구는 개인별로 장만해야 한다. 권력층의 경우 5장 6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제 가구와 가전제품을 소유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유명 전기밥솥이 부

106) 입사증이란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다. 북한에서 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배정하기 때문에 새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입사증이 있어야 한다.

유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경우 외제품은 커녕 5장 6기를 다 갖추기도 힘들다. 신부가 시집갈 때 2장 3기만 갖추도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다.

5. 여가와 명절

(1) 여가 활동

북한 주민은 생산활동은 물론 생산 외 조직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일찍 취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가를 생산과 취침 이외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여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 에 나가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규 노동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제도로 보장된 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북한 주민도 기회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긴다. 북한 주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여행은 여전히 통제된다. 시(구역)의 경계를 벗어날 때는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개인 용무의 허가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여행증이 쉽게 발급되고 불법적 여행도 묵인되는 등 사적 여행이 다소 빈번해졌다. 여행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유통도 원활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여행은 대부분 장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연극 감상은 북한 주민이 그동안 즐겨온 여가활동이다. 인민배우인 오미란, 홍영희 등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생활비’)에 방 2칸짜리 주택을 배정받는다. 화장품값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별도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평양

을 중심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팬레터(‘공연축하 성과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단체로 극장에서 관람했지만 최근 단체 관람의 빈도는 많이 떨어졌다.

북한 주민이 가장 빈번하게 즐기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정전에 대비하여 축전지를 준비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한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음주가무는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온 여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친구의 결혼식 등 행사가 있을 때 노래를 많이 부른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등 정치성 짙은 노래, <사랑 사랑 내 사랑> 등 연속극 주제가, <휘파람> 등 서정가요가 주로 불린다. 비공식 모임에서는 <그때 그 사람> <사랑의 미로> 등 주로 남한 노래의 인기가 높다. 2000년대 들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두만강> <찹레꽃> <홍도야 울지마라> 등 ‘홀려간 노래’가 ‘계몽기 가요’라는 명목으로 해금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다. 평양에는 노래방(‘화면반주 음악실’)도 있다.

북한 주민도 낚시 등 놀이와 축구나 배구 등 스포츠를 즐긴다. 낚시는 북한 주민의 주요 취미활동 가운데 하나로써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안주감이다. 배구는 직장에서 일이 없을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스포츠다. 강이나 해안에서 수영을 하기도 한다. 평양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외국인과 특권층만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으로는 독서와 주패 놀이가 있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주민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된 오락이라고 하기 어렵다.



대동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

(2) 명절과 기념일

북한 「조선말대사전」(1992)에 따르면 북한의 명절은 크게 국가적 명절, 경축기념일, 국제기념일, 그리고 민속명절로 구성된다. 국가적 명절은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우리 인민의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고 있다. 경축기념일은 사회 경제 부문의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6·6절(소년단 설립일), 교육절, 광부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기념일은 “국제로동계급과 세계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로서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월 1일)과 국제부녀절(3월 8일)이 여기에 속한다. 민속명절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즐기는 설, 정월대보름, 추석 등을 일컫는다.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

북한은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을 최고의 명절로 여긴다. 김일성 생일의 경우 1962년 50회 생일을 기하여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고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년 동안 공휴일로 지키지 않다가 56회 생일이 되는 1968년에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였으며 60회 생일이 되는 1972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김일성 사후인 1997년에 이날을 ‘태양절’로 정하고 김일성의 출생 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생일의 경우는 1975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에 ‘국가적 명절’, 그리고 1995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다른 명절과 달리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등 행사가 다채롭고, 특별 배급품을 나눠준다. 언론 매체에서는 이날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매일 전하면서 온 세계가 함께 이날을 축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백두산에서 눈보라가 불다가 아침 해가 솟을 무렵 갑자기 멎었고 밀립도 잠잠해져서 장쾌한 해돋이가 펼쳐졌다”는 등

표 7-5. 북한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

날짜	명칭
1.1	양력설(3일 휴무)
1.1(음력)	음력설(3일 휴무)
2.16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일 휴무)
1.15(음력)	정월대보름
3.8	국제부녀절
4.5	청명절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2일 휴무)
4.25	인민군 창건일
5.1	근로자의날(국제근로자절, 5·1절)
6.6	소년단 창립절
6.19	김정일 당사업 개시일
7.27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8.15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9.9	정권수립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8.15(음력)	추석(한가위)
8.25	선군절
10.10	노동당 설립일(조선노동당창건일, 2일 휴무)
11.16	어머니날
12.27	헌법절

출처: 통일부, 「2015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선군절, 그리고 2015년에는 김정일 당사업 개시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념일로는 1909년 미국 시카고 여성들의 시위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제부녀절(3월 8일)과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념하여 제정한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1절)이 있다.

민속명절

민속명절은 양력설과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절, 한가위(추석) 등 전통으로 지켜 오는 명절이다. 민속명절은 1967년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가 하달되면서 철폐되고 양력 설 하나만 인정했다. 그러나 1972년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를 허용하는 등 전통 명절을 일부분 부활하기 시작해 1989년에 음력 설, 한식, 추석을 민속명절로 지정했다. 2003년에 음력 정월 초하루를 앞두고 김정

각종 신비한 자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특별배급품으로 설탕, 식용유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특별배급품이 없는 ‘껍데기 명절’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한다.

이 밖에 국가적 명절로는 인민군창건일,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정권수립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헌법절, 소년단 설립일(6·6절)이 있다. 2012년부터 어머니날, 2013년부터

일이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지시하였으며, 정월대보름도 하루 휴식하고 단오와 추석을 예전의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2012년에는 청명절(4월 5일)도 명절로 지정하였다.

민속명절이 되면 북한 전역에서 옷놀이와 농악무, 민족음식 품평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씨름경기를 개최하는 등 명절 분위기를 돋우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민속명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민속명절을 진정한 명절로 생각한 적이 없고 특별한 놀이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설날이 되면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나누며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올리고 난 뒤 차례를 지낸다.

제3절 북한의 종교

북한은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를 신격화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으며,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종교단체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억압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가장 혹독한 종교탄압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국제가톨릭사목원조기구’도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1. 종교관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견해는 마르크스의 종교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피착취 계급의 혁명 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다 때 이는 노동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혁명의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종교를 봉건시대의 낡은 잔재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¹⁰⁷⁾

1985년 출판된 「철학사전」에 따르면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김일성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든 현실이 인간의 의식에 환상처럼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체가 허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는 비교적 오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착취사회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종교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종교 관련 헌법 조문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2년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된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종교정책에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¹⁰⁸⁾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북인도적 지원 확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107) 북한, 『김일성저작집 5 (1949.1-1950.6)』 (평양: 로동당출판사, 1980).

108) 통일교육원,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 교류 전망』 (서울: 통일교육원, 2006), pp.22-24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해외 종교단체들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표 7-6. 북한 헌법상 종교 관련 조문의 변천

개정 및 개정연도	종교 관련 조문
1948년 헌법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진다.
1972년 헌법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1992년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1998년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2009년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북한 사회에서 종교는 종교 본연의 역할보다는 대외 선전용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부분적이거나 종교 시설이 들어서고, 간혹 종교 의식이 거행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정책이 다소나마 변화하게 된 것은 남북한 간의 종교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종교 실태

북한의 종교는 당국의 탄압으로 인해 1955년에 이르면 거의 사라졌거나 지하화 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면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였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그리고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이 활동을 재개하였다. 오늘날 북한에는 위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조선카톨릭협회(조선천주교인협회에서 출발)가 있으며 이를 아우르는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일부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들을 외부와 교류하는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1988년에는 평양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가 건립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칠골교회가 건립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종교단체를 평양에 초청하여 남북한 동시미사, 공동예배, 동시법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북한의 종교인 105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 종교인들과 ‘3·1 민족대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표 7-7. 북한의 종교 현황

구분	종교시설수(개)			신도수(명)			교직자수(명)		
	해방시기	2001	2008	해방시기	2001	2008	해방시기	2001	2008
기독교	2천	2, (가정교회 520)	3, (가정교회 520)	20만	1만 2천	1만 3천	908	300 (목사 20)	300 (목사 30)
불교	518	60	65	37만5천	1만	1만	732	200	300
천주교	교구 4개	1(공소2)	1성당, 2공 (3지구, 500 가정처소)	5만 7천	3천	4천	262	0	0
천도교	99	52교당 800기도처	52교당 801기도처	169만	1만 4천	1만 5천	0	250	250
러시아 정교	0	0	1	0	0	5	0	0	5
계	2617개 4교구	115개	122개	2백 32만 2천명 (24.3%)	3만 9천명 (0.2%)	4만 2천명 (0.25%)	1902명	750명	855명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2009 북한 종교자유 백서」, p. 45. 수정·인용

개신교

현재 북한의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1946년 발족)에 속해 있다. 이 연맹은 조선불교도연맹(1945년 발족), 조선카톨릭협회(1988년 발족),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1946년 발족)와 더불어 조선종교인협의회(1986년 발족)를 구성하고 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연맹은 사실상 노동당의 하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종교단체로 출발했으며, 활동의 주된 목적은 개신교 신도들의 단합과 연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교회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연맹은 남한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 그리고 해외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 확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이들 교회 및 단체들의 지원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2,850여 개에 달했으나, 현재 북한의 공식교회는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2개뿐이다. 봉수교회는 1988년 9월에 평양시 만경대구역 건국동(옛 봉수동) 보통강변에 세워졌는데, 평소 출석인원은 300여 명이며 그 중 60%가 여성신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이 1989년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어머니 강반석의 신앙을 기념하여 칠골동의 옛 하리교회터에 세운 것인데, 예배 수용규모는 150석으로, 출석 교인 수는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3년 11월에는 남측 교회의 지원으로 남북이 합의하여 민간교회인 평양제일교회 건립을 추진, 2005년에 200평 규모의 예배처소를 준공했다.

불교

북한의 불교는 조계종을 표방하고 있으며, 승려는 머리를 기르고 절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처승에 해당한다. 북한의 승려 수는 3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60개 사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불교 관련 행사를 총괄하는 기구는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불교도연맹인데, 1945년 12월 26일에 창립된 '북조선불교도연맹'을 모체로 하고 있다. 60여 개의 사찰들은 승려가 관리하는 조선불교도연맹 소속의 사찰과 남한의 문화재관리국에 해당하는 문화유물총국이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로 구분되는데, 그 중 1/3 정도가 조선불교도연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988년 5월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법회를 처음 시작한 이후 여러 번 열반절과 성도절 등 불교의 3대 기념법회를 개최해 왔다. 2002년에는 59개 사찰에 대한 단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한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개성의 영통사를 복원하였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에 완료하였다.

천주교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천주교 교구는 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교구 등 3개 교구와 54개 성당, 50여 개의 성당 및 수도원이 있었고 신도수도 5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북 분단 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천주교는 거의 소멸되었다. 천주교의 경우 북한지역에 로마교황청이 설치한 교구가 없어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까지 겸직하고 있으며, 교황청이 정식 승인한 사제가 없어 장충성당의 미사는 정식사제 없이 집전되고 있다.

바티칸 교황청은 남한의 주교를 평양교구장과 함흥교구장 서리에 임명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교구에 대한 관할권을 남한측 천주교 교구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천주교는 당·국가의 개입과 통제 하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3천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공식 성당으로는 1988년 10월에 건축된 장충성당이 있는데, 이 곳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100~200명의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드리고 있다. 미사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기독교 교리 해설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반미 선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천도교

해방당시 북한의 천도교는 신도 수가 2백 80여만 명을 가진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 세력이었으며 초기 북한 집권세력과의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민족종교로 간주되고 있는 천도교는 북한에서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천도교 청우당’이 노동당의 우당으로 활동함에 따라 조선 천도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서가 대남공세 차원에서 발표됨으로써 활동이 재개 되었으나 종교 본연의 활동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종교적 활동은 1986년 천도교 창도 기념일인 ‘천일절’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재개되었으며 이 기념의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단군릉에서 단군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이른바 민족종교로 인식되어 다른 종교에 비해 그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적 활동보다는 정치 단체로서의 활동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다.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천도교도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 위장선전과 대남통일 전선 형성 필요성에 의거 1974년 2월 15일 ‘천도교회 중앙지도 위원회’를 설립했다. 천도교는 1989년 5월 30일에 ‘조선종교연합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01년 6월 북한에서 밝힌 천도교인수는 1만 3천 5백여 명, 청우당원 수는 1만 4천 명이다. 청우당은 1993년 12월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여 천도교인이 아니라도 입당이 가능하게 했다.¹⁰⁹⁾

109) 정교진, “북한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76~77

러시아 정교

러시아 정교도 북한 당국의 관심을 끌어 왔다. 2002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를 찾아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하고 북한에 러시아 정교 성당 건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북한에 조선정교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3년 1월에는 러시아 정교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성탄절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평양에 러시아 정교성당인 정백사원을 지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종교인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부를 개설했으며, 1995년에 중단되었던 평양신학원(1972년 개원)을 2000년에 재개원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할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러시아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신학교에 유학생을 보낸 바 있다.

북한에도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존재하는가? 북한은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도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해 본 종교인들은 북한의 신도들이 찬송가를 아예 모르고, 성직자도 종교의 단편 지식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 뇌리에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 대부분을 ‘무섭고 악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사상교육을 통해 성직자를 부정적 모습으로 교육해 왔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다면 김일성·김정일주의만 존재할 따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 공개하는 ‘에드히런츠닷컴(adherents.com)’은 북한에 주체사상 신봉자로 약 1,900만 명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이슬람교·힌두교·불교 등 전통 종교에 이어 세계 10대 종교에 속한다고 밝혔다.

미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미얀마,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 지목했다(RFA 2015.4.30.). 또한 미국 민간 구호단체인 조슈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는 2015년 10월 종교탄압과 분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계 주요 8개 지역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RFA 2015.10.12.). 그리고 2014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는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주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종교단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종교 활동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주체사상과 ‘3대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종교 활동 및 신도들에 대해 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종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독’과 같은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절 북한 주민의 일탈과 사회통제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구성원은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이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사회일탈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행위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북한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통제의 대상이 되며 통제는 인권 탄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에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범죄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상 신문·방송 등에도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계량화 작업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1)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분류

북한 형법은 혁명성과 계급성의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형법의 제정 목적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북한의 형법은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부분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등 모두 7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 범죄명은 <표 7-8>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은 기본 원칙과 새로운 범죄가 대폭 추가되는 등 전통적 형법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형벌 불소급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정 형법이 새로운 범죄를 대폭 추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범죄를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반국가 범죄에 시위와 습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서 하나의 조항으로 있던 마약 관련 조항은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그리고 마약밀수·밀매죄 등 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새롭게 출현한 범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즉 과거에는 북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통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변혁기를 거치면서 기존에 없던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질서 침해 범죄인 탈세죄·상행위죄·고리대죄·밀주죄,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인 매음죄와 음탕한 행위죄 그리고 도박죄가 여기에 속한다.

표 7-8.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대분류	중분류	범죄명(일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반민족범죄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조선민족적 대죄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범죄 불신고죄
경제 침해범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침해 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 파손죄, 과실적 파손죄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 상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 외화벌이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질서 침해 범죄	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 남도벌죄, 산을 개간한 죄, 과실산불죄
	노동행정질서 침해 범죄	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문화 침해 범죄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 도굴죄, 마약밀수·밀매죄	
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일반행정질서 침해 범죄	집단적 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		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죄
생명재산 침해 범죄	생명, 건강, 인격 침해범죄	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 성교죄
	개인소유 침해 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주: 북한 형법상 범죄의 대분류는 모두 7개 유형이며,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법률출판사(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2004, pp.784~840.

(2) 범죄 유형

북한은 고도의 조직사회로 통제기제가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일탈과 범죄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문제로 삼아 왔다. 예를 들면 북한은 반당·반혁명 요소의 발호,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 풍조,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유약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와 일탈행동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범

경제범은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 경제 활동으로 절도죄, 밀수죄, 고리대죄 등 북한 형법상 주로 경제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범은 북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절도는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표적 경제사범이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으로는 양곡 창고와 기타 생필품 배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 등이 있다. 개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절도는 주로 장마당, 역, 기차에서 상인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통한 밀거래 빈도도 증가하였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는 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 등 1차 상품도 있지만 대체로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2차 상품도 많다. 여기에는 전기선·전화선을 절단한 구리(銅), 공장 부품, 도골품 등이 속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으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하여 신발과 옷 등 의류품, 소금과 치약 등 생활용품, 안경과 필

름 등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경제적 목적의 범죄와 일탈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갈 및 사기 범죄도 확산되었다. 불법 상행위는 단속과 목인을 반복할 정도로 하나의 일상사가 되었다. 주민들이 '국주'(국가에서 제조한 술)와 '민주'(개인이 제조한 밀주)를 구분할 정도로 밀주도 일반화되어 있다. 축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도용하기도 하며, 권력층 및 신흥부유층을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한다.

사회범

사회범이란 일상생활에서 생명, 신체, 사회규범을 침해한 범죄를 말한다. 주로 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를 들 수 있다. 대인범죄로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문화침해 범죄로는 외부의 문화를 반입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 북한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사회범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 주민들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금전적 이권을 둘러싸고 종종 패싸움도 벌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신매매도 북한 당국을 긴장시키는 신종 범죄다. 인신매매는 매우 치밀하게 조직을 갖춰 이루어지고 있다. 인신매매단은 주로 '결혼'을 미끼로 하여 여성들을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 동포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챙긴다.

이른바 '퇴폐' 문화반입·유포죄와 '적대'방송청취죄는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화침해범죄 사례를 대표한다. 북한 주민 상당수는 남한 노래를 부르며 드라마를 시청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한방송 청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직접 청취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남자의 경우 과반수가 직접 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⁰⁾

110) 성숙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방송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42~44.

공공질서 위반 범죄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죄는 가해자 외에 뚜렷한 피해자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희생자 없는 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의 형법상 공동생활질서 침해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를 들 수 있다.

성(性)을 금전으로 거래하는 매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춘 행위는 주로 장마당이나 역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장마당의 경우 젊은 여성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하며, 역 주변에서는 ‘대기숙박업’을 하면서 매춘 행위를 겸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신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남녀관계의 유형 가운데 하나는 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혼이 증가해 왔다. ‘부화(간통)’ 및 사실혼의 증가는 이혼율의 증가로 연결되며 높은 이혼율 때문에 가족 해체가 증가해 왔다.

도박 및 미신 행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범죄다. 도박은 상인들이 주로 하며 전문도박조직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신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운세·건강·장사와 관련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력자도 가담하고 있다.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포함

된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일컬어 “돈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할 만큼 뇌물 수수는 만연되어 있을 정도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 학교 진학, 직장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 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나 무단이동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진다.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농작물이나 생필품을 훔쳐 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권력자들은 또한 국가재산이나 배급물자를 유용하기도 하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례금 착복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비공식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통제

북한은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체제동조 이념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 조직생활 통제, 당과 정권 기관을 통한 물리적 통제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능라인민유원지·유경원 등 주민 대상의 대규모 위락·편의시설을 개관하고, 공연·방송에서 미키마우스 등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등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자발적 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체제이완 차단과 주민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전국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개최 등은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 사례다.

(1) 체제동조 이념

조직통제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이념은 ‘군중노선’으로 나타난다.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속도전,¹¹¹⁾ 3대혁명소조운동 등 군중노선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적 미풍’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체제동조 이념을 몸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고아 입양 장려, ‘영예군인(상이군인)’과의 혼인을 권장하며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고향에서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유아기 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직장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는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수용되어 집단주의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북한 주민의 생활을 집단화하는 사회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직업총동맹(직총),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민주여성동맹(여맹)을 대표로 들 수 있다.

111) 속도전은 1974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노력동원 운동을 말한다. 1950년대 ‘평양속도’, 1960년대 ‘비날론 속도’ 등 속도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100일 전투’, ‘200일 전투’, ‘1980년대 속도 창조운동’, ‘1990년대 속도창조 운동’,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의 형태로 전개 되었다. 최근에도 ‘마식령 속도’ 등 여전히 속도전을 중시하고 있다. 속도전의 중심 내용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낡은 사상 배격, 전격전·섬멸전 적용, 기술혁신 운동과의 결부 등이다.

사상통제

북한 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상적 도구이다. 북한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식량난 등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은 “소련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무사하겠는가?”하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과정 중 한 번도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발굴하여 ‘대동강 문화’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대동강 유역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 문화가 싹튼 유서 깊은 역사의 성지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나라 역사보다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붕괴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주체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출생한 해를 기점으로 계산하며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다. 북한의 개정 헌법(1998년과 2009년)에서는 헌법을 ‘김일성헌법’, 201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각각 규정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김일성 가계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이를 증명한다고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주민동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2) 사회통제기관

북한의 사회통제는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관이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질서가 이완되고 선군정치가 실시되면서 군이 직접 사회통제에 가담하게 되면서 사회통제는 당·정·군의 3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노동당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북한 사회의 전 분야를 조직하는 중추 기관이다. 모든 기관에는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간다. 일반 주민을 직접 통제하는 당의 하부 조직으로는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당원 5~30명까지 통제하는 당세포가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한다.

행정기관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은 주민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

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 동태 감시는 물론 '3대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야기되는 저항 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다. 보위부는 중앙에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 기관·기업소 및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파견하여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개인의 신원조사와 사생활 감시를 한다. 인민보안부는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가운데 출신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 밖에도 5호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이중삼중으로 통제하고 있다. 5호담당제는 전체 가구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총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하도록 하는 통제 수단이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다. 인민반은 통상 20~30가구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한다.

군사기관

북한의 군사기관은 당의 지도 아래 대남 적화통일 임무를 전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후반 경제난과 사회일탈 증가 등 체제위기 요인이 증대되자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가 직접 사회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군 요원이 단위 기관을 비롯해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도 군 요원을 상주시켜서 대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인민무력부가 직접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5절 북한의 인권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출신으로 성분에 따라 차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는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생명권의 침해는 공개 처형과 탈북자 불법 처형, 불법 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 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은 성분에 의한 적대계층·월남자가족·종교인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격리 수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자유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침해가 쟁점이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의 자유 침해 등이 문제가 된다.

(1) 공개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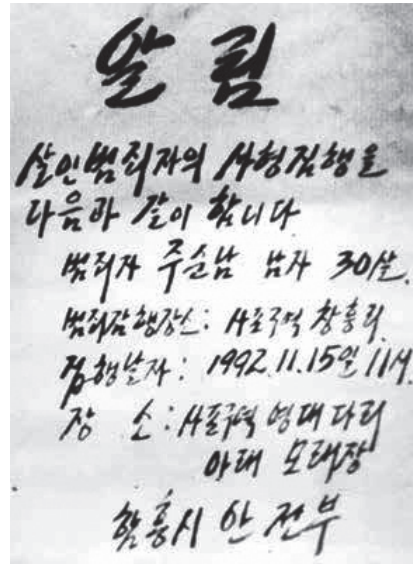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5년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영화계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 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처형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고,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등 간부들이 공개처형되었다.¹¹²⁾

112) 김병로,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57-58.

2000년대 들어서도 공개처형은 계속되고 있다.¹¹³⁾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 무’를 중국인에게 매매한 죄, 성인용 녹화물을 판매한 죄, 소를 잡아먹었다는 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마약(속칭 ‘빙두’) 밀수 및 밀매자, 국가 수출물자 횡령자, 밀수꾼 등이 공개 장소에서 처형되는 등 공개처형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처형은 보통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기업소·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형식으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여 진행하며 판결과 즉시 처형된다.

공개처형은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 행위이며 자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지도 불명확하다.¹¹⁴⁾ 첫째,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집행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사형집행 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 집행기관이 검사의 참여 아래 집행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개처형 공고문

1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67~91.

1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70~71.

(2) 정치범수용소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인권 침해 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 분자로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 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 계층을 특정 지역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 세습체제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기까지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하여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과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과 청진 등 5개 지역 수용소에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⁵⁾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 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탈출 기도자, 납북 인사들과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용자들은 특별독재대상 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연락도 불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을 하고 사상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 출근해 7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까지, 오후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 갱도 작업과 벌목·개간 등 중노동이며, 철저하게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 대다수가 영양실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

1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158

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는 또 다른 수용소인 '안전통제구역'이 설치되어서 규율을 어긴 자, 도둑질한 자, 성 행위를 한 자, 감독의 지시 위반자를 수용하고 있다.¹¹⁶⁾ 수용소는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높이 3~4m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곽에는 함정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 경비원이 경비전을 데리고 순찰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사면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3) 기타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적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거주이전은 직장이동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되며 직장 배치 자체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이전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행도 원칙상 시(구역)·군 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반장부터 시작하여 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북도 등 국경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며 평양을 여행하기 위한 승인번호는 받기 어렵다.

참정권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

116)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상권)』, 시대정신, 2003, pp.176-189.

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으로는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포스터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한다. 북한 주민은 라디오, TV, 녹음기 등을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봉인이 뜯겨져 있을 경우 불법으로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존권 침해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

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 사회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공개적으로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은 세습독재 체제 구축,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식량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식량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후반에 많은 주민이 아사하는 등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인해 배급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국영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생활비(임금) 또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식품가격이 40~50배나 상승함으로써 생활비만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월 말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시장활동으로 축적한 부(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식량 생산량이 다소 증가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500만 톤 생산으로 식량사정은 호전되었지만 분배 대상과 방법 등 분배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상태다. 북한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식량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 직업선택의 권리침해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당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장 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이른바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근거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및 탄광과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및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출신성분이 좋은 간부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무단 결근하는 주민은 노동단련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제도상으로 하루 결근 또는 3일 지각에 하루치 식량을 공제하여 왔지만 배급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반면 자신의 농사에 전념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무단 결근하는 자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물론 굶주림으로 결근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뇌물로 해결하기도 한다.

(3) 기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침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한다. 문학·예술 등 문화 활동도 당이 철저하게 통제한다. 노동당은 모든 출판물을 직접 검열·통제한다. 대부분의 출판물은 1인독재, 권력 강화,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문학·예술 활동은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을 통

해 통제되는 가운데 작품의 주제 선정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주민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 어려우며,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해도 의약품은 스스로 구입해야 한다. 병원은 간부 전용 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병원의 경우도 간부과와 일반과로 구분하여 진찰하도록 되어 있다.

3. 북한의 인권문제 대응

북한은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¹¹⁷⁾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식 인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¹¹⁸⁾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서방 국

117)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평양), 『조선말대사전』, 1992.

11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49~53.

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관은 인류보편의 인권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UNCHR)와 총회에서 2003년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꾸준히 채택하여 왔다. 특히 2004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문타폰(V. Muntarhorn) 초대 보고관(2004~2010)은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의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6가지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9년에 제10차 인권이사회(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2010년에 임명된 다루스만(M. Darusman)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형법 등 제도상의 억압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3년 3월 개최된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고문과 강제 노역 등 반인도 범죄 행위에 관해 포괄 조사 권한이 있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1년간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UN 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관련 현장 기반 조직(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소 등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

구하는 강화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4년 12월 제69차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여, UN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도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08년 UN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때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사실상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개소하여, 2014년 3월 인권이사회 결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 인권침해 책임 규명,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학술회의, 자료발간, 캠페인, 문화행사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관련 스피치 대회,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에 공개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체제안보 관점과 현실적 필요성 등 두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체제안보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인권공세’ 및 ‘인권소동’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불과하며,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의 일환’으

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방북 요구를 지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국제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일부분 수용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벗어나야 할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홍보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인권 압력에 부응하여 법을 개선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대응해 왔다. 1998년에는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8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된 법규정 자체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찾아보기 및 참고문헌

찾아보기

ㄱ

- 가두여성 307, 308, 309
가을 전투 232
가정혁명화 289
가족법 333
감량배급 196
감정제대 140
강반석혁명학원 235
강성국가 24, 46, 76, 106, 208, 209, 211, 215, 235
강성대국론 41, 75, 76
개성공업지구 178, 214, 216, 217
개성공업지구법 214, 215
개성텔레비존 283
개신교 323
개인부업경리 172
건설신문 277
건전한 안보관 13
겔프전 133
검찰소 66, 71
결사옹위 정신 295
결산분배 308
경제개발구 179, 216, 217, 218, 219
경제개발구법 179, 216, 218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170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 위원회 의정서 119
경제의 군사화 127
경제특구 179, 213, 214, 215, 216, 217, 219
경축기념일 316
계획경제 198, 205, 207, 209, 339
계획경제 체제 16, 172, 208
계획의 세부화 20, 175
계획의 일원화 20, 175, 176
계획지표 170, 175, 176, 200, 205
고난의 행군 34, 42, 75, 84, 94, 186, 194, 196, 205, 253, 255, 263, 264
고등교육법 224, 235
고등교육성 225, 226
공개 처형 340
공군절 124
공산주의 언론 275
공산주의 인간형 224, 231
과학교육부 225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111
과학적 사회주의 295
관리소 342
관병일치 75, 143
광폭정치 265, 294
교도대 126, 145, 149, 150, 249
교육문화텔레비존 283
교육법 224
교육신문 236, 237, 243, 246, 247, 251, 277
교육위원회 225, 226, 233
구상무역 193
9·11 테러 152
9·19 공동성명 85, 100, 101, 113, 152
국제종교자유위원회 327

국제형사재판소 103, 327, 348
금강산관광지구 178, 214, 215, 216
금강산관광지구법 214, 215

L

나진·선봉 경제특구 213, 214
남북국방장관회담 158
남북기본합의서 165, 166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59
남북정상회담 158
남조선노동당 53, 54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31
남조선 혁명 125, 256
남조선 혁명론 163
남포중앙체육학원 234
남포혁명학원 235
내각전원회의 46
노농적위군 76, 126, 145, 150
노동계급화 222, 225, 252, 289
노동단련대 341
노동단련형 346
노동당 34, 37, 40, 47, 48, 49, 51, 52, 54, 58, 59, 63, 77, 79, 83, 86, 90, 91, 92, 107, 117, 129, 132, 139, 225, 226, 228, 280, 281, 283, 292, 302, 305, 306, 307, 317, 337, 346
노동당 규약 17, 28, 38, 41, 42, 44, 46, 49, 50, 54, 64, 83, 124, 336
노동당 중앙위원회 33, 48, 129, 175, 177, 180, 183, 224, 225, 278
노동당 총비서 36, 49, 79

노동 미사일 154
노동신문 42, 44, 45, 46, 80, 90, 125, 130, 189, 212, 217, 271, 275, 277, 278, 279, 280, 282, 298
녹화근위대 245
농가생산책임제 197
농민시장 20, 203, 204, 210
농업근로자동맹 302, 303, 305, 306, 335
농축우라눔 핵개발 152

C

단군릉 261, 325, 336
단군문학 261
달리기장사 204
당 대표자회 28, 34, 35, 38, 39, 45, 46, 48, 51, 55, 57, 58, 59, 60, 61, 77, 78, 79, 106, 126, 127, 150
당 분조 142
당 비서국 60, 61, 73, 78, 142
당 세포비서 57
당 정치국 51, 58, 59, 60, 61, 73, 77, 78, 79, 127
당 중앙군사위원회 28, 35, 51, 59, 60, 61, 62, 64, 77, 78, 79, 126, 127, 136
당 중앙위원회 26, 32, 34, 35, 39, 51, 53, 57, 58, 59, 60, 61, 63, 64, 73, 74, 78, 79, 86, 106, 136, 137, 182, 211, 226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34, 60
대기숙박업 333
대량살상무기 82, 99, 131, 133, 151, 155, 164, 182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100, 152, 153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 109, 153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102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 102, 153

대안의 사업체계 177, 212

대외문화연락위원회 87

대적성국 교역법 101, 153

대청해전 165, 166

대포동 2호 100, 129, 154, 155

덕원교구 324

데탕트 93, 107, 111

독립국가연합(CIS) 111

돈주 205, 291

동시행동 원칙 100

되거리장사 204

듀브나 핵 연구소 151

등짐장사 204

땀기발 250, 309

ㄱ

러시아 정교 322, 326

로마교황청 324

ㄴ

마르크스-레닌주의 17, 29, 33, 34, 37, 38, 47, 56, 83, 276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43

만경대혁명학원 234, 235

만년화 273

만수대텔레비존 283, 284

매대장사 204

메뚜기 장사꾼 208

모기장식 개방 213

모기장식 개방론 213, 214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 246

목적주의 문예관 252

무력통일 노선 160

무리배치 346

문학예술총동맹 259, 346

문화주택 313

물량지표 176, 205

미·북 제네바 합의 98, 152

미·일 동맹 110

민속명절 316, 317, 318

민족공동체 12, 13

민족보위국 123

민족보위성 137

민족화해협의회 65

민주기지 노선 48

민주여성동맹 289, 302, 303, 306, 335

ㄷ

바티칸 교황청 324

반동 10원칙 89, 90

반동회의 89, 119

반사회주의적 요소 338

반제국주의 84, 242

반제·반미 공동전선 117

반테러 공동성명 94

방사포 129, 131, 132, 145, 146, 167, 168

방사화학실험실 153
방코델타아시아 100, 152
배합전략 133
백두산 3대 장군 261, 262, 267
베를린 합의 93, 98
벼랑끝전술 85, 94, 98, 122
보위사령부 126, 134, 135
보통교육 231, 233
보통교육법 224, 235
보통교육성 225, 226
봄 전투 232
봉수교회 322, 323
부서제도 142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111, 112, 114
북·러 공동선언 112
북·러 모스크바 선언 112
북·러 무역경제 111
북방한계선 164
북조선공산당 30, 52, 53
북조선노동당 30, 53, 54
북조선인민위원회 31, 12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30, 233, 279, 289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 231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106
북·중 우호 협력 조약 158
북·중 정상회담 106
북청농업개발구 217
북한이탈주민 174, 193, 290, 318, 332, 348, 349
북한인권 결의안 96, 103, 116, 348
북한인권조사위원회 348

북한인권특별보고관 348, 350
북한 체제 12, 14, 15, 16, 17, 19, 21, 23, 29, 75, 100,
107, 125, 150, 222, 226, 253, 261, 307
북한 형법 329, 330, 331
분조관리제 197, 198, 212
분초급당 위원회 63
불가침부속합의서 166
불교 320, 322, 324, 326
붉은기 사상 41
붉은청년근위대 126, 145, 149, 150, 248
비교우위 발전론 178
비대칭 전력 122, 130, 133, 164
비동맹국 외교 88, 89, 90, 91, 117, 118
비동맹회의 91
빈곤의 함정 184, 187

人

4.6 담화 45
4대 경제특구 214
4대 군사노선 62, 126, 129, 131, 136, 149
4대 제일주의 45
4대 특구 213
4세대 전쟁 133
사상생활 지도 57
사회민주당 65
사회적 소비 198
사회적 소유 19, 17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8, 34, 40, 56, 74, 294
사회주의 계획경제 23, 91, 172, 214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24, 228, 241, 244

사회주의 노동법 289

사회주의 대가정 12, 21, 22, 294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06

사회주의 우호 무역 186, 200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252, 253, 254, 256, 257

사회주의적 소유 19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171

사회주의 진영 외교 88

사회주의 체제 16, 24, 64, 181, 224, 231, 253, 292,
293, 295, 337, 347

사회주의 헌법 17, 33, 48, 49, 50, 66, 68, 70, 135,
137, 224

산업연관 관계 186, 188, 189, 203, 213

3대 세습 체제 38, 51, 208

3대 재산권 174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37, 289

3대혁명소조 78

3대혁명소조운동 73, 335

3대혁명 소조원 261

3대혁명소조 활동 342

3위 1체 체제 259

새날혁명학원 235

생물무기 155

생활총화 22, 57, 299, 300, 304, 306, 307, 308

서울대교구장 324

서정가요 263, 315

선군경제 건설 노선 181, 182, 183, 203

선군사상 17, 28, 37, 38, 39, 42, 43, 44, 46, 129

선군영도 35, 255

선군절 316, 317

선군정치 28, 35, 37, 41, 42, 43, 44, 50, 51, 65, 75,
78, 79, 125, 126, 129, 130, 253, 255, 262, 263, 264,
266, 274, 337, 338

선군정치론 41, 75

선군혁명 노선 135, 182

선군혁명문학 261

선군혁명 문학예술 255

선군혁명 문학예술론 266

선전선동부 34, 57, 276, 280, 281

선제 기습 공격 131

세계청년학생축전 311

세포조직 52

소년단 245, 248, 249, 300, 302, 303, 304, 305, 307,
316, 317

소련파 31, 32, 39, 53

소조활동 245, 248

속도전 131, 335

속도전 이론 257

속도전 청년돌격대 126, 151

속도창조운동 74

속전속결 전략 130, 131

송가 263

수령결사옹위정신 294

수령 독재 체제 17, 73

수령론 34, 37, 40, 56, 73

수령 절대주의 48, 57

수령중심주의 286, 295, 297, 298

수령형상문학 261

수요강연회 306

수입물자교류시장 206
 스킨드 미사일 129, 131
 스탈린 격하운동 38
 스탈린주의 37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112
 시장사회주의 체제 171
 시장화 현상 172, 191, 199, 203, 205, 206, 207, 209, 211, 220
 식량 전매제 21
 신계사 324
 신문이론 276
 신의주 특별행정구 214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214
 실리사회주의 노선 207
 실리 외교 84
 10·3 합의 85, 100, 101
 10·4 선언 350
 10월 8일 모범교수자 246
 12년제 의무교육 68, 224, 229, 231, 235, 237, 238

어뢰정대 124
 어린이 교육보육교양법 228
 업간체조 247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 194
 여성동맹 307
 연안파 31, 32, 39, 5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3, 168
 연평해전 160, 164, 165, 166
 영변 5MWe 원자로 153
 영생주의론 257
 영예군인 235, 335
 영통사 324
 영화연감 264
 영화예술론 257, 265
 예술소조 259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동 139
 5·24 대북조치 167
 5개년 경제개발계획 215
 5대 혁명가극 254
 5대 혁명연극 254, 268
 5장 6기 313, 314
 5호담당제 338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37, 40
 온성섬관광개발구 217
 와우도수출가공구 217
 왕재산경음악단 263
 우리농 농축시설 102
 우리사상 제일주의 45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170, 211
 우리식 사회주의 37, 41, 74, 76, 294, 295, 336, 347

○

아세안 96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6, 118, 119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15
 아웅산 폭탄테러 160
 약의 축 94, 99
 애국미 309
 액상지표 176
 양극 체제 88, 92, 93

원산청년발전소 194
위장평화 공세 160, 161
유럽연합 85, 95, 96, 103, 115, 116, 117, 350
유선방송중계소 281
유엔인권선언 339
유엔 인권위원회 116, 348
유엔인권위원회 327
유일독재체제 15
유일사상체계 36, 39, 40, 49, 80
유일영도체계 35, 36, 40, 46, 80
유일지도사상 55, 59, 78, 80
유훈통치 34, 35, 42, 50, 77, 94
6·15 공동선언 350
6·25 전쟁 32, 98, 157, 160, 162, 163, 164
6개년 계획 58
6자회담 82, 85, 99, 100, 101, 102, 103, 106, 109, 110, 113, 116, 118, 152, 153
이라크전 133
2·13 합의 85, 100, 101, 109, 118, 152, 153
2·29 합의 102
인덕정치 265
인민군협주단 263
인민무력부 64, 65, 80, 123, 134, 135, 137, 138, 139, 146, 158, 236, 338
인민무력성 138
인민반 307, 310, 338
인민반장 307, 308, 343
인민보안부 106, 126, 150, 289, 334, 337, 338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74
인민위원회 30, 226, 233, 279, 343

인민학교 227, 228, 231
인민회의 31
일당독재체제 17
일반공급 대상자 310
일·북 국장급 회담 110
일·북 평양선언 108
1인 독재체제 33, 50, 80, 143, 339
1인 지배체제 28, 39, 42, 74
입사증 174, 313

ㄸ

자강일보 277
자력갱생 128, 179, 182, 200, 203
자력갱생론 178
자립경제 노선 23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177, 178
자아비판 275, 299, 306, 342
자원절약형 도상훈련 148
자주외교 88, 91
자주포 130, 131, 146, 166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85
장거리 미사일 발사 85, 94, 102, 109, 116, 118, 129, 154, 160
장마당 20, 174, 204, 205, 208, 209, 223, 299, 309, 310, 331, 333
장충성당 322, 324, 325
재판소 49, 66, 71
전국인민대표대회 68
전방위 외교 92, 94, 96

전위대 조직 55
 전체주의 16, 21, 294, 339
 전체주의 체제 295
 전형화 이론 257
 전·후방 동시 공격 130
 정무원 49, 50, 66, 70, 137, 259
 정백사원 326
 정전협정 88, 89, 97, 164, 165, 166, 167
 정치국 상무위원 51, 58, 61
 정치국 상무위원회 49, 50, 59, 60, 61, 73
 정치범수용소 340, 342, 343, 348
 정치사상 교육 148, 222, 241, 242, 247, 293
 정치지도원 137, 142
 제1중학교 229, 234, 235, 243
 제1차 핵실험 100, 105, 109, 118, 152
 제2차 연평해전 164, 166
 제2차 핵실험 105, 109, 116, 118, 153, 215
 제3차 핵실험 95, 102, 118, 136, 216
 제네바 합의 93, 99
 조계종 32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5, 32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5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112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157
 조선가요 263
 조선공산당 29, 30, 52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30, 52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30
 조선그리스도교연맹 32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65
 조선말대사전 56, 316, 347
 조선민족제일주의 294, 295, 336
 조선민주여성동맹 65
 조선불교도연맹 322, 323, 324
 조선신민당 53
 조선신보 212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65, 86, 87
 조선의용군 161
 조선종교인협의회 322, 323
 조선중앙방송 282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81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281
 조선중앙연감 123, 129, 173, 264
 조선중앙텔레비죤 283
 조선중앙통신 113, 183, 280, 282
 조선직업총동맹 65, 87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323
 조선천주교인협회 322
 조선카톨릭협회 323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254, 256
 조·소 군사원조 협정 111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90, 111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90
 조직지도부 34, 57, 61, 64, 73
 종자론 257, 258
 종파사건 32
 종합시장 19, 21, 174, 204, 205, 206, 208, 209, 210
 주체농법 195, 197, 330
 주체문예이론 257, 258, 261

주체사상 17, 32, 38, 39, 41, 46, 283, 294, 319, 326, 327, 335, 336
주체연호 316
주체정치경제학 242
주체철학 242
주탄중유 193
준군사부대 126, 150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177, 179, 180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 182, 190
중·소 국경 분쟁 90
중앙공급 대상자 310
중앙군사위원회 62, 135
중앙인민위원회 33, 35, 49, 50, 66, 70, 98, 137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2, 19, 21, 170, 174, 175, 176
중앙확대집행위원회 30
지방인민재판소 71
지배인 유일 관리제 177
직관교육 244
직업동맹(직맹) 306
직업총동맹 302, 303, 305, 306, 335
직통생 234, 301
집단적 경제관리 방식 177
집단주의 294, 295, 296, 297
집단주의 원칙 21, 22, 296, 302, 335
집단주의적 영웅주의 260
집단주의 정신 177, 335
집단체조 271
종대바지 249

㉞

차판장사 204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106
천도교 322, 325
천도교청우당 65
천리마운동 33, 265, 289, 335
천안함 폭침 사건 167, 168
천주교 322, 324
철도신문 277
철학사전 320
청년동맹 245, 248, 249, 303, 304, 305, 306
청년동맹위원회 304
청년전위 277, 278, 280
청산리방법 33, 177, 335
청산리정신 33
초급당 위원회 63
초모대상자 138
총정치국 64, 65, 135, 137, 139
총참모부 64, 65, 135, 137, 144
총폭탄 정신 295
최고검찰소 71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69, 70
최고인민회의 74, 77, 78, 79, 98, 114, 127, 135, 136, 137, 138, 229, 23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9, 50, 67, 69, 70, 71, 86, 95, 113, 118, 124, 264, 279, 341
최고재판소 71
추모문학 261, 262
칠골교회 322, 323

7·1 조치 207, 211, 214

ㄷ

태양민족문학 261

태양절 294, 316, 336

토지 개혁 292

통속화 이론 257

통일 대통로 132

통일전선부 281

통일전선전술 160

통일지상주의 13

특별검찰소 71

특별독재대상 구역 342

특별재판소 71

ㄹ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63

88특별여단 29

평성시장 208

평양교구 324

평양방송 282

평양신문 277

평양외국어대학 242

평양외국어학원 234, 235

평양유선방송 282

평양음악학원 234

평양제일교회 323

평양학생소년궁전 243

평정서 305

평화 체제 101

평화협정 97, 165

폐연료봉 재처리 102

포전담당책임제 197, 198, 212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84

프롤레타리아 독재 31, 47

ㅎ

학생소년궁전 243, 245

학생소년단 245

학생소년회관 24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152

한반도 종단철도(TKR) 112

한·중 수교 104

함북일보 277

함흥교구 324

항공절 124

해군군관학교 124

해군절 124

해주혁명학원 235

핵비확산조약(NPT) 98, 152

핵실험 153, 154, 160, 163, 164

핵 연료봉 제조 공장 100, 153

핵 재처리 시설 100

혁명가요 263

혁명사적지 245

혁명연극 268

혁명적 낙관주의 224, 260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 48

혁명적 수령관 34, 37, 40

혁명적 수령론 34, 40, 294

혁명전적지 245

혁명화 222, 225, 252, 260

협동적 소유 170, 172, 173

형사소송법 341, 350

호위사령부 134, 135, 150

화면반주 음악실 315

화생무기 151, 155

화선입당 305

화전양면전략 161

화폐 개혁 21, 207, 208, 209, 210

화학무기 155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215, 216

황색바람 249

화천발전소 194, 210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

- _____, 『2000 북한개요』, 1999.
- _____, 『2004 북한개요』, 2003.
- _____,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 2006.
- _____, 『남북한 교육 비교』, 2006.
- _____,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교류 전망』, 2006
- _____, 『북한의 대남전략』, 2010.
- _____,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 _____,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1.
- _____,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 _____,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 _____,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
- _____, 『북한 지식 사전』, 2014.
- _____, 『북한의 양면성』, 2013.
- _____,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 _____,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2015.
- _____,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5.
- _____, 『북한권력기구도』, 20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 연도

- _____, 『월간북한동향』, 각 연도
- _____, 『통일정책연구』, 각 연도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각 연도
- _____,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 _____,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 _____, 『북핵문제의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2009.
- _____, 『2009 북한개요』, 2009.
- _____, 『북한주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인식』, 2011.

_____,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_____,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_____,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01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 연도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계간), 각 연도

_____, 『2014 국제정세전망』, 2014.

국방부, 『국방백서』, 격 연도(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계간), 각 연도

_____,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군』, 2008.

_____,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2008.

_____,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2009.

_____,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1.

국방대학교, 『정보시대 전쟁의 이해』, 2004.

_____, 『2014년도 안보정세 전망』, 2014.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각 연도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2002년』, 2003.

_____, 『북한총람, 2003년~2010년』, 2011.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연도

2016
북한 이해

발행처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6 팩스 02-901-7088

발행일 : 2015년 12월

디자인 : 웃고문화사 (Tel. 02-2267-3956)
인쇄 : 상현 D&P (Tel. 031-955-1872~3)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